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0. 12

전영준 · 한도숙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지난 수년간 공적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들 3단계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조세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급보장성상의 문제점과 지급형태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의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따라서,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조세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수년 동안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금과세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예는 매우 드물며, 연금과세체계개편 논의시 주로 외국의 제도나 간단한 보험수리적인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주요 연구결과는 이미 국내 학술지에의 게재과정에서 검정된 것으로서 방법론상 학술적으로 기여한 바 있으며 그리고 연구결과 면에서도 그 신뢰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2000년 세제개편안에 상당수준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정책입안과정에서 기여하였다고 사

료된다. 2000년 세계개편안에 반영된 부분 이외에도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은 과세당국이 관련 정책수립시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진영준 박사와 한도숙 박사가 공동 집필 하였으며, 백승훈 연구원, 홍유남 연구조원이 원고정리와 자료수집을 도와주었다. 필자들은 본 보고서의 심사에 참여해준 匿名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유 일 호

목 차

I. 서론	11
II.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조세제도	14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14
가. 공적연금제도	14
나. 퇴직금제도	28
다. 개인연금제도	34
2. 우리나라의 연금관련 조세제도	36
가. 공적연금제도	36
나. 퇴직금제도	37
다. 개인연금제도	39
3. 세제상 문제점	40
III.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연금소득 과세제도	46
1. 미국	46
가. 공적연금	46
나. 가입대상	50
다. 관련세제	54
라. 기업연금	55
마. 개인연금	59
2. 영국	62
가. 공적연금(National Insurance)	63
나. 기업연금	69
다. 개인연금	70
3. 캐나다	73

가. 공적연금	73
나. 기업연금	84
다. 개인연금(RRSP :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	85
4. 호주	87
가. 공적연금(Social Security Pensions)	87
나. 기업연금 :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92
5. 뉴질랜드	99
가. 공적연금	99
나. 사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103
6. 주요국의 연금과세제도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08
가. 주요국의 공적연금 과세제도	108
나. 주요국의 기업 및 개인연금 과세제도	111
다. 정책적 시사점	114
IV.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116
1. 개인연금의 저축증대 효과분석	118
가. 머리말	118
나. 세제지원저축에 대한 기존연구	121
다. 모형	123
라. 분석자료	130
마. 분석결과	133
바. 요약	139
2. 일반균형모형분석	144
가. 머리말	144
나. 모형	145
다. 모형 캘리브레이션	158
라. 결과분석	164
마. 요약	171

3. 정책적 시사점	173
V. 2000년 연금과세개편안의 내용과 평가	183
VI. 향후 정책과제	188
1. 2000년 세제개편에 대한 보완사항	188
2.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세제개편	190
3. 여타 사회보장제도 관련세제와의 조화	192
VII. 결론	194
참고문헌	196
<부록 1> 국민연금급여산식	201

표 목 차

<표 II- 1> 국민연금법 개정(1998년)의 주요내용	17
<표 II- 2> 공무원연금 급여종류별 지급요건 및 지급액	21
<표 II- 3>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비교	24
<표 II- 4> 소득활동형태별 신고권장소득 수준	26
<표 II- 5> 도시지역 확대 대상자 등급별 분포	26
<표 II- 6> 통계청 조사 소득대비 신고소득비율 분포(유형 I)	27
<표 II- 7> 통계청 조사 소득대비 신고소득비율 분포(유형 II)	27
<표 II- 8> 퇴직금의 사용-용도	33
<표 II- 9> 중도퇴직금의 실업기금 생활보장 효과	33
<표 II-10> 퇴직금+퇴직수당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기간	33
<표 II-11> 퇴직금의 생활비외의 사용처(복수응답비율)	34
<표 II-12> 기업의 평균 누적퇴직충당금 규모(1996년도)	34
<표 II-13> 현행의 연금과세제도	40
<표 III- 1> OASDI 연금제도의 부양률 추이	48
<표 III- 2> OASDI 제도의 재정추이	49
<표 III- 3> 기업연금의 형태	56
<표 III- 4> IRA contribution의 공제 적용 기준	61
<표 III- 5> 영국의 연금제도 체계	63
<표 III- 6> 제1종 보험의 각출률(1998~99)	65
<표 III- 7> 제2종 보험료 각출률 연도별 추이	66
<표 III- 8> 제3종·제4종 보험료율 추이	66
<표 III- 9> 개인연금의 연령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액	72
<표 III-10> 노령보장제도(OAS)	75
<표 III-11>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P)의 재정수지 전망	77
<표 III-12> 캐나다(CPP)·퀘벡(QPP) 연금제도	82

<표 III-13> 캐나다 연금제도의 각출률	83
<표 III-14> 고용자의 SGC 각출률	94
<표 III-15> 고용주 각출금 연령별 공제한도액	95
<표 III-16> 자영자 각출금 및 연령별 공제한도액	95
<표 III-17> 종업원 각출금 환급 한도액	96
<표 III-18> 기금별 세율	97
<표 III-19> 일괄지불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식	99
<표 III-20> 연금제도별 과세제도	103
<표 III-21> 제도별 평균각출금 및 자산규모	104
<표 III-22> 연금과 일괄지불 제도 및 회원 규모	105
<표 III-23> 제도형태에 의한 근로자와 고용주의 각출률	107
<표 III-24> GSF에서의 근로자 각출률	107
<표 III-25> 공적연금의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110
<표 IV- 1> 한계세율구조(1995)	140
<표 IV- 2> 주요 통계	141
<표 IV- 3> 추정결과	142
<표 IV- 4> 시뮬레이션결과	143
<표 V- 1> 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	184
<표 V- 2>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184
<표 V- 3> 연금기여금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효과	187

그림목차

[그림 II- 1]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제도	39
[그림 IV- 1] 개인연금 및 일반저축 수준	143
[그림 IV- 2] 균형계산과정	176
[그림 IV- 3] 세대별 후생수준	177
[그림 IV- 4] (1)에 대비한 후생수준	177
[그림 IV- 5] GDP	178
[그림 IV- 6] 임금률	178
[그림 IV- 7] 이자율	179
[그림 IV- 8] 자본축적량	179
[그림 IV- 9] 노동공급량	180
[그림 IV-10] $tcori$	180
[그림 IV-11] $tsevi$	181
[그림 IV-12] 소비세율	181
[그림 IV-13] 소득세율	182
[그림 IV-14] 자본소득세율	182

I. 서 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수단은 공적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도에 도입되어 그 역사가 일천한 반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으로 구성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이전인 196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재정의 불안정성과 1998년도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와 관련된 문제로서 주로 비교적 큰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가입자와,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신규가입자간의 소득포착률의 차이에서 기인한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문제 등일 것이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 노후소득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보편화되지 않아 퇴직금 급여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이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1994년 도입된 이래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연금이 여타 저축수단과 다른 점은 여타 저축수단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친 저축수단이며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연금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세제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일 것이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따라서, 개인연금 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수단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연금과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연금과세체계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비록 현재 연금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향후 연금소득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체계가 제도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퇴직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연금도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수년 동안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금과세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예는 매우 드물며, 연금과세체계개편 논의시 주로 외국의 제도나 간단한 보험수리적인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연금과세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려는 분석은 오래 동안 논쟁이 되어온 연금과세의 기본구조 개편, 기업연금도입,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분석을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종합하여 연금과세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2000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연금과세개편안의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사항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수단과 관련세제를 소개하고 현행 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책과 관련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통계자료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연금과세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2000년도 세계개편안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 다음, 제Ⅵ장에서 향후 보완사항과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

Ⅱ.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조세제도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3단계 보장체계로 개인연금, 기업차원에서 퇴직금제도 및 공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생계유지 수단 및 실업수당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불로 지급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기여도마저 낮아 노후소득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반면에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나 실제소득 기여도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을 통한 퇴직금제도 이외에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해 구입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가.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닌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초기단계에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1963년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분리)은 1960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973년도에

도입되어 정착단계에 있다.

본절에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각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공적연금제도상의 문제점은 지난 수년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문형표(2000)와 전영준(1999)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제도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2년에는 당연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까지 확대하였다. 이후 지역 가입자에게도 확대되어 1995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을, 그리고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러한 빠른 제도확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의 4,433천명에서 2000년 2월에는 16,230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은 사용자 및 피고용자의 각출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방식의 재정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조성된다. 1988~92년간은 제도가입자 월 보수의 3%를 기준으로 노·사가 1/2씩 분담하고, 1993~97년간은 6%를 기준으로 노·사가 각각 2%, 기업의 퇴직금에서 2%를 전환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노·사·퇴직금전환이 각각 3%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퇴직금 전환금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노·사가 각각 4.5%씩 분담하고 있다. 연금급여는 노령, 장애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연금제도가 있으며 중도에 탈퇴하는 가입자를 위한 반환일

1) 문형표(2000) 참조.

시금제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9년 법개정시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²⁾.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그로 인한 이자 및 운용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여지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관계로 연금기금은 빠르게 적립되고 있다. 2000년 10월 현재 연금기금 규모는 71조 원에 달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적립기금의 증가는 국민연금의 적립식 운영방식에 따른 연금도입 초기의 현상일 뿐, 연금재정의 장기적 건실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장기적 건실도는 추후 연금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준비금과 실제 기금적립액의 차이, 즉 잠재적 순연금부채(net implicit pension debt)의 크기를 기준으로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부채 규모는 1998년 말 현재 이미 120조 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금적립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여 장기적인 재정건실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⁴⁾.

이러한 재정취약성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은 고급여-저부담의 불균형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시 연금급여율 60%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이러한 수준의 연금급여율을 유지하고 현행의 연금보험료율 9%를 유지할 경우 2049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⁵⁾.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정 『국민연금법』에는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도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 문형표(2000) 참조.

3)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4) 문형표(2000) 참조.

5)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 내용).

<표 II-1> 국민연금법 개정(1998년)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의 확대 : 도시지역 거주자(1999년 4월 1일부터)
- 재정안정화
 - 급여율의 조정(40년 가입시 생애평균소득의 70→60%)
 -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율을 4:3에서 1:1로 조정
 - 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인 상향조정(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61세,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 2033년 65세)
 -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재계산제도 도입(2003년부터 매 5년마다)
- 연금수급권 강화 및 실직자 생활안정
 - 연금수급 최고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분할연금 지급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후 60세가 되거나 60세 이후 이혼한 경우(단, 재혼중 지급정지)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 육아, 군복무, 재학, 교도소 및 시설수용기간
 -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 연금의 병급조정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유족보상, 산재보상법에 의한 장해·유족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유족보상을 받는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은 1/2만 지급
 - 55세 이상 65세 미만 연금수급자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연금지급 정지
- 국민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의 참여확대
 - 기금운영위원회의 확대 및 가입자 참여확대
 - 현행 15인(가입자대표 3인)→20인으로 확대(가입자대표 12인; 노사 각 3인 지역가입 6인)
 - 위원장 변경(재정경제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회의 가입자 참여확대
 - 비상임 이사 6인 중 노·사·지역가입자대표 각 1인 이상
 - 비상임 이사 6인 중 5인을 가입자대표로 구성할 예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영 전문성 및 민주성 확보
 - 공단의 기금이사를 공개채용하도록 하고 기금이사의 추천은 비상임 이사 6인과 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개정법은 1999년 1월 1일 시행(도시지역 확대적용은 4월 1일)

자료 : 문형표(2000).

이러한 제도하에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9.1% 수준 정도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이다. 만일 이와 같은 보험료 인상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급여수준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추후 보험료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 반발 및 정치적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설사 이 같은 보험료인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향후 노동시장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왜곡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사회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⁶⁾.

2) 특수지역연금

특수지역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공무원연금제도로써 1960년에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 판검사, 경찰직 등 23만 7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적용대상 공무원 수가 1997년의 98만 2천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는 일반공무원의 자연증가와 1980년도에 임시직, 잡급직 및 전문직의 제도가입 그리고 1989년도에 국립기관의 교사직과 교도직을 가입자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구조조정 및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퇴직자 수의 증가로 가입대상은 1998년 현재 95만 2천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금수급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재직공무원 대비 수급자 수는 1980년의 0.3%에서 1998년에는 9.4%로 높아졌다⁷⁾.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경우 1973년에 제도가 도입되고 1975년부터 실시 초기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사립의 초·중·고등

6) 문형표(2000) 참조.

7) 문형표(2000) 참조.

학교, 전문학교 및 대학의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제도가 발족되었으나 1978년부터는 이들 학교기관의 사무직으로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가입자의 추이를 보면 1975년 40,347명의 수준으로부터 1999년에는 207,664명으로 확대됨으로써 1975~99년간 연평균 8.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급자는 제도 실시 7년 후인 1982년에 13명의 퇴직연금을 지출하기 시작하여 총연금수급자는 1999년 20,084명으로 증가하여 동 기간중 연평균 34.6%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학연금제도 가입자의 재직기간구성을 분석해 보면 연금수급자가 처음 발생했던 1982년에는 20년 미만 근속자가 107,718명(99.9%)이고 20년 이상 근속자는 29명(0.1%)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36,268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입자의 17.4% 수준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연금수급자가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⁸⁾.

군인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1960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63년에 제도가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장기복무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약 15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군인연금제도는 제도 발족 당시부터 연금수급권자가 발생하였고(1961년에 5,057명에게 각종 연금이 지급되었음) 1975년 1만 4천명, 1980년 2만 5천명, 1985년 3만 1천명 그리고 1991년에는 약 4만명이 각종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역자 수의 변동이 미미하여 제도가입자가 고정적인 데 비하여 수급권자는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발생요인이 더욱 큰 실정이다. 실제로 군인연금의 연금재정은 중앙정부 지원의 적자보전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즉 수입액은 각출수입(국가부담금과 가입자기여금)과 중앙정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적자보전금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⁹⁾.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

8) 문형표(2000) 참조.

9) 문형표(2000) 참조.

라 재해보상 및 근로보상적 성격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이다. 특수직역연금의 급여는 보호내용의 성격에 따라 소득보장적 성격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와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재해보상적 성격의 장해급여(장해연금 및 보상금) 및 공무상 요양급여(공무상 요양비 및 일시금)와 부조적 성격의 보조급여(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위금)가 있다¹⁰⁾(<표 II-2> 참조).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제도의 발전 및 시대적 요청에 의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기여금 및 부담금의 경우 1960년 최초의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 사용자로서의 국가와 공무원이 각각 봉급월액의 2.3%에서 1969년 3.5%, 1970년 5.5%, 1996년 6.5%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9년 1월 1일 현재 7.5%에 이르고 있다.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1960년 당시 60세로 제한되었으나 이후 1962년에는 폐지되었다가 1996년 신규임용자부터는 다시 60세로 제한하였다. 또한 퇴직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권도 제도도입 당시에는 허용되었으나 1962년에 선택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970년 이후 다시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부조금 및 부가금의 신설 또는 폐지가 반복되었으며,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률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1991년에 도입된 퇴직수당제도는 민간의 퇴직 일시금과 유사한 형태이나 그 지급액은 민간법정퇴직금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수당지급의 소요비용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1996년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¹¹⁾.

10) 문형표(2000) 참조.

11) 문형표(2000) 참조.

<표 II-2> 공무원연금 급여종류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퇴 직 금 여	퇴직연금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보수월액×(0.5+20년 초과 재직연수×0.02)
	퇴직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급에 같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재직연수×(1.5+5년 초과 재직연수×0.01)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공제 재직연수×(1.5+공제 재직연수×0.01)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5년 미만 재직자 : 보수월액×재직연수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 보수월액×재직연수×(1.5+5년 초과 재직연수×0.01)
유 족 금 여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의 70%
	유족연금 부가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연금일시금의 25%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0.25×(36-퇴직연금수급월수)×1/36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같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유족 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액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보수월액×재직연수×지급비율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 35%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5% - 15년 이상 20년 미만 : 50% - 20년 이상 : 60%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1998. 문형표(2000)에서 재인용.

3)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에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급여와 보험료간의 불균형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특수지역연금제도에서 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에 비하여 특수지역연금이 연금재정의 문제점이 보다 가시화된 이유를 특수지역연금의 역사가 오래되어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연금제도와 직역연금제도의 구조적 차이점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산식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계층간 재분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직역연금제도는 소득비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급여수준에서도 두 제도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중위소득자와 직역연금가입자가 동일하게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직역연금가입자는 최종소득의 50%를 급여로 받게 된다. 더욱이 급여산정 기준을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인데 비하여 직역연금의 경우는 최종소득으로써 그 수준이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역연금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평균 기대급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밖에도 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급여조정방식, 유족급여지급률, 일시금 선택권의 유무 등도 두 연금제도의 재정불균형도를 상이하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¹²⁾.

공무원연금의 경우 문형표 외(1999)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기금은 2001년경에는 완전히 소멸되고 이후 연간 적자발생규모는 2005년 1조

12) 문형표(2000) 참조.

8천억 원, 2010년 6조 원, 2020년에는 31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경우 1999년 말 현재 수입액은 1조 683억 원 인 반면 지출액은 6,824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기금은 3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연금재정에서 수입액의 신장률에 비하여 급여지출액 신장률이 훨씬 높아 머지 않은 장래에 이 제도 역시 연금재정의 수지불균형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다. 김현국(1999)이 추계한 사립학교교원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기금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6년경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현재 중앙정부지원의 적자보전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에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5,651억 원에 달하고 2000년의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이 6,17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9.2% 증가할 예정이다¹³⁾.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가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사료된다.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이 현재 수준의 2배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가입자의 반발과 정치적 어려움이 예상된다¹⁴⁾.

국민연금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적용대상의 도시자영자 확대와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확대적용자 즉, 도시지역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와 상용근로자, 전산업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확대적용자들에 대한 소득과약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다¹⁵⁾. 국민연금제도 확대적용자들의 소득신고자료의 분석결과(보건복지부 분석결과)는 확대적용자들의 소득과소신고 경향을 명확히 보이고 있

13) 문형표(2000) 참조.

14) 문형표(2000) 참조.

15) 전영준(1999) 참조.

다)6). 보건복지부는 확대적용자들을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II-3>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비교

		국민연금제도	지역연금제도
가입단위		개인(지역연금은 세대단위)	개인
보험료	납부율	평균소득월액의 9% (1998년 이후)	소득월액의 13% (1999년 이후)
	소득상한	있음 (최고소득등급 제한)	없음
	분담형태	(1999년 이후) 피용자 : 3% 피용자 : 4.5% 사용자 : 3% ⇒ 사용자 : 4.5% 퇴직금전환 : 3% (임의 및 지역가입은 전액본인부담)	국가 및 사용자 : 7.5% 가입자 : 7.5%
급여 종류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장해연금 ┐ 가입기간 1년 이상 ·유족연금 └	·퇴직연금 : 가입기간 20~33년 ·장해 및 조기사망시 단기급여 지급
노령 (퇴직) 급여	기본급여 산식	$0.3 \times (\overline{W} + W) \times (n/40)$ (소득재분배기능)	$(0.5 + 0.02n) \times W^*$ (소득비례형)
	급여산정 기준	전가입기간 평균소득(W) 및 전가입자 평균소득(\overline{W}) 기준	최종소득(W*) 기준
	연금액 조정	소비자물가상승율(CPI) 기준	재직자 보수 기준 연동
	지급개시 연령	60세부터 지급 (추후 65세로 연장)	퇴직 직후부터 지급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가능
	유족급여	기초연금액의 60%	기초연금액의 70%

자료 : 문형표(2000).

16) 자영업자와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소득과소신고경향은 다음과 같은 양자의 유인의 일치에서 발생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와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주에게는 사업소득의 과소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 I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4인 이하 고용 자
영자
- II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소득이 없는 자영자
- III 유형 : 구멍가게·노점상 등 영세상인
- IV 유형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 V 유형 :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근로자

먼저, 확대적용자 신고소득의 전체 평균인 84만 2천 원은 사업장 가입자 평균(144만 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확대적용자들 중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는 제 I 유형의 평균소득도 120만 원 정도로 꽤 낮다고 할 수 있다. 신규가입대상자의 소득과 신고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책정한 확대적용자의 신고기준과 각종 공적자료와 비교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99년 2월 사회보장학회주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힌 소득활동별 신고권장 소득 수준은 자영자, 근로소득자, 의료보험자료 보유자, 자료 미보유자 각각 208만 9천 원, 126만 5천 원, 140만 6천 원, 99만 원이었으며 전체 가입대상자의 평균권장소득은 1,419천 원이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추계한 확대적용자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실제 신고소득은 매우 낮은 편이며 권장신고소득과 신고소득의 차이의 상당부분은 소득의 과소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4>와 <표 II-5>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통계청에서 조사한 업종별 소득수준에 비하여 낮게 신고한 제 I 유형의 사업자는 89.1%에 달하며 제 II 유형에 속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영자가 통계청 조사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신고하였다. 제 IV 유형에 속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신고소득 평균은 75만 원으로서 통계청이 『영세사업체 조사실태 보고서』에서 밝힌 1~4인 사업장 월평균 소득 94만 5천 원(월급여액+연간특별급여액/12)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⁷⁾.

<표 II-4> 소득활동형태별 신고권장소득 수준

(단위 : 천명, %, 천원)

구분	전체	자영자	근로소득자	의보자료 보유자	자료 미보유자
대상인원	10,139	2,428	2,283	2,540	2,887
권장소득 평균액	1,419	2,089	1,265	1,406	990
사업장가입자 평균액대비	95.2	140.2	84.9	94.4	66.4

주 : 1998년 11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평균액(149만 원) 대비임.

자료 : 오근식·이용하,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 자료, 1999. 2. 4., 전영준(1999)에서 재인용.

<표 II-5> 도시지역 확대 대상자 등급별 분포

(단위 : 명, 원, %)

유형	계	표준소득월액 등급								평균 신고 소득
		1~8	9~13	14~16	17~21	22~27	28~33	34~38	39~45	
I	706,766 (100)	16,170 (2.3)	42,974 (6.1)	50,510 (7.1)	142,792 (20.2)	248,221 (35.1)	139,360 (19.7)	28,298 (4.0)	38,441 (5.4)	1,201,877
II	939,450 (100.0)	46,056 (4.9)	110,170 (11.7)	121,292 (12.9)	270,568 (28.8)	280,438 (29.9)	93,690 (10.0)	8,574 (0.9)	8,662 (0.9)	875,782
III	1,180,465 (100)	86,625 (7.3)	205,867 (17.4)	201,377 (17.1)	332,639 (28.2)	295,520 (25.0)	45,807 (3.9)	6,683 (0.6)	5,947 (0.5)	745,437
IV	638,181 (100)	44,159 (6.9)	102,121 (16.0)	114,232 (17.9)	178,261 (27.9)	172,323 (27.0)	19,848 (3.1)	2,749 (0.4)	4,490 (0.7)	750,144
V	559,984 (100)	67,927 (12.1)	122,778 (21.9)	106,865 (19.1)	114,071 (20.4)	141,938 (25.3)	4,457 (0.8)	432 (0.1)	1,516 (0.3)	642,764

주 : 월소득 1~8등급 : 22~31만 원, 9~13등급 : 34~48만 원, 14~16등급 : 52~62만 원, 17~21등급 : 67~92만 원, 22~27등급 : 99~138만 원, 28~33등급 : 147~197만 원, 34~38등급 : 208~254만 원, 39~45등급 : 267~360만 원 이상

자료 : 보건복지부, 전영준(1999)에서 재인용.

17) 전영준(1999) 참조.

<표 II-6> 통계청 조사 소득대비 신고소득비율 분포(유형 I)

(단위 : 명, %)

구 분	업종수	신고자수	구성비
계	73	389,725	100
100% 이상	12	42,378	10.9
90~99%	11	153,036	39.3
80~89%	12	46,192	11.9
70~79%	16	58,038	14.9
60~69%	12	46,480	11.9
60% 미만	10	43,601	11.2

자료 : 보건복지부, 전영준(1999)에서 재인용.

<표 II-7> 통계청 조사 소득대비 신고소득비율 분포(유형 II)

(단위 : 명, %)

구 분	업종수	신고자수	구성비
계	73	643,016	100
100% 이상	2	2,708	0.4
90~99%	5	5,097	0.8
80~89%	6	58,317	9.1
70~79%	13	142,765	22.2
60~69%	17	148,019	23.0
60% 미만	30	286,110	44.5

자료 : 보건복지부, 전영준(1999)에서 재인용.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와 관련된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급여의

하향조정과 연금보험료의 상향조정이 있었으나, 이들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금급여산식상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하여 과소신고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높은 연금급여 수준은 미래세대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한 연금급여산식은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 등의 소득 과소신고를 유발시킬 것이다. 따라서, 실제 평균적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소득재분배가 근로자로부터 자영업자로 이루어지는 소득의 역분배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¹⁸⁾.

나. 퇴직금제도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법정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으로써의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다¹⁹⁾.

퇴직금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퇴직금은 종업원의 퇴직시 일시불(Lump Sum)로 지불되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종업원의 퇴직시 해당 퇴직자 근속기간 1년에 30일 이상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고용주와 종업원(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수단으로는 “종업원

18) 전영준(1999) 참조.

19) 방하남(2000) 참조.

퇴직보험²⁰⁾이 있는데²⁰⁾ 이 보험상품의 역할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이에 대한 고용주의 자의적 운용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외에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담보로 기업이 대부를 받음으로써 그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 상품은 2000년 10월부터 판매가 중단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보험²¹⁾”이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가 종업원퇴직보험과 다른 점은 퇴직급여에 대한 근로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급여 형태를 일시금과 연금형태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보험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퇴직보험제도를 도입한 의도는 기업 측에는 퇴직금 일시지급에 대한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근로자 측에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퇴직보험제도는 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노후소득보장수단 등 사회보장기능으로서의 실효성 문제, 퇴직금 지급형태상의 문제, 그리고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²²⁾.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요약·정리한 논문으로는 방하남(2000)이 있는데 본 절에서는 방하남(2000)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20) 1999년 6월 현재 수신고는 14조 2850억 원에 달한다.

21) 1999년 4월부터 1999년 9월까지의 수신고가 1조 4831억 원에 달한다.

22) 이외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많이 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고소득·고직급 근로자에게 높은 급여가 지급되었다. 또한 고직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들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 액수를 더욱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퇴직금의 액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퇴직금은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때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들 제도가 과거 퇴직금제도가 수행하였던 기능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1998)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받은 퇴직금을 주로 어떤 용도에 썼거나 쓸 계획인가”하는 질문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기본 생활비’로 쓴다고 응답한 비율이 53%에 이르고, ‘미래를 위해 저축 혹은 투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1%에 지나지 않았다.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방하남(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이직시 받은 퇴직금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저축 혹은 투자’에 쓴 비율은 약 33%에 지나지 않았고, ‘기타 다른 생활비’로 쓴 사람이 4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외 ‘자녀들의 결혼, 학비마련’ 등에 쓴 비율이 11%, ‘주택마련 혹은 주택이전에 쓴 비율이 6.6%, 사업자금에 쓴 비율이 5.7%이다. 이렇게 퇴직금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빠른 정년퇴직 관행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현재 60세이며 장기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반면, 이보다 훨씬 이른 55세에 평균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는 고용구조와 이 시기에 자녀들의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등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 입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이 시기에 수급한 퇴직금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 용도보다는 여타 용도에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²³⁾.

퇴직금의 실업보험으로서의 역할은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실업보

힘기능 자체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방하남(2000)은 밝히고 있다. 그 증거로 방하남(2000)은 이근창(1986)의 연구와 한국노동연구원(1998)을 들고 있다. 이근창(1986)의 설문에서 중도퇴직금을 실업기간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어느 정도 충분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6개월 이하의 실업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은 36%가 충분하다고 하였고, 약 50.5%가 불충분 혹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월 이상 실업경험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18.8%인 반면, 불충분 혹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약 70.5%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도 실태조사에서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퇴직금과 퇴직수당만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봉급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실업보험으로서의 기능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금은 정년퇴직시 연금으로 지급 받지 않고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저축하기보다는 퇴직당시의 가계수요에 사용하고 있어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퇴직금의 지급형태인 일시금이라는 지급형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보다는 중간퇴직시 혹은 정년퇴직시 수급하는 퇴직일시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애 가계 지출구조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⁴⁾.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일 것이다. 퇴직금제도 도입 초기에 퇴직금의 성격이 퇴직자에 대해 공로보상이던 것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근무 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한 추후보상으로서의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퇴직금에 대한 지불보장은 누적퇴직금을 위해 기업에서

23) 방하남(2000) 참조.

24) 방하남(2000) 참조.

얼마만큼 준비재정을 마련하는가에 달려있는데, 누적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준비재정의 비율이 곧 퇴직금에 대한 기업의 지불보장수준이 된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로 민재성(1982), 정경배(1988) 그리고 박영범(1991)이 있는데 이들이 연구를 수행한 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1982년에 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사내유보하는 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사외유보를 지향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내유보를 하거나 퇴직금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상 기업의 누적퇴직금 적립정도는 미미한 상태에 있고 이에 따른 지불보장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퇴직금의 지불보장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퇴직금의 법적 보호장치를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7년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퇴직금 포함) 최우선 변제조항(제37조 2항)이 헌법과 불합하며, 기업도산시 질권 혹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해서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불형태를 일시불 대신 연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제공하게 하는 한편 기업연금급여에 대비한 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급여지급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대체는 제도의 대체에 따른 근로자의 후생증진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정책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의 개편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25) 방하남(2000) 참조.

<표 II-8> 퇴직금의 사용용도

용도	비율(%)
기본생활비	53.1
미래를 위한 저축/투자	20.9
본인의 사업자금	4.3
직업훈련 및 교육수강	4.1
주택마련/이전/전세금 등	4.6
자녀의 학비 혹은 결혼비용	3.5
채무변제	7.6
기타	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 방하남(2000)에서 재인용.

<표 II-9> 중도퇴직금의 실업기금 생활보장 효과

	매우충분	어느정도충분	불충분	매우불충분	무응답
6개월 이하	4.0	32.3	34.3	16.2	13.1
7개월 이상	1.4	17.4	26.1	43.5	11.6
합 계	3.0	26.2	31.0	27.4	12.5
100.0	(5)	(44)	(52)	(46)	(21)

자료 : 이근창(1996), 방하남(2000)에서 재인용.

<표 II-10> 퇴직금+퇴직수당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기간

기간	비율(%)	기간	비율(%)
1~ 2개월 정도	34.7	1년 정도	7.3
3~ 5개월 정도	35.9	2~3년 정도	4.0
6~12개월 정도	16.0	3년 이상	2.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 방하남(2000)에서 재인용.

<표 II-11> 퇴직금의 생활비외의 사용처(복수응답비율)

(단위 : 명, %)

사 용 처	실 수	비율
자 녀 교 육 비	197	63.1
자 녀 결 혼 비	172	55.1
저 축	140	44.9
자 영 사 업	76	24.4
부 도 산 매 입	49	15.7
부 채 상 환	48	15.4
내 집 마 련	40	12.8
주 식 투 자	39	12.5
자 녀 의 사 업 밑 천	21	6.7
국 공 채 매 입	12	3.8
친 지 의 사 업 투 자	7	2.2

주 : 실수는 전년 퇴직자 312명 중 복수 대답의 실수이며 비율은 312명에 대한 것임.

자료 : 이근창(1986), 방하남(2000)에서 재인용.

<표 II-12> 기업의 평균 누적퇴직충당금 규모(1996년도)

(단위 : 만원, %)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누적퇴직충당금/ 자본금	누적퇴직충당금/ 총자산	누적퇴직충당금/ 근로자 수
548,529.36	0.34	0.032	1,313.13

주 : 종사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1998., 방하남(2000)에서 재인용.

다. 개인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에 도입되었다. 개인연금저축은 특수한 장기저축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 조세특례규제법의 의해 규

정된 조세지원제도와 이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여타 저축수단과의 차별된다. 개인연금저축의 정식명칭은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 등으로서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축기간 :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 자격은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로서, 저축형태 및 한도는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월 1만 원 이상, 매월 100만 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으며, 이 종류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종금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다.

개인연금수급 요건은 불입기간이 만료되고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며 불입누계액이 120만 원 이상이다. 지급주기는 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수익자 요청시 3, 6, 12개월 단위도 가능하다.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연금형식이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한다.

개인연금이 여타 저축수단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이유는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보험료 불입액의 40%를 소득세과표에서 소득공제하고²⁶⁾, 연금급여 수급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5년 내 중도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²⁷⁾.

개인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원의 폭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다. 개인연금의 도입이 노후소득보장책을 위한 새로운 저축수단의 제공으로서의 의미도 있으나 1994년 도입 당시 여타 세제지원 저축수단과 함께 국민저축을 증대하자는 의미도 아울러 부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연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현

26) 연 72만 원 한도.

27) 중도해지시까지 불입액의 4%, 연간 7.2만 원 한도.

행의 제도하에서 5년 내에 중도해지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되게 되어 있어, 개인연금가입자들이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5년 이상 불입자가 중도해약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액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절한 투자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연금불입 금융기관을 개인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다시 말하면 중도해지한 개인이 일정기간 내 다른 금융기관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중도해지금을 예치할 경우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연금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우리나라의 연금관련 조세제도

연금관련 조세제도는 연금보험료 불입단계, 기금수익발생시, 그리고 연금급여시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표 II-1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현행의 과세는 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세제도의 공통점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연금보험료 불입단계와 연금급여시의 과세상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금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가.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거의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자영업자가 가입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의 기본 형태는 근로자의 각출금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은 허용되지 않는 반면 급부시 급여액이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급부시 비과세되는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포함된다. 고용주에 적용되는 연금과세 제도는 고용주의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여부인데 공적연금의 경우는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100%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각종 공적연금제도의 연금급여지출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정부로부터의 막대한 적자보전금 지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일반회계의 경직성과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퇴직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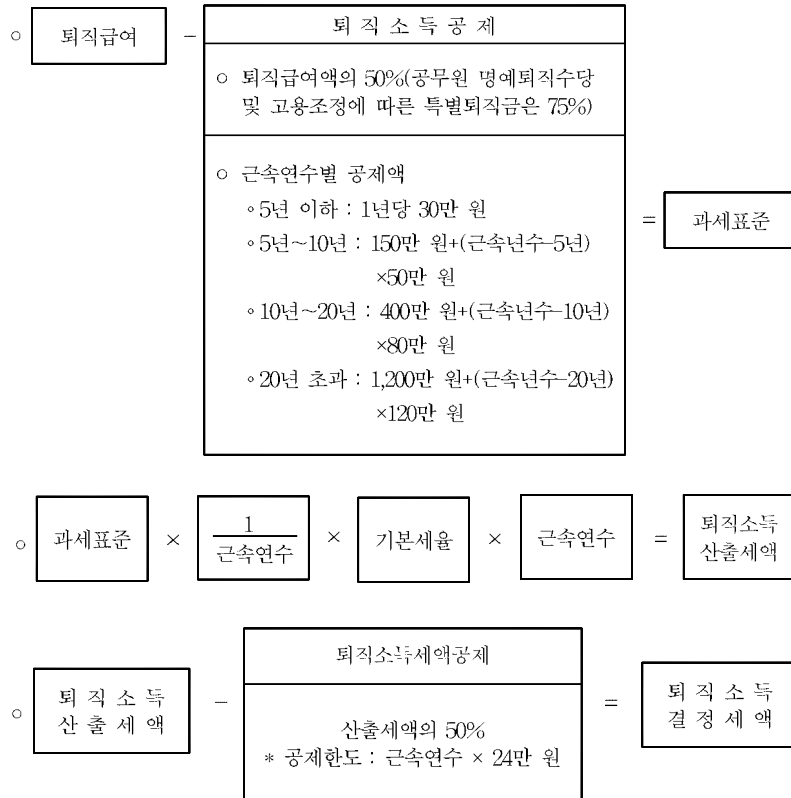
퇴직금 준비금 총당의무는 고용주에 귀속되므로, 퇴직금 준비금 적립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의 퇴직급여 준비금 적립은 사내적립과 사외적립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용주에 의한 사내적립은 퇴직급여 총당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다. 퇴직급여 총당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한도는 다음 두 가지(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①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② 총당금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 사외적립의 경우는 주로 종업원퇴직보험이나 퇴직보험의 형태로 보험회사에 적립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 보험료불입액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다. 이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사내적립시 실제 총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정상에만 존재하는 사내적립에 대해서도 지불보장이 되는 사외적립과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금 제도의 경우 세제상 근로자는 급부단계에서만 관련되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고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

가 이루어지는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단체보험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금의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와 단체퇴직보험금은 50%, 명예퇴직수당은 75%가 수령액에서 공제된다. 이와 아울러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차등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산출세액 산정과정에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퇴직소득이 장기형성소득이고 소득세제 세율구조가 누진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장기형성소득의 실현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실질세부담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결정세액은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공제한도=근속연수×24만 원)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의 이중적인 세제지원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1996년~97년 귀속년도 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2% 정도였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1]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제도



다. 개인연금제도

현재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연금보험료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금수급액 지급시 비과세되고 있다.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납입보험료 소득공제는 연간 72만 원 한도(총납입액의 40%)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표 II-13> 현행의 연금과세제도

연금제도	연금보험료 불입시	적립기금 이자수익	급여시
국민연금		비과세	비과세
- 고용주	손금산입		
- 근로자	소득공제 불허용		
- 자영업자	보험료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허용 (연간 72만 원 한도)		
특수지역연금		비과세	비과세
- 고용주	손금산입		
- 근로자	소득공제 불허용		
퇴직금	50%에 대해 손금산입 ¹⁾ 보험회사에 적립시 100% 손금산입	해당사항 없음 비과세	과세하나 유효세율이 낮음; 금액에 따라 세부담 상이
개인연금	보험료 불입액 40% 에 대해 소득공제 ²⁾ 허용 (연간 72만 원한도)	비과세	비과세

주 : 1) 여기서 50%라 함은 당해 진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
급여 추계액의 50%를 의미함. 만일 이 금액이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손금산입의 한도금액은 후자금액이 됨.

2) 55세부터 연금급여 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3. 세제상 문제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후소득보장책들에는 상이한 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별로 세법상 규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연금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은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불입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급여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효세율이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여타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책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이들 제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조세제도 개편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연금과세체계를 현행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불허용·연금급여에 대한 비과세 체계와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중 장기적으로 어느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주요국의 연금과세제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소득의 증가추이, 그리고 연금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연금과세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각종 사회보장 체계의 상호연계성 차원에서의 조세지원이나 연금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체계를 상호연계하여 조세지원의 규모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원의 폭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다. 노후소득보장수단과 실업보험,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을 그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지원을 그 규모와 수단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와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연금과세체계와 연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역할 분담도 연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인구의 노령화에서 비롯된 공적연금 급여규모의 급격한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써의 역할 수행

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적절한 조세지원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기존연구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경제적 효과 특히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치적인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의 순저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지원혜택의 소득계층별 귀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은 기본적으로 장기저축이므로 유동성이 매우 제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유동성 제약에 걸리기 쉬운 저소득층의 이러한 저축수단에 대한 투자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덜하므로 장기저축에 투자할 여지가 많을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정책들에 대한 조세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세제개편이 요청되고 있다. 먼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은 머지 않은 장래에 재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연금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금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수입을 연금재정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 가장 넓은 가입자를

포괄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향후 연금소득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운용의 기본구조가 적립방식이고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아직 본격적인 연금급여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은 연금소득의 규모가 크지 못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 수입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와 함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이에서 발생할 세수감소가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금과세 실시의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연금과세체계 개편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노후소득보장책으로써의 퇴직금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과거의 퇴직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노후소득보장수단이나 실업보험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퇴직금의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퇴직금의 지급형태(일시금), 우리나라 소비자 금융의 관행 그리고 고용관행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퇴직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과 실업시 생활보조비로써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시점이 주로 55세이며, 현행의 국민연금 급여개시 연령이 60세이며 향후 65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년퇴직 시점부터 국민연금 급여개시 연령간의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정년퇴직 연령기에는 자녀교육, 결혼 등 많은 지출이 행해질 시점이나 소비자금융과 정부에 의한 이러한 종류의 지출에 대한 대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이러한 가계지출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계층의 경우 실업시 생활보조비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퇴직금의 수준은 근속연수에 비례하므로 이들의 퇴직금 수준은 매우 낮아 실업급여로서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비교적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계층의 근로자

의 경우 과거 퇴직금 누진제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으며,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직시점의 임금수준이므로 고소득 근로자의 퇴직금 규모는 매우 커서 형평성 차원에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퇴직금 지급보장에서도 문제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손비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소득충당금을 독립된 금융기관에 적립하기보다는 내부적립 형태로 장부상에 충당금 적립을 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기업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출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퇴직금 운용환경이 열악하여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에 이와 대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기업연금제도하에서는 각 기업들은 외부 금융기관에 기업연금급여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강구하는 한편,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하에서 퇴직금제도와 의무적용규정에 대한 개편이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순조로운 대체를 위해서는 기업측면에서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현재 퇴직금에 대해 부

여되고 있는 조세지원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기업연금으로의 이행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연금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특수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의 제도하에서 5년 내에 중도해지시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되어있어, 개인연금가입자들이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많은 제약이 있다. 더욱이 5년 이상 불입자가 중도해약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액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절한 투자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연금불입 금융기관을 개인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중도해지한 개인이 일정기간 내 다른 금융기관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중도해지금을 예치할 경우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연금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Ⅲ.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연금소득 과세제도

본장에서는 주요국의 연금제도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장에서 살펴볼 나라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포함된다.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를 경험하였으며, 각종 연금제도와 관련 조세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연금과세체계와 사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각국의 제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공적연금(Social Security)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적연금은 기업연금제도(Corporate Pension)와 개인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운영되고 있다.

가. 공적연금

1) 연금제도

미국의 공적연금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의 시초는 1935년에 일 반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노령·유족·장해보험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의 도입이며 이후 적용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전체 취업인구의 약 96%가

가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제도인 철도퇴직제도(Railroad Retirement System: RRS), 군인연금제도(Military Retirement System: MRS), 연방공무원연금제도²⁸⁾(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CSRS,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FERS) 및 다수의 주·지방정부관계 공무원연금제도가 있다²⁹⁾. 각 직역연금제도는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OASDI와는 별개로 발전하여 왔으나 점차 OASDI제도와 적용대상, 재정구조 및 급부방식 등 여러 면에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계기는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에 따른 실업과 빈곤의 심화로 정부주도의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있다. 초기의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적립방식(funded system)으로 운용되었으며 제한된 적용범위와 사보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

1939년부터는 적립방식(funded system)에서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제도 초기에는 적은 부담으로 많은 급부가 가능하여 지급개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수급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의료보장 및 보족보장소득제도 등의 공적부조급부 범위 또한 확대하였다. 제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대상자의 적용범위를 6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로 농업종사자, 철도직원도 포함시켰으며 이외에도 가사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제도가 성숙기로 접어든 1970년대 말부터는 사회보장제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급여확대로 인한 연금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출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연금재정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28)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의 CSRS에 가입되어 있으나 1984년 이후 채용된 모든 연방공무원은 새로운 공무원연금제도인 FERS의 가입과 동시에 OASDI의 적용을 받게 된다.

29) 주·지방정부 공무원 중 주·지방정부 자체의 연금제도가 없는 경우 또는 주정부가 OASDI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OASDI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노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대비 현역 근로자 수) 및 부양률(연금수급자 수 대비 가입자 수)은 급격히 상승하여 세대간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III-1> 참조).

<표 III-1> OASDI 연금제도의 부양률 추이

(단위 : 백만명)

	가입자수(A)	연금수급자 수(B)	A / B	B/A × 100
1950	48.3	2.9	16.5	6
1960	72.5	14.3	5.1	20
1970	93.1	25.2	3.7	27
1980	112.0	35.1	3.2	31
1990	132.8	39.5	3.4	30
2000	145.8	46.7	3.3	31
2010	156.9	53.8	2.9	34
2020	161.1	66.7	2.4	41
2030	163.0	79.2	2.1	49
2040	166.1	83.7	2.0	50
2050	167.8	86.4	1.9	51

자료 :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The 1993 Annual Report*, 1993.

연금재정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고 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1983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었다.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 이후 재정운영방식이 수정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의 보유 수준이 증가하게 되었다. 개정안에는 각출료의 인상과 적용대상자의 확대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재정안정화 조치를 위해 각출료를 인상하는 한편 신규채용 연방공무원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근로자-고용주의 사회보장세율을 합한 것의 3/4 정도였던 자영

업자의 세율을 근로자-고용주 사회보장세율을 합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고소득자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과세소득에 산
입시키고 연금과세수입은 전액 OASDI신탁기금으로 이전되도
록 하였다.
- 연금개시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기로 나누어 최종 67
세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 최저생활비용의 조정 실시기간도 종전보다 반년의 기간을 더
두고 조정하는 한편 적립비율이 감소할 경우는 연금급여액을
소비자물가나 임금상승률 중 낮은 것에 연동하도록 하는 조치
를 마련하였다.

<표 III-2> OASDI 제도의 재정추이

(단위 : 10억 달러, %)

	수입	지출	수지차	기금규모	적립률
1960	11.4	11.6	-0.2	22.9	197
1970	36.1	30.3	5.8	37.7	124
1980	117.4	118.5	-1.1	32.2	80
1985	197.9	188.5	7.4	39.8	21
1987	226.9	207.3	19.6	65.4	32
1990	306.8	248.6	58.2	214.9	86
1992	338.3	287.5	50.7	319.2	110
1995	396.3	338.8	57.5	483.2	143
1997	416.1	365.2	50.9	630.9	173
2000	522.4	409.0	113.4	947.8	199
2005	673.2	525.8	147.4	1,599.8	304
2007	750.6	590.3	160.3	1,991.7	337

주 : 적립률 = (기금규모/지출) × 100

자료 :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The 1993 Annual Report*, 1993.

나. 가입대상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에는 가입대상 적용범위가 민간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일정수입 이상(1995년 기준 630달러 이상)의 모든 고용주, 근로자, 자영업자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단, 목사, 외국정부와 국제기관 종사자, 농업노동자 및 가사노동자와 주·지방 공무원 등의 가입은 임의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1995년 4월 현재 4,300만명이 OASDI의 연금급여혜택을 받았으며 1997년 지출된 급여의 총액은 3,652억 달러, 1999년은 3,856억 달러로 예상된다.

1) 재원조달 및 보험료

OASDI의 재원은 가입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고용주의 각출금, 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및 연금과세수입 이월금(1984년 이후)과 적립금의 운영수입으로 조달되고 있다. 사회보장세는 목적세 형태로 근로소득에 부과되며 매년 필요지출의 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각출률은 각각 6.2%로 근로자 1인에 적용되는 총각출률은 12.4%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회보장세 12.4%를 단독으로 부담한다.

2) 연금급여 산정방식

1979년 이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Primary Insurance Amount)은 가입자의 재평가된 월평균소득(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에 의해 결정된다. OASDI 제도하의 모든 연금급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자동연동함으로써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가 6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전년 이전의 각 연도 사회보장세의 대상소득을 전국 평균임금의 상승을 반영하여 재평가한 후 62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부터 나열한 35년간의 평균소득으로서 계산된다.

월평균소득(AIME)을 이용한 개인의 기본연금액(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이 산정되며 1999년도에 적용되는 월평균소득에 의한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OASDI 기본연금액(PIA)} = 0.9 \times \text{AIME}_1 + 0.32 \times \text{AIME}_2 + 0.15 \times \text{AIME}_3$$

AIME₁ : 제1단계 소득구분으로 평균지수화된 월소득(AIME)의 첫 505달러까지를 포함

AIME₂ : 제2단계 소득구분으로 505달러 초과 3,043달러 이하의 AIME

AIME₃ : 제3단계 소득구분으로 3,043달러를 초과하는 AIME

위와 같은 월평균소득에 대한 구분(bend point)은 사회보장법³⁰⁾에 의한 평균소득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OASDI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최대급여액도 기본연금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공식을 통해 산정된다. 최대급여액 산정공식 또한 기본연금액의 함수로 나타나고 1999년 급여지급이 개시되거나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전에 사망한 가입자의 최대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기본연금액 구분도 사회보장법³¹⁾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begin{aligned} \text{최대연금급여액} = & (1.50 \times \text{PIA}_1) + (2.72 \times \text{PIA}_2) + (1.34 \times \text{PIA}_3) \\ & + (1.75 \times \text{PIA}_4) \end{aligned}$$

30)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15(a)(1)(B) 참고.

31)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15(a)(2) 참고.

PIA₁ : 기본연금액구분(PIA-interval bend point) 제1단계로 645달러까지 포함

PIA₂ : 기본연금액구분 제2단계로 645달러 초과 931달러 이하의 PIA

PIA₃ : 기본연금액구분 제3단계로 931달러 초과 1,214달러 이하의 PIA

PIA₄ : 기본연금액구분 제4단계로 1,214달러를 초과하는 PIA 포함

3) 급여의 종류

OASDI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노령·장애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피부양자연금 등이 있다.

가) 노령연금

기초연금인 노령연금을 100%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의 완전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40분기 이상 되어야 한다. 노령연금의 완전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62세 이상으로 노령연금의 완전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는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조기수급할 경우 연금급여액이 감액되어 기본연금액의 80%가 지급된다³²⁾. 65세 이후에 연금수급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는 7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수급당시의 급여액은 증액되어 기본연금액의 115%가 지급된다³³⁾.

32) 65세 미만인 자의 연간 소득이 8,04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2달러당 1달러씩 감액된다. 65~69세의 연금수령인이 연간소득 11,16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3달러당 1달러씩 감액한다(소득제한 금액은 평균임금의 증가에 따라 매년 조정).

33) 이월되는 노령연금의 수급액은 매월 0.25%씩 증액되어 연간 3%가 증가하게 된다.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의하면 연금개시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기로 나누어 최종 67세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이 같은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방안의 취지는 인구고령화 전망에 따른 연금재정의 건실화와 취업연령의 연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나) 장해연금

OASDI 제도하에서 장해의 정의는 근로 및 소득 취득능력의 상실로 인해 최소한 1년 이상 월간 소득이 500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장해로 인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짓고 있다. 장해연금급여의 수급자격은 65세 이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 5년(20분기)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하며 급여액은 노령연금과 같은 기본연금액의 100% 수준이다. 단, 가입자가 31세가 되기 전에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21세 이후 장해발생 전까지 최소 6분기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만 완전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이전에 일정한 연금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사망한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같은 유족연금급여는 수급대상자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유족의 경우는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의 75~10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가입자가 40분기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완전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사망했을 경우는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에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가 포함되며 준피보험자 자격(18개월 이상 가입)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로 수급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조기·연기 지급의 규정에 의해 62세부터 70세가

지의 지급개시 연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액의 증감이 있게 되는데 수급 1년을 조기수급할 때마다 20%씩 감액 지급하며 수급 1년을 연장할 때마다 80%씩 증액 지급된다.

배우자 유족연금의 경우는 배우자가 65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장애가 적용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16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고아연금의 대상자는 사망한 가입자의 18세 이하인 미혼자녀 또는 19세 이하의 취학자녀가 포함되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자녀에게도 급여의 수급권이 주어진다. 부모연금은 사망한 가입자가 부모를 50% 이상 부양해온 경우가 해당된다.

다. 관련세제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용주의 각출보험료는 손급산업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는 급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과세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각출분은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되고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적연금급여소득(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한 과세원칙은 비과세로 되어 있다. 즉, 근로자입장에서 각출시 과세하고 급부시 비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1983년도의 사회보장세 개정에 따라 급부시의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94년부터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잠정소득(provisional income)의 규모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범위가 정해지며 이로 인한 조세수입은 사회보장기금으로 적립된다.

낮은 잠정소득계층은 사회보장급여의 50% 또는 기준금액 초과분의 50% 중 낮은 금액이 연금소득 과세범위에 포함된다.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시 3만 2천 달러(부부분리신고시는 기초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신자의 경우 2만 5천 달러이며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

음과 같다.

$1/2\{(\text{납세자총소득} + \text{비과세이자소득} + 1/2 \times \text{사회보장급부연금액}) - \text{기준금액}\}$

높은 잠정소득계층의 경우는 1994년부터 독신자의 경우와 부부합산시 각각 3만 4천 달러와 4만 4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사회보장급부액의 85% 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과세가 가능하다.

$(\text{provisional income} - \text{조정된 기준금액}) \times 85\% + \text{사회보장급부액}$
또는 기초금액 중 적은 금액

기초금액은 독신자는 4천 5백 달러, 부부합산신고자는 6천 달러(부부분리신고자는 기초금액 적용되지 않음)이다.

라. 기업연금

1) 연금제도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적연금으로서의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제도 도입 이전인 1875년 American Express사에서 채택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29년의 대공황에 따라 커다란 타격을 받았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다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50년대에 들어서서 소위 'Pension Drive'라고 불리우며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1974년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의 시행에 따라 가입자 보호의 견지에서 가입자격, 수급권부여, 통산규정, 각출·금부 제한 등에 있어 내국세입청

에서 일정기준을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1978년에 도입된 내국세입법 제401조 Plan은 미국 내입세법 조항 제401(k)조에 따르는 기업연금의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일반기업의 기업연금제도이다.

현재 미국의 기업연금은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 확정각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 및 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정급부형은 사전에 결정된 연금지급 공식에 의해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미리 자신의 연금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이다. 확정급부형은 급부계산방식에 따라 균일급부방식, 전기간평균급여방식, 최종급여방식 등이 있다. 확정각출형이란 종업원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각출액을 확정하는 반면 연금 수급액이 각출금의 적립 수준과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확정급부형을 채택한 기업은 1991년 55%에서 1996년 41%로 감소한 반면 확정각출형을 채택한 기업은 1991년 55%에서 1996년 87%로 증가하였다. 기업연금 중 확정각출형에 해당하는 401(k)과 403(b)를 채택하는 기업이 1991년 36%에서 1996년 70%로 증가하였다.

<표 III-3> 기업연금의 형태

	종 류
확정급부형	○ Annuity Plan
확정각출형	○ Money Purchase Plan ○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 종업원 저축제도(Thrift Plan) ○ 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 ○ 401(K) Plan(Cash or Deferred Arrangement : CODA) ○ Taft-Hartley Plan ○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
복 합 형	○ Cash Balance Plan ○ 목표급부제도(Target Benefit Plan) ○ 연령가중제도(Age-Weighted Plan) ○ 기초제도(Floor Plan)

2) 관련세제

사업주각출금은 일정한도까지 손금산입되고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확정급부형의 경우 종업원 1인당 연간급부액 112,221 달러에 상당하는 각출금 또는 각 가입자의 과거 최고 3년간 평균급여 100%의 연간급부액에 상당하는 각출금 중 낮은 금액까지는 손금산입된다.

확정각출형의 경우 전 종업원에 대한 지급급여총액의 15%까지 손금산입한다. 단, 확정(복합형)급부형의 손금산입한도액이 12만 달러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종업원 1인당 3만 달러 혹은, 급여의 25% 중 낮은 금액을 납부한다.

401(k) Plan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으로써 종업원 각출금은 종업원의 소득계산시 공제되지 않으나 401(K) Plan의 경우는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즉 세금부담이 연금수급시점으로 이연되는데, 가능한 한도금액은 1998년에 시작되는 경우 1만 달러이다.

연금소득 중 본인이 부담한 각출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즉 근로자가 부담한 각출금은 각출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각출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되고 사업주가 부담한 각출금은 각출시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간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금 급부의 경우 초과액의 15%가 특별세로 과세된다. 유족연금의 경우 통상의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세제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국세법 제401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연금기금은 사업주·종업원 또는 양자가 부금각출을 행하고, 그것에 의해 종업원 또는 종업원이 지정한 수익자·연금수취

인에의 급부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 ② 종업원 또는 수익자의 이익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로 종업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종업원에게 확정급부를 지불하는 것이고 도산 등 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
- ③ 이 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적립금은 사업주에 반환하지 않는다. 적어도 전 종업원의 70% 이상이 수혜대상으로 되거나, 70% 이상의 대상자 중 80% 이상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연금 계획이다.
- ④ 급부금 또는 부금에 있어 특정의 종업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ERISA법에 의한 세계혜택에 대한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25세 이상으로 근속 1년 이상인 자는 전원 가입대상이다.
- ② 연금수급권에 있어서는 통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100%, 그 이전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5년 근속 후에 100% 수급권을 부여한다
 - 3년 근속 후에 20% 수급권을 부여하고, 그 후 1년마다 20%씩 추가하여, 7년 근속 후에 100%의 수급권을 부여한다
- ③ 과거 근무채무분의 상각은 30년 이내에 완료한다.
- ④ 기업연금 폐지의 경우 적립금 부족에 의한 급부 불이행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설계한 연금급부 보증금고(PBGC)와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 ⑤ 감독관청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과 가입자에 대한 제도내용 및 현황을 공개한다.
- ⑥ 전직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된 일시불 급부를 개인퇴직계

정(IRA)에 투자함으로써 과세의 이연이 가능하다.

마. 개인연금

1) 연금제도

통상 미국에 있어서 개인연금이라 하면 Keogh Plan과 같은 자영업자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IRA) 등 세제상 특별한 혜택이 인정되는 일종의 퇴직연금제도 외에 생명보험계약 등에 의한 임의의 개인 연금을 포함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Keogh Plan은 자영업자연금이라고도 불리우고 그 이름 그대로 자영업자가 자기자신 또는 종업원 퇴직 후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까지는 비과세로 적립이 가능한 제도로서 1963년에 도입되었다.

IRA는 Keogh Plan이나 기업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이 기업연금 등과 동일한 세제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4년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ERISA)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특별계정에 적립하면 퇴직으로 인한 인출시까지 비과세된다. IRA는 70½세 이전까지 가입 가능하고 59½세부터 70½세가 되는 다음 해 4월 1일 사이에 인출 가능하며 70½세 이전에 일부분이라도 인출하여야 한다.

IRA가 인정하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임금, 급여, 팁, 개인서비스 수수료, 보너스, 중개수수료, 자영업자 소득, 위자료(alimony)이다. 반면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 해외소득 등이다.

2) 관련세제

가) 각출시 과세

Keogh Plan은 확정각출형의 경우 연간소득(222,220달러 한도)의 25% 또는 3만 달러 중 낮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된다. 확정급부형은 연간금액(108,963달러) 또는 급여 최고시기 연속 3년간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급부를 위한 각출금액 중 낮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된다.

IRA contribution에 대한 일반원칙은 납세자 소득(alimony를 포함한 근로소득)과 2천 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된다.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총근로소득과 4천 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된다. 따라서 최고 2천 달러에서 최저 2백 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적격 기업연금 가입자가 아니며 소득이 다음의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기업연계에 가입하고 있는 중·고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공제액 감액). 독신 2만 5천 달러, 부부(합산신고) 4만 달러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부부분리 신고의 경우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공제액이 결정된다. 즉, 소득의 일정범위에서 최저 2백 달러까지 소득공제된다.

2천 달러 - 2천 달러 × (소득 - 기준액) / 1만 달러 (단, 최저공제액은 2백 달러)

Roth IRA는 1998년부터 새로 도입된 형태로, Roth IRA에 납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하지 않고 조건에 부합하는 연금수급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적격한 연금수급액은 10% 조기수급 벌과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가입 후 5년 이후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연금

수급 조건은 납세자 연령이 59½세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배우

<표 III-4> IRA contribution의 공제 적용 기준

	소득 (달러)	소득공제
독신	30,000~40,000 40,000 초과	일부공제 공제없음
부부합산신고	50,000~60,000 60,000 초과	일부공제 공제없음
부부합산신고 (배우자소득없는경우)	150,000~160,000 160,000 초과	일부공제 공제없음

자 또는 자녀 등의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다. 조정총소득이 9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에 해당하는 독신, 조정총소득이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Roth IRA에 가입이 허용된다.

나) 급부시 과세

Keogh Plan에 의한 자영업자 및 종업원의 연금급여소득도 수취년도에 통상소득으로 전액과세된다. 과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다.

$$\text{과세액} = \text{수급액} - \text{불입총액} \times (\text{수급액/기대수취액})$$

원칙적으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59.5~70.5세로 이외 연령에서의 수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59.5세 이전의 중도수급시 10%의 추징세를 벌금형태로 추가과세한다.

IRA로부터 인출되는 금액은 수취연도에 통상소득으로 전액과세된다. 그러나 1998년 도입된 Roth IRA에 의한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Keogh Plan과 마찬가지로 지급개시연령 이전의 조기수급시 10%의 추정세를 징수한다.

과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다.

$$\text{과세액} = \text{지급액} - \text{불입총액} \times (\text{수급액/기대수취액})$$

2. 영국

영국의 연금제도는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일제도하에 포괄한다. 또한 노령, 사망, 폐질, 실업, 출산 등과 같은 소득의 상실 혹은 감소를 야기시키는 갖가지 위험에 대해 별도의 제도(예컨대 실업급여, 산재수당, 상병급여, 장애급여 등)를 두어 운영하지 않고 단일제도하에서 모든 위험을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급부수준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이상의 생활보장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대비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영국의 연금제도는 다음의 <표 III-5>와 같이 공적연금(Public Pension), 사적연금(Individual Pension)의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중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 공통의 정액급부인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과 피용자를 대상으로 불입액과 각출기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소득비례 부가연금(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SERPS)으로 이원화되고 있고 사적연금은 직역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표 III-5> 영국의 연금제도 체계

	피용자(공무원 포함)	자영업자
공적연금	기초연금	
	부가연금	
사적연금	지역연금	적용제외지역연금
	개인연금	

자료 : http://www.npc.or.kr/data/e_dd_02.html.

기초연금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하여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에 의해 확립되어 194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당시는 균일액 각출에 대해 균일액 급부를 하는 소위 일률적인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1961년부터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제도가 설치되었으나 1975년 폐지되었고, 1975년 사회보장연금법(Social Security Pension Act)에 기초하여 지역연금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간의 퇴직 후 소득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1978년부터 새로운 부가연금제도가 발족되었다. 이 제도를 수정한 부가연금제도가 198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부가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이미 충분한 급부수준에 도달해 있는 지역연금의 수급자에 대해 부가연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급부수준이 현역노동자의 소득수준을 상회하고 기여금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부가연금과 지역연금간의 중복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적용제외 제도를 두고 있다.

가. 공적연금(National Insurance)

1) 연금제도

가) 가입대상

공적연금(국민보험)은 노령·장애·유족연금제도 모두 16세 이상 65세 미만(여성은 60세 미만)의 영국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금재정은 기초연금, 부가연금 모두 부과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주당 소득(weekly earning)이 58파운드(1995년) 이하인 근로자와 연간 일정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자영자 및 무직자는 임의가입자로 규정짓고 있다.

고용주가 민간부분의 연금제도의 가입시 연금에 대한 보험료의 적립 및 급여지급수준이 사회보험의 소득비례부분을 능가할 경우는 이에 대한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나) 재원조달

연금재정은 기초연금, 부가연금 모두 부과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4가지 종류(제1종부터 제4종)가 있다. 제1종 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피고용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용자와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감면율(reduced rate)은 기혼여성이나 과부에게 적용된다. 65세 초과하는 남성과 60세 초과하는 여성은 소득이 있고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기초보험료(primary contribution)를 납부하지 않는다. 16세 미만인 피고용자나 그의 고용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1998~99년의 경우 피고용자의 보험료는 주당 소득의 64파운드까지는 2%의 각출률이 적용되며 이후 64~485파운드 사이는 10%가 적용된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소득에 따라 3~10%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주당 5.75파운드 상당의 정액을 납부하며 연간 소득이 6,650~22,880파운드 사이인 경우는 연간 소득의 7.3%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된다.

제1종 contribution의 보험료 각출률은 다음과 같다.

<표 III-6> 제1종 보험의 각출률(1998~99)¹⁾

(단위 : 파운드, %)

소득구간 (주당)	피고용자부담률				고용주 부담률
	주당 64파운드		주당 64파운드 초과		
	표준율	감면율 ²⁾	표준율	감면율	
64~109.99	2	3.85	10	3.85	3
110~154.99	2	3.85	10	3.85	5
155~209.99	2	3.85	10	3.85	7
210~485.99	2	3.85	10	3.85	10
485 초과 ³⁾	2	3.85	10 (485파운드까지)	3.85 (485파운드까지)	10

주 : 1) 제1종 보험은 소득에 비례함. 피고용자와 고용주는 소득이 주당 64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피고용자의 보험료 기준소득 최고액은 485파운드임.

2) 감면율은 결혼한 여성 또는 과부에게 적용됨. 65세 초과하는 남성과 60세 초과하는 여성은 기초연금(primary contribution)이 없고 고용주는 일반적용률로 secondary contribution을 납부함. 16세 미만의 아동과 그 고용주는 contribution하지 않음.

3) 피고용자는 485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자료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8.

제2종 보험료는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며 일정 소득(1998~99년 기준 3,590파운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률이 적용된다. 제2종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실업보험, 업무재해급부 및 부가연금을 제외한 급부의 대상자가 된다.

<표 III-7> 제2종 보험료 각출률 연도별 추이

(단위 : %, 파운드)

과세연도	주당 보험료율			적용제의 소득
	보험료율	share fishermen	volunteer development workers	
1998~99	6.35	7.00	3.20	3,590
1997~98	6.15	6.80	3.10	3,480
1996~97	6.05	7.20	3.05	3,430
1995~96	5.75	7.30	2.90	3,260
1994~95	5.65	7.75	3.19	3,200

자료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8.

제3종 보험료는 최저 한계소득 이하의 소득자나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정액(1998~99년 기준 6.25파운드)의 보험료이다. 제3종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득 하한액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부, 과부금부, 아동특별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이 지급된다.

제4종 보험료는 1998~99년 기준으로 7,310파운드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이다.

<표 III-8> 제3종 · 제4종 보험료율 추이

(단위 : %, 파운드)

과세연도	제3종		제4종			
	주당보험료율	소득하한액	각출률	소득하한액	소득상한액	보험액상한
1998~99	6.25	64	6	7,310	25,220	1,074.60
1997~98	6.05	62	6	7,010	24,180	1,030.20
1996~97	5.95	61	6	6,860	23,660	1,008.00
1995~96	5.65	58	7.3	6,640	22,880	1,185.52
1994~95	5.55	57	7.3	6,490	22,360	1,158.51

자료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8.

자산조사에 의해 지급되는 사회부조 성격의 급여와 기타 비기여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각출가능 최대소득의 상한액은 440파운드로 제한하고 있다.

다)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에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령연금(old-age pension) 및 유족연금과 사회부조방식의 소득지원(income support), 중증장애급여(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장애생계급여(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간호급여(attendance allowance), 장애노동급여(disability working allowance), 폐질간호급여(disabled care allowance) 등이 있다. 모든 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50주(1975년 4월 이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기간을 충족하거나 1975년 4월부터 1978년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최소한 주각출수준의 50배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연금지급 적격요건으로 규정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1949년의 9/10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이 적용되며 여자의 경우는 1944년의 9/10이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이에 비례하여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가입기간이 급여혜택을 위한 가입기간의 25% 미만일 경우는 연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단, 부양자녀의 양육 또는 경로친척의 간호로 인해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2) 장애연금

병가수당이 지급된 이후에도 장애에 의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는 28주 동안의 장애연금급여의 혜택이 부여된다. 장애연금에 대한 보

협료의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가수당의 지급 이외의 장애급여는 기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장애연금급여는 해외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출국 이전의 6개월 동안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3) 유족연금

사망한 가입자가 연금급여의 혜택을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망당시 연금수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60세 미만의 미망인 또는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액(1995년 기준 1천 파운드)이 일시불로 지급되며 홀어머니(widowed mother)에게는 주 58.85파운드와 첫 자녀는 9.85파운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11.05파운드가 각각 지급되고 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미망인에게는 가입자 사망당시 배우자의 연령 또는 홀어머니 급여가 정지된 시점에 따라 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세 이상은 주당 58.85파운드의 급여가 지급되나 45~54세의 미망인에게는 완전급여의 일정부분만 지급된다. 또한 1978년 이후에는 가입자의 소득비례부분에 대한 급여도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고아연금의 경우는 양부모 사망시에만 적용된다.

2) 관련세제

고용주가 납입한 각출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되며 근로자 부담의 각출보험료는 소득공제 없이 일반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급여는 급부시 일반소득으로 전액 과세되고 있다. 영국의 연금과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이중과세를 피하는 의미에서 공적·사적연금을 불문하고 각출단계시 비과세, 급부시 과세를 취하고 있었으나, 1965년부터 각출시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기업연금

1) 연금제도

영국에 있어서 기업연금은 일반적으로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으로 호칭되고 있고 민간기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국영기업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확립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시 또는 퇴직전 수년간의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른 연금을 급부하는 급부기준제도가 대부분이고(그러나 최근은 부급기준제도가 특히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증가경향이 있음) 부급기준제도는 적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직역연금은 195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공적연금성격의 소득비례 퇴직연금제도의 창설과 동시에 직역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비례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적용제외(즉, 공적연금의 각출금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결과 적용제외 대상기업은 공적연금 이상의 급부금을 직역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도 있으나, 기업에 따라서는 자주적이고 탄력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동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2) 관련세제

사업주가 부담한 각출금은 전액 손금산입되고 있으나 단, 연수입 87,600파운드를 초과하는 종업원을 위한 사업주 각출금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각출보험료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pproved scheme’이나 ‘exempt approve scheme’에 의한 종업원 각출금은 1998~99년 현재 87,6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의 15%까지 각출이 가능하고, 그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따라서 각출한도액은 현재 13,140파운드($87,600 \times 15\%$)이다.

퇴직시 일시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단, 가입연도에 따라 비과세 일시금의 액수의 차이가 있다. 퇴직시 지급받는 연금급여는 일반 소득으로 전액 과세된다.

지역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다음 요건에 충족하고, 내국세입청 지역연금부(SFO)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사업주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연금제도를 거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
- ② 사업주가 각출한 것
- ③ 종업원 각출의 중도인출은 불가능
- ④ 60세(여성은 55세)부터 70세 사이에 퇴직연금이 급부되고 그 금액이 퇴직시 급여의 1/6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 ⑤ 유족연금이 종업원 본인 연금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것
- ⑥ 종업원의 부금은 급여의 15% 이하인 것
- ⑦ 원칙적으로 기금에의 각출을 중지하지 않는 것
- ⑧ 종업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 ⑨ 연금급부액이 당해 개인의 최종급여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것
- ⑩ 일시금 지급액이 당해 개인의 최종급여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
- ⑪ 사망일시금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최종급여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
- ⑫ 26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연금급부가 보증되는 것

다. 개인연금

1) 연금제도

종래 영국에서는 개인연금이라 하면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

(SERA)을 가리키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광범위한 의미로서는 기업연금에 속하고 있는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관리자를 위한 연금’(Executive Pension) 또는 ‘회사지배임원을 위한 개인연금’이라 지칭하는 것이나 개인이 임의로 생명보험회사 등 으로부터 연금상품을 구입한다고 하는 「임의 개인연금」도 광의의 개인연금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SERA는 자영업자 및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후 소득의 제공을 목적으로 1956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종류의 개인연금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후 연금개혁으로 1988년 7월 1일부터 사적연금을 더욱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직역연금에 미가입한 종업원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개인연금」이 탄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SERA는 1988년 6월 30일에 폐지되어 신규계약은 없이 기존계약분에 대해서만 존속하고 있다.

2) 관련세계

개인연금의 계약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영업자
- ② 직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 및 자영업자일 것
- ③ 연금지급개시연령이 50~70세일 것
- ④ 부금기준방식일 것
- ⑤ 계약자의 사후, 그 배우자에게도 반액이 지급되는 것일 것

1989년의 경우 35세 이하인 납세자는 순연간소득(net relevant earnings)의 17.5%를 한도로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소득의 한도금액은 87,600파운드이다. 납부한 연금각출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또는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공제는 과세연도말 이후 1월 31일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전년도에

공제가 가능한 소득이 없으면 2년 전기이월할 수 있다. 차기이월의 경우는 6년까지 가능하다. 고령자 우대조치에 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며 연령별 공제한도율은 <표 III-9>와 같다.

<표 III-9> 개인연금의 연령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액

(단위 : 파운드, %)

	소득공제율	공제한도액
35세 이하	17.5	15,330
36~45세	20.0	17,520
46~50세	25.0	21,900
51~55세	30.0	26,280
56~60세	35.0	30,660
61세 이상	40.0	35,040

자료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8.

금부액에 대해서는 통상소득으로 인정하여 전액 과세되며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비과세일시금은 적립금의 25% 또는 15만 파운드를 한도로 하고 있다.

1988년 7월부터는 종래의 퇴직연금계약(Retirement Annuity Contracts)에 대신해서 개인연금계약(Personal Pension Plan)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퇴직연금계약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용주에 의한 각출이 가능
- ② 비과세 일시금을 연금(원금)의 25%로 통일
- ③ 공적 소득비례연금(SERPS)의 적용제외 인정
- ④ 50세부터 임의지급가능(퇴직연금계약은 60세 이전 지급불가)
- ⑤ 종래 생명보험 독점체계가 무너지고 취급금융기관으로 은행, 투 자산탁(연금형),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우에조합 등의 참여인정

3. 캐나다

가. 공적연금

1) 연금의 종류

캐나다의 헌법상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사회보장에 따르는 책임은 분담하고 있으며 소득보장과 관련된 행정은 인적자원개발성(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는 노령보장제도(Old Age Security System)와 캐나다·퀘벡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Quebec Pension Plan: CPP/QPP)로 구성되어 있다. 노령보장제도(OAS)는 무각출로 조세에 의해 일반재정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며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기초연금인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P) 이외에 소득보증 보족제도(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와 배우자 연금수당제도(Spouse's Allowance: SPA) 등이 있다. 캐나다 및 퀘벡연금제도(CPP·QPP)는 피보험자의 각출에 근거하여 소득비례로 지급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연방정부의 책임하에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퀘벡 주만은 캐나다 연금제도에 상당하는 퀘벡 연금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가) 노령보장제도(OAS)

노령보장제도(OAS)는 캐나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연금혜택의 종류에는 기초적인 노령보장연금제도(the Old Age Security Pension: OASP), 소득보증 보족제도(the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와 배우자 연금수당제도(the Spouse's

Allowance: SPA) 등이 있다.

1951년에 도입되어 1952년부터 시행된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은 이미 1927년부터 시행되어온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자산조사(income test)에 근거한 연금급여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노령보장법은 그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개시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1965)
- 소득보충 보충제도(GIS)의 도입(1967)
- 연금급여액에 연간 생활비용지수를 적용(1972)
- 연금급여액을 매 4분기별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생활비용증가에 따라 조정(1973)
- 배우자 연금수당제도 도입(1975)
- 캐나다 영주기간에 따른 부분연금지급 도입(1977)
- 국제 사회보장제도 체결을 OAS에 포함(현재 진행중)
- 배우자 연금수당 혜택을 60세에서 64세의 모든 저소득층 미망인들에게 적용(1985)
- 소급급여의 연간최고액(1995)
- 개인이 연금을 취소할 수 있음(1995)

캐나다 국외로 지급되는 급여는 적격요건 충족시 해외거주자에게도 송금되고 있다. 또한, 18세 이후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무기한 동안 해외거주자에게로 지급된다. 이외에는 연금 수혜자가 국내영토를 벗어난 그 달과 추가적으로 6개월 동안의 급여가 지급되며 그 후에는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만약 국내로 역이민하는 경우는 연금급여의 지급이 다시 시작된다. 반면, GIS와 SPA의 경우는 캐나다 출국 후 6개월 동안만 연금이 송금된다.

<표 III-10> 노령보장제도(OAS)

급여의 종류	1995년 3/4분기		1995년 3월	
	최대급여수준 (캐나다달러)	급여혜택가능 최고소득 수준 (캐나다달러)	수급자수 (명)	지급액 (백만 캐나다달러)
노령보장연금(OASP)	392.41	n.a.	3,420,018	1,292.7
소득보장보족제도(GIS)				
미혼	466.33	11,208	831,030	279.0
기혼(무연금 수급권 자의 배우자)	466.33	27,168	77,070	23.4
기혼(연금 수급권자 의 배우자)	303.75	14,592	398,329	68.6
기혼(배우자연금수당 (SPA)의 배우자)	303.75	20,880	70,231	15.8
소 계			1,376,660	386.8
배우자수당				
일 반	696.16	20,880	70,218	17.7
미망인	768.55	15,336	41,521	18.4
소 계			111,739	36.1

급여의 종류	1999년 3/4분기		1999년 3월	
	최대급여수준 (캐나다달러)	급여혜택가능 최고소득 수준 (캐나다달러)	수급자수 (명)	지급액 (백만 캐나다달러)
노령보장연금(OASP)	413.70	n.a.	3,694,104	1,468.2
소득보장보족제도(GIS)				
미혼	491.65	11,808	848,984	292.1
기혼(무연금 수급권 자의 배우자)	491.65	28,608	79,372	24.9
기혼(연금 수급권자 의 배우자)	320.24	15,408	389,139	72.5
기혼(배우자연금수당 (SPA)의 배우자)	320.24	28,608	64,452	15.6
소 계			1,381,947	405.1
배우자수당				
일 반	783.94	22,032	64,442	16.8
미망인	810.28	16,152	34,879	15.9
소 계			99,321	32.7

자료 : http://www.hrdc-drhc.gc.ca/isp/oas/rates_1e.shtml.

(1) 노령보장연금(OASP)

노령보장연금(OASP)은 거주기간 충족시 65세 이상의 신청자에게는 고용이나 퇴직과는 상관없이 매달 노령보장연금급여가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지급된다. 노령보장연금에 대한 수급적격요건은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유자로 18세 이후 최소 10년간 국내에 영주하여야 하며,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라도 18세 이후 최소 20년간 국내에 영주하였거나 시민권을 소유하던 자에 한해서는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18세 이후에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 영주한 경우는 체류기간을 캐나다 영주기간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연금급여액은 18세 이후 10년 이상의 국내거주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영주한 지 40년이 되면 수급가능한 최대금액(1995년 3/4분기 기준 매월 392.41캐나다달러)을 100% 지급받게 된다. 단, 40년의 영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1977년 1월 1일을 기해 25세 이상으로 그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영주권을 획득한 자에 한해서는 최대연금금액이 지급된다. 최대의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노령연금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시점 이후 10년 이상의 국내 영주기간을 필요로 한다³⁴⁾. 최대연금급여혜택의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급대상자는 부분연금(partial pension)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분연금 급여액수는 노령연금 관련 영주기간을 충족하는 각 연도에 대해 최대연금금액의 40분의 1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규정짓고 있다.

총OASP급여는 매년 연평균 수급자 수 전망치에 연평균 급여액의 전망치를 곱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1년 이후 연평균 OASP 급여율은 전년도 OASP 평균급여에 다음과 같은 지수를 곱해 추

34) 이 기간중 1년간의 국내비거주기간은 18세 이후의 국내영주기간의 3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60세부터 62세까지 2년간의 국내비거주기간은 18세 이후부터 55세까지의 거주기간중 6년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정하고 있다.

$$\circ \text{지수} = (1 + C_{N-1})^{1/3} + (1 + C_N)^{2/3} :$$

$C_N = (N - 1)$ 연도 ~ N 연도 사이의 소비자물가 지수의 증
가율

<표 III-11>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P)의 재정수지 전망

	65세 이상 노령인구수 (명)	연금 수급자수 (명)	평균급여액 (캐나다 달러)	총급여액 (백만 캐나다 달러)	행정비용 (백만 캐나다 달러)	총지출 (백만 캐나다 달러)	총비용/ 총수입 (%)
1994	3,405,555	3,362,984	4,639	15,601	55	15,655	4.27
1995	3,484,116	3,440,563	4,733	16,285	57	16,342	4.19
1996	3,560,448	3,515,941	4,825	16,964	59	17,023	4.07
1997	3,631,603	3,583,077	4,913	17,620	62	17,681	4.07
1998	3,699,320	3,653,077	5,025	18,355	64	18,420	4.05
1999	3,755,008	3,708,069	5,167	19,160	67	19,227	4.02
2000	3,811,156	3,763,515	5,339	20,095	70	20,165	3.99
2005	4,100,880	4,049,617	6,342	25,681	90	25,771	3.91
2010	4,555,831	4,498,882	7,532	33,884	119	34,003	3.99
2015	5,301,202	5,234,936	8,945	46,828	164	46,992	4.33
2020	6,161,937	6,084,912	10,624	64,648	226	64,874	4.76
2025	7,104,729	7,015,920	12,618	88,529	310	88,839	5.23
2030	8,018,745	7,918,510	14,987	118,671	415	119,087	5.59
2035	8,401,219	8,296,203	17,799	147,667	517	148,184	5.49
2040	8,523,507	8,416,962	21,140	177,935	623	178,558	5.18
2045	8,551,827	8,444,928	25,108	212,033	742	212,775	4.85
2050	8,596,912	8,489,449	29,820	253,156	886	254,042	4.58
2055	8,771,621	8,661,975	35,417	306,781	1,074	307,854	4.40
2060	9,072,217	8,958,813	42,064	376,846	1,319	378,165	4.29
2065	9,307,098	9,190,758	49,959	459,162	1,607	460,769	4.14
2070	9,490,297	9,371,668	59,336	556,075	1,946	558,021	3.95
2075	9,675,169	9,554,228	70,472	673,308	2,357	675,665	3.78
2080	9,899,471	9,775,726	83,699	818,218	2,864	821,082	3.64
2085	10,167,647	10,040,551	99,408	998,112	3,493	1,001,605	3.51
2090	10,444,244	10,313,690	118,066	1,217,692	4,262	1,221,954	3.39
2095	10,696,847	10,563,136	140,225	1,481,215	5,184	1,486,399	3.26
2100	10,931,549	10,794,904	166,543	1,797,818	6,292	1,804,110	3.13

자료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ld Age Security Program Annual Report, Canada, 1994.*

(2) 소득보장 보충제도(GIS)

GIS는 65세 이상의 인구 중 저소득자에게 보충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노령보장연금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최저생활비를 미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연금제도로 정부가 최저생계비 부족액을 보조해 주고 있다.

GIS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며 매달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액수는 수급자의 연간 소득과 기혼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독신자, 미망인, 이혼자 및 별거인에 적용되는 지급률과 기혼자(동거인을 포함한 배우자가 OASP 또는 SPA 혜택수급자가 아닌 경우)에게 지급하는 최대보조급여율이 차등화되어 있다.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GIS 보조율은 기혼자 개인의 경우보다 높으나 기혼자가 부부합산한 보조금액은 독신자의 보조혜택보다 높다.

독신자, 미망인, 이혼자 및 별거인에게 지급되는 월간 최대보조액은 기타소득 매 2달러당 1달러가 감액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OASP 연금수급자인 경우 월간 최대보조액 다른 소득 매 4달러당 1달러가 감액된다. 단, 예외적으로 부부 중 1인만이 OASP 수급자이고 다른 한사람이 기본 OASP나 SPA 수혜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월간 최대보조액이 OASP 혜택을 제외한 기타 부부합산소득 매 4달러당 1달러씩 감액된다³⁵⁾.

GIS 급여소득에는 OASP와는 달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GIS 급여는 해외거주자에게 6개월 이상의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자원 또한 조세에 의한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지급되고 있다.

(3) 배우자 연금수당(SPA)

SPA 혜택은 매달 지급되며 이는 미망인이나 부부 중 1인의 연금

35) 첫 1달러의 감액은 연간 부부합산소득이 (12×매월 기본OASP연금액 + 48달러)를 초과시부터 시행된다.

소득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SPA 수혜자는 매년 수당혜택을 받기 위한 재신청을 해야 하며 수당혜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SPA는 GIS와 같이 해외거주자에게는 6개월 이상의 지급을 금하고 있다. SPA 혜택수혜자의 자격요건으로는 신청자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OASP와 GIS를 제외한 연간 부부합산소득이 일정한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SPA 수혜자가 OASP 급여혜택을 받게 되는 65세가 되면 SPA는 자동적으로 지급이 중단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SPA 지급이 중단된다.

- 수혜자 사망시
- 해외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 연금수혜배우자가 GIS수혜자격 상실
- 수혜자의 이혼 또는 별거
- 미망인 수혜자의 재혼

수당금액은 자산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금수급자 배우자의 최대수당액은 OASP와 GIS 최대급여의 합산액과 같다. 미망인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캐나다·퀘벡 연금제도(CPP·QPP)

캐나다연금제도와 퀘벡연금제도는 납입자와 가족의 소득을 퇴직, 장애 및 사망시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급여혜택의 종류에는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애인 자녀혜택 및 유족연금 등이 있다.

1965년에 처음 제정되어 그 다음해인 1966년부터 시행된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왔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생활비용증가를 연금급여에 반영·조정
- 남녀 및 유족 모두에게 동등한 연금급여혜택 부여
- 연금급여혜택과 65세 이후의 퇴직 및 고용여부와 무관
- 이혼시 부부합산 연금적립의 분할

1987년 1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 보다 신속적인 연금개시연령으로 60세부터 연금수급 가능
- 장해연금급여의 상향조정
- 배우자의 재혼시에도 유족연금의 지속적인 지급
- 부부간의 퇴직연금 분할수급 가능
- 별거(동거인 포함)시에도 연금급여혜택의 분할 가능

연금개시연령은 65세부터이나 60세 이후부터 연금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미만 급여지급시는 매달 0.5%씩 감액된다. 70세까지 연금개시연령의 연장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연금급여액이 매달 0.5%씩 증액된다. 이로 인한 최대 조정액은 30%선에 머물고 있다.

1992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개의 주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 새로운 향후 25년간의 고용주-근로자 각출료표가 도입
- 급여의 자녀혜택 증가
- 연금수급신청의 지체로 인한 급여혜택지급의 불가항목 폐지

캐나다연금제도와 퀘벡연금제도는 거주지에 따라 두 개의 다른 제도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다. 규모는 거주주민의 수에 따라 캐나다 연금제도가 퀘벡연금제도의 3배 정도이다.

가입대상자는 18세부터 70세까지의 모든 소득자(자영업자 포함)이며 가입은 의무적이다. 단, 연간 일정기본소득 이하의 소득자, CPP법에 따른 퇴직 및 장해연금 수급자와 일정한 종교단체는 예외에 포함된다. 연

금에 대한 각출은 최저소득(the Year's Basic Exemption: YBE)과 최대 소득(the 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YBE는 대체로 YMPE의 10% 수준이다. 1995년 기준 YMPE는 34,900캐나다달러이며 YBE는 3,400캐나다달러이다(<표 III-12> 참조). 해당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퇴직급여 : $\frac{1}{2}(\text{지난 3년간 평균 YMPE}) \times 0.25$
- 장해급여 : $(\text{퇴직급여} \times 0.75) + \text{일정액}$
일정액은 319.85캐나다달러(1995년 기준)
- 유족연금급여 :
 - 65세 미만 : $(\text{퇴직급여} \times 0.375) + \text{일정액}$
일정액은 124.79캐나다달러(1995년 기준)
 - 65세 이상 : $(\text{퇴직급여} \times 0.60)$
- 사망급여 : $\text{YMPE} \times 0.10$.

<표 III-12> 캐나다(CPP)·퀘벡(QPP) 연금제도

급여종류	최고급여수준 (1995년 지급개시 기준)		수급자 수 (1995년 3월)		지급액 (1995년 3월)	
	CPP (캐나다 달러)	QPP (캐나다 달러)	CPP (명)	QPP (명)	CPP (백만 캐나다달러)	QPP (백만 캐나다달러)
퇴직연금(65세 이상)	713.19	713.19	2,230,722	719,666	854.7	248.0
장해연금	854.74	853.15	296,623	45,148	214.1	35.5
유족연금(65세 미만)	392.24		216,683	82,347	62.9	42.7
(65세 이상)	427.91	427.91	511,779	174,566	112.1	37.2
소 계			728,462	256,913	175.0	79.9
장애자 자녀급여	161.27	50.95	105,575	9,080	21.4	0.7
고아급여	161.27	50.95	93,507	31,093	16.8	1.8
사망급여(일시불)	3,490.00	3,490.00	8,643	3,398	21.5	7.8
합 계			3,463,532	1,065,298	1,303.5	373.7

급여종류	최고급여수준 (1999년 지급개시기준)		수급자 수 (1999년 6월)		지급액 (1999년 6월)	
	CPP (캐나다 달러)	QPP (캐나다 달러)	CPP (명)	QPP (명)	CPP (백만 캐나다달러)	QPP (백만 캐나다달러)
퇴직연금(65세 이상)	751.67	751.67	2,582,637	888,377	1,068.7	311.8
장해연금	903.55	903.52	288,417	50,728	214.1	38.7
유족연금(65세 미만)	414.46	...	223,085	82,661	68.7	44.0
(65세 이상)	451.00	451.0	618,558	210,667	149.2	49.4
소 계			841,643	293,328	217.9	93.4
장애자 자녀급여	171.33	54.40	101,460	8,277	21.5	0.6
고아급여	171.33	54.40	94,397	26,851	17.6	1.5
사망급여(일시불)	2,500	2,500	10,814	2,990	23.2	6.8
합 계			3,919,368	1,270,551	1,563.0	452.8

자료 : http://www.hrdc-drhc.gc.ca/isp/cpp/rates_e.shtml.

각출률은 1966년부터 1986년까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보수액의 1.8%씩 3.6%를 각각 부담해왔으나,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매년 0.2%씩 증액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각각 0.1%씩 늘고 있다. 1995년 현재 2.7%씩 모두 5.4%를 납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향후 5년간의 각출료는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캐나다 연금제도의 각출률

(단위 : %)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1994	2.6	2.6	5.2
1995	2.7	2.7	5.4
1996	2.8	2.8	5.6
1997	2.925	2.925	5.85
1998	3.05	3.05	6.10

자료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Overview : Income Security Programs*, 1994.

재원의 대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의 각출로 마련되며 나머지는 CPP기금의 이자소득으로 충당한다. 재정수지를 위해 정부는 매 5년마다 각출금의 수준을 조정하여 잉여금으로 향후 2년간의 지급총액을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CPP의 행정부문은 OAS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성(HRD)의 소득보장제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령보장연금(GASP)과 소득보장 보족제도(GIS)는 무각출제도로서 급부재원은 조세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에 각출단계에서 과세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캐나다·퀘벡연금제도(CPP/QPP)는 고용주 각출분에 대해서는 전액손금산입되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각출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GIS를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급부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으로 모두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연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수준이 일정한 상한액을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연금급여를 세금으로 환급(claw-back)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관련세제

OASP와 GIS의 재원은 가입자의 각출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세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에 각출의 단계에서는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CPP/QPP는 사업주 각출분에 대해서는 ‘전액손금산입’

되고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종업원 각출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급부에 대한 과세는 GIS를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급부에 대해 모두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있다.

나. 기업연금

1) 연금제도

캐나다의 기업연금제도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등의 공적부문도 대상으로 되어있다. 기업연금이 법적 근거화된 것은 1919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연금제도에의 각출액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기업연금제도의 내용은 미국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대별하면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확정각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부제도는 미리 결정된 급부액에 따라 각출액을 결정하는 제도이고, 근속기간 중 소득과 제도 가입연수에 따라 급부액이 결정되는 '단위급부제도'와, 소득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한 일정의 금액과 제도가입연수를 곱하여 급부액을 결정하는 '일정급부제도'가 있다.

확정각출제도는 각출액을 일정하게 하여 급부액을 각출액, 운용익,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이고 가입자의 급여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하는 Money Purchase 제도와 기업의 이익에 따라 각출액을 결정하는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가 있는데 현재는 가입자의 각출제도인 Money Purchase가 주류이다.

2) 관련세제

고용주 각출보험료의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3,500캐나다달러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종업원 각출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간주치 않음)이다. 종업원 각출보험료의 경우 연간 3,5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에 대해 17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연금소득의 17%까지 세액공제한다.

기업연금의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령이 45세에 달하고 근속 10년 이상의 가입자에게는 반드시 수급권이 부여
- ② 적정한 연금수리에 기초를 둔 연금제도
- ③ 초기 과거근무채무는 15년 이내에, 후속채무는 5년 이내에 상각
- ④ 급부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적립상태 유지
- ⑤ 연금기금의 투자선과 투자액에 대한 규제적용
- ⑥ 연금제도상의 가입자 권리와 의무내용에 대한 사업주의 고지의무
- ⑦ 자산, 각출금 및 가입자 수 등 도입제도 현황에 대한 사업주의 보고의무(연방정부 및 주정부)

다. 개인연금(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1) 연금제도

1957년도의 소득세법 개정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주로 기업연금으로 포함할 수 없는 자영업자·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며, 자조노력에 의한 퇴직후의 준비를 위해 설계되어진 세제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등록퇴직저축제도이다. 캐나다에서의 생명보험 등 개인연금제도에 있어서는 등록퇴직저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RRSP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개인과 법으로 규정되어진 연금수탁기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연금계약

* 수탁기관 : 생명보험회사, 은행, 신탁회사, 저축은행, 투자신탁회사

○ 적격저축요건(생명종신연금)

- 만기일 이후 급부개시
- 연금수급자는 계약자나 그 배우자
- 보증기간은 15년 이상
- 급부금액은 매년 또는 일정기간마다 정액으로 지불
- 계약자가 71세에 도달후 만기가 되는 계약이 아닐 것
- 연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 및 양도가 불가

2) 관련세제

기업연금 비가입자의 경우 연간소득의 18%까지 소득공제(1993년 기준 : 13,500캐나다달러 한도, 향후 한도액을 1994년에는 14,500캐나다달러, 1995년에는 15,500캐나다달러로 인상할 예정임)하며, 기업연금 가입자의 경우 상기 기업연금 비가입자의 공제한도액으로부터 기업연금의 권리가액(기업연금 가입자의 공제한도액 : 연간 3,500캐나다달러)을 차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한다.

65세 이상의 수급자에 대해 17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연금소득의 17%까지 세액공제한다.

4. 호주

가. 공적연금(Social Security Pensions)

1) 연금제도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대부분이 빈곤계층에 속하여 연금제도가 일찍부터 도입되었다. 호주연방 성립(1901년)후 1908년에 노령연금과 장해연금제도가 제정되어 노령연금과 장해연금이 1909년과 1910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미망인연금(1942년), 실업보험(1945년), 질병보험(1945년) 등 다수의 제도가 입법화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대대적인 사회보장개혁이 이루어지는 등 연금관련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가) 재원조달

호주의 공적연금(Social Security Pensions)제도는 무각출의 사회보험제도와 자산조사에 따른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급여의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정부의 일반재정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연금급여의 수급자는 연금청구일 현재 호주 국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자로 평소 거주지가 호주인 자이어야 한다. 공적연금과 관련된 모든 행정 및 정보와 기타 서비스는 호주의 Department's network of Regional과 Area Offices를 통해 이루어진다.

1994년 6월 30일 현재 연금수급자수는 1993년에 비해 5.05%(76,627명)가 증가한 1,592,309명인데, 이중 여성수급자는 1,067,504명이고 남자는 514,147명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30% 이상이 부분급여(partial pension)를 지급받는다. 연금급여지출총액은 1992~1993년 103.24억 달러에서 1993~1994년 114.24억 달러로 10.7% 증가했다. 이와 같이 급여

지출총액의 증가는 노령연금 수혜인구 증가 외에 이자율 감소로 인한 기타소득의 감소에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Age Pension)

호주국민 및 장기거주 노령자에게 일정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급여 신청시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수급요건으로는 계속적인 국내 영주기간이 10년 또는 총영주기간 10년 초과시는 국내에서 계속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국전에 연금급여가 개시된 수급자에게는 해외로도 감액된 급여가 송금된다.

2015년부터는 여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된다. 정부는 여자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으로 인해 여성의 근무연령을 연장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제반 연금혜택의 폭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OECD 국가들의 방침이기도 하며 여성의 퇴직시기가 연장되어 연금지급에 대한 비용절감의 효과도 동반하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향군인성으로부터 군인연금 수급시는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지는 못한다. 노령연금의 급여액은 미혼인 경우 주 156.05호주달러가 지급되며 기혼부부에게는 주 255.30호주달러가 지불된다.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평균급여의 2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급여의 실제가치는 CPI(소비자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연금급여율은 미혼·기혼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임차보조(Rent Assistance)와 벽지수당(Remote Area Allowance), 조제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전화수당(Telephone Allowance)이 있다.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는 현금 이외에도 부가적인 편익 및 혜택 그리고 기타 상품과 일정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임차보조는 주당 42.00호주달러 까지 부양자녀 수와 임차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부양자녀급여는 가족수당에 포함되고 있다. 벽지수당은 미혼인 경우에는 주당 7.00호주달러를, 기혼부부에게는 12.00호주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 자녀당 3.50호주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개인의 연금외 소득 중 연금급여의 혜택과 관련하여 자유소득범위 (free area)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7월에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수급자가 연금외 소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연금외 소득이 독신자의 경우는 매주 45달러까지, 부부는 78달러 한도 내에서는 연금급여가 감액되지 않으며 한도 초과시는 연금외 소득 매 1달러당 연금급여혜택이 50센트씩 감액된다. 단 부양자녀 한 명당 한도액은 주당 12달러가 추가적으로 상향조정된다.

(2) 배우자연금(Wife Pension)

배우자연금은 다른 연금수급권이 없는 노령연금수급자의 부인에게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된다. 배우자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혼부부이고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본인의 연금수급권이 없어야 한다. 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과 별거를 하면 배우자연금의 지급이 중지된다. 배우자연금의 수급권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국내거주자라야 한다. 1991년 11월 12일부터 배우자연금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연령이 21세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영구히 떠나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1995년 7월 1일부터 배우자연금의 새로운 수혜대상자는 없으며 기존의 배우자연금수급자에게 지불되던 연금만이 계속 지급된다.

배우자연금 수급자가 1993년 32,671명인 것에 반해 1994년 35,981명으로 10.1% 증가하였다. 이는 노령연금자 수의 증가와 비례하고 있다. 1992~1993년 지급액이 222.4백만 달러이고 1993~1994년에는 259.6백만 달러로 16.7% 증가한 것이다. 이는 수급자 수의 증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의 자금현황에서 지급액의 증가를 뜻한다. 배우자연금 수급자 수는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연금급여는 기혼여성 본인의 노령연금급여율과 동등한 기준하에서 지급되어 왔으나 19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대부분 새로운 대상자들에게 부모수당(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또는 배우자수당(199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 최근 근로경험이 없는 자에 한해)으로 배우자수당을 대체하여 지급된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소수의 새로운 대상자는 장해보조연금, 구직자수당 또는 고용을 통해 배우자연금을 대체하게 된다.

(3) 장해연금(disability pension)

장해연금의 수급대상자는 남자 16세~65세, 여자 16세~60세로 장애발생시 국내에 거주할 경우는 최소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나 장해연금 신청시는 국내거주를 필수로 하고 있다. 장해연금의 지급도 노령연금의 경우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장해연금의 급여수준은 노령연금과 동일하다.

(4) 유족연금

사망자의 배우자가 혼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는 홀어머니연금이 지급되며 사망한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시에도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는 유족연금급여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족연금의 경우는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영주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의 급여액은 미혼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급여수준과 동일하다. 미망인 연금은 부양자녀가 없어도 1987년 7월 이후 50세일 경우는 급여혜택

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연금수급자 사망후 자산조사에 의한 장례식 수당이 14주동안 지급된다. 유족연금의 경우도 해외로 송금이 금액·지급된다.

2) 관련세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 또는 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예를 들면, age of sole parent pension, disability support or carer pension, widow B pension, bereavement allowance and education entry payment)에 의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호주의 사회보장 및 서비스 연금(social security or service pensions), 수당(allowance), 급여(benefit)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특별세액환급(special rebate of tax)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급자(pensioner)에 따라 세액환급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적용대상(1998년)은 ① 부부 연금수령자 ② 배우자가 질병으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여 질병연금을 받는 경우 ③ 독신 연금수령자로 분류한다.

1992~93년도의 경우 연금급부금에 대한 세액환급(rebate)수준은 독신자의 경우 972달러, 기혼자는 654달러, 그리고 질병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연금수령자일 경우는 920달러였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이므로 1997/98년에는 독신자 1,260달러, 기혼자 896달러, 질병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연금수령자 1,197달러로 증가되었다. 세액환급액은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액(rebate thresholds)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매 1달러 당 12.5센트씩 감액된다. 1992~93년의 연금환불수준은 다음과 같다. 연금수급자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rebate threshold)은 1997~98년의 경우 독신 11,700달러, 기혼자 9,880달러, 질병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연금수령자 11,835달러이다.

1997~98년 연금환급 수준은 기혼부부연금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 연금에 대해 추가로 주당 88달러를 받는다. 독신인 연금수령자는 과세되지 않는 연금에 대해 추가로 주당 50달러를 받는다.

기혼자의 경우 환급액(rebate)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배우자가 납세액이 있는 경우 서로에게 이전할 수 있다. 배우자가 newstart allowance, sickness allowance, special benefit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환급(pensioner rebate)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세액환급(pensioner rebate)은 정착수당(newstart allowance), 청소년 직업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질병수당(sickness allowance), 특별급부(special benefit), 배우자수당(partner allowance), 노후연금수당(mature age allowance), 과부수당(widow allowance), 부모수당(parenting payment)과 퇴역군인자녀교육제도(Veterans' Children Education Scheme), 고아지원제도(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등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 대상인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기업연금 :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1) 연금제도

퇴직연금은 퇴직후의 생활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저축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하여 다른 일반저축에 비해 수익률을 높여주고 있다.

1992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보증(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법에 의해 고용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연금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연금가입이 의무화된 SGC제도는 조세로부터 보조를 지원받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SGC에서 지원금을 보조하지 않는다.

- ① 70세 이상의 근로자
- ② 호주 밖에서 맡은 일에 대해 지불받는 비거주 근로자
- ③ 비거주자고용자에게 고용된 거주근로자
- ④ 이민법이 허용하는 취업비자로 취업한 근로자
- ⑤ Commonwealth Government 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gram에 의한 보수를 받는 자
- ⑥ 월 450달러 미만의 소득근로자
- ⑦ 18세 이하로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근로자
- ⑧ RBL(Reasonable Benefit Limits)을 초과하는 누적퇴직급여가 있는 자

1992~93년 동안 연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53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기록했으나 세제지원을 통해 공적연금 비용은 감소되었다.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수준은 고용자의 年支拂賃金總額(annual payroll)을 기준으로 모든 납세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에 피부양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다.

“퇴직연금보증(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법의 도입목적은 고용자가 종업원의 최저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고용자의 각출율은 연간 총지불임금이 1백만 달러 이하일 경우 근로자 급여의 최저 3%이며 연간 총지불임금이 1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는 최저 5%를 납부해야 하며 고용자의 각출률은 다음과 같이 2002년까지 9%로 상향조정될 것이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고용자의 SGC 각출률

(단위 : %)

	연간 직원 임금총액 100만 달러 이하 고용자	연간 직원 임금총액 100만 달러 이상 고용자
1992.7.1 ~ 1992.12.31	3	4
1993.1.1 ~ 1993.6.30	3	5
1993 ~ 1994	3	5
1994 ~ 1995	4	5
1995 ~ 1996	5	6
1996 ~ 1997	6	6
1997 ~ 1998	6	6
1998 ~ 1999	7	7
1999 ~ 2000	7	7
2000 ~ 2001	8	8
2001 ~ 2002	8	8
2002 ~ 2003	9	9

자료 : The Treasury Dept. of Finance Australia, *Security in Retirement : Planning for Tomorrow Today*, 1992.

2) 관련세제

가) 각출금에 대한 과세

(1) 고용주 각출금(Employers)

고용주가 자격이 있는 종업원(eligible employees)을 위해 superannuation fund, RSA, SHAR에 납부한 각출금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허용 가능한 공제액은 1998/99년의 경우 다음과 같다.

<표 III-15> 고용주 각출금 연령별 공제한도액

(단위 : 호주달러)

연령	공제한도액
35세 미만	10,600
35~49세	29,443
50세 이상	73,019

자료 :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1999.

non-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에 납부한 각출금의 경우는 공제금액에 제한이 없다. 이러한 각출금은 FBT(Fringe Benefit Tax)의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종업원이 호주에 거주하는 “exempt visitor”인 경우와 4년 미만의 일시적인 취업상태인 경우이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SHAR에 납부한 경우 최고 1,2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2) 자영자 각출금(Self-employed)

자영업자(self-employed)가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 또는 RSA에 납부한 각출금의 최대 공제액은 1998/99년에 3천 달러와 3천 달러를 초과하는 각출금의 75%를 합한 금액과 납세자의 연령을 기초로 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다.

<표 III-16> 자영자 각출금 및 연령별 공제한도액

각출금	공제액 한도	연령	공제한도액 (달러)
0~3,000달러 3,001달러 이상	실제 각출금	35세 미만	10,600
	3,000달러+ 3,000달러	35~49세	29,443
	초과액의 75%	50세 이상	73,019

(3) 종업원 각출금(Employees)

종업원이 받은 고용주 각출금은 일반적으로 연금각출금(pers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고 그 대신 세액 환급(tax rebate)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 환급액은 연간 1백 달러이고 이는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 또는 RSA 중 ①실제 각출금과 ②환급가능한 각출금 최고액(MRC : Maximum Rebatable Contributions)인 1천 달러 중 적은 금액의 10%이다. 환급액은 2만 7천 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환급가능한 각출금 최고액(MRC)은 1달러당 25센트씩 감소하여 과세소득이 3만 1천 달러 이상이면 세액환급액은 0이 된다.

〈표 III-17〉 종업원 각출금 환급 한도액

(단위 : 달러)

과세소득(AI)	환급가능한 각출금 최고액(MRC)	환급 최고액
0~27,000	1,000	MRC 또는 각출금
27,001~30,999	$1,000 - (AI - 27,000) \times 25\%$	
31,000~	0	

(4) 기금(Funds)

퇴직연금기금과 예금기금, 합동연금신탁(Pooled Superannuation Trusts) 및 생명보험회사와 공제조합(friendly societies)의 퇴직연금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5%세율로 과세한다. 퇴직연금 기금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오직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특별한 법률이 적용된다. 연금기금의 배당시는 기금이 이미 납부한 33%의 법인세를 임퓨테이션방식(imputation credit system)에 의해 이중과세를 배제하며 이는 새로 도입된 15%의 세금을 상쇄 가능케 한다.

<표 III-18> 기금별 세율

(단위 : %)

기금 종류	세율	
	1997/98년	1998/99년
퇴직연금기금(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 실현된 자본이득, 과세대상각출금을 포함한 소득	15	15
- 특수관계자 및 가입기업 배당	47	47
퇴직연금기금(Non-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 실현된 자본이득, 과세대상각출금을 포함한 소득	47	47
예금기금(Complying Deposit Funds)		
- 실현된 자본이득, 과세대상각출금을 포함한 소득	15	15
- 특수관계자 및 가입기업 배당	47	47
예금기금(Non-complying Deposit Funds)		
- 실현된 자본이득, 과세대상각출금을 포함한 소득	47	47
합동연금신탁(Pooled Superannuation Trusts)		
- 실현된 자본이득, 과세대상각출금을 포함한 소득	15	15
- 특수관계자 및 가입기업 배당	47	47

나) 급부에 대한 과세

(1) 연금급부(Superannuation Pension benefits)

연금급여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급여의 종류에는 퇴직연금 급부와 차환연금(rollover annuities)이 있다.

연금급여 수혜자에게는 undeducted purchase price(UPP)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며 공제규모는 연금개시일의 UPP를 수혜자의 기대수명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UPP는 1983년 6월 이후 세액공제 되지 않는 각출금 부분에 해당한다.

1994년 7월 1일부터 과세퇴직연금기금으로부터 지불되는 세금환불 가능퇴직연금과 일괄지불 ETP(eligible termination payments)연금은 일률적으로 15%의 세금을 환불해 준다. 개인의 연금급여혜택 한도액

(reasonable benefit limits: RBLs)의 초과분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모든 연금저축과 종신연금의 지불(payment)에 대해 한도내에서 세금을 환불해 준다. 수령자가 55세 이상 또는 사망연금과 장해 연금을 지불받는 경우는 연금저축 또는 종신연금에 대해 세금을 환불받는다. 1994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세금환급대상 연금저축 또는 종신연금 수혜자의 급부는 종전보다 증가되나, 고소득자 중 특히 고액의 연금급여를 지불 받는 경우는 세제혜택상 손해를 보게 된다.

(2) 일괄지불급여(lump-sums)

1983년 이전에는 퇴직연금 과세가 EET(exempt-exempt taxed)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1988년까지도 계속되었다. 1983년 6월 이전에는 급부시 5%의 한계세율로 과세되었고 1983년에 일괄지불급여는 과세혜택이 없었다. EET방식은 소득이 연금체제를 벗어나는 순간 즉, 인출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1983년에 사적연금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88년 5월 연금개정 이후 TTE(taxed-taxed-exempt)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급부단계의 세후급여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금의 재정상 세제지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저축액의 경우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세제혜택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의 상한액(RBLs)을 정해 놓고 있다. 가입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RBLs는 1994년 7월 1일부터 단순하게 슬라이드 되는 달러 상한액으로 대체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새로운 상한액에 의하면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퇴직연금 급여 중 40만 달러까지 급여의 절반 이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평생연금이나 종신연금으로 수급되는 경우는 80만 달러까지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급여부분은 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초과부분은

47% 최대한계세율로 과세).

<표 III-19> 일괄지불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식

	각출금	소득(Earnings)	금 부
일반저축 (ordinary savings)	Taxed 소득세후에 과세	Taxed 저축자 한계세율	Exempt 공제
1983년 7월 이전 퇴직연금	Exempt (공제) 고용자와 고용인	Exempt (공제)	Taxed 한계세율 5%
1983년 6월 이후 퇴직연금	Exempt (공제) 고용자와 일부 고용인	Exempt (공제)	Taxed 1983년 6월 이후 금부에 대해서 15~30% 과세
1988년 6월 이후 퇴직연금	Taxed 감면대상 각출금과 고용자에게 기금의 15% 과세(제한적으 로 세금환불 가능)	Taxed 15% 과세	Taxed 0~15% 과세

자료 : The Treasury Dept. of Finance Australia, *Overview of the Taxation of Superannuation in Australia*, 1995.

5. 뉴질랜드

가. 공적연금

1) 연금제도

뉴질랜드의 社會保障制度는 1898년 노령연금을 시초로 하여 1911년에 미망인연금과 1924년에 시각장애자연금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1936년에는 장애연금법이 制定・施行되었다. 현행 國民年金制度

(National Superannuation)는 1990년에 改定되었으며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공무원 및 광부를 위한 특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 재원조달

재원은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액 지원되며 정부는 일반조세수입으로 병가수당, 산모수당, 실업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불한다.

나)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old-age pension)

노령연금 수급자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20세 이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라야 하며 50세 이후에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노령연금의 현재 수급개시연도는 62세이나 2001년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노령연금의 수급에 대한 자산조사 또는 퇴직여부에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노령연금급여에 적용되는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노령연금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독신자는 주당 234.14뉴질랜드달러, 부부는 348.16뉴질랜드달러씩 급부된다(1995년 현재). 연금급부상 부적격(unqualified)배우자를 가진 기혼연금수령자는 타소득수준에 대한 자산조사 없이 부부급여의 1/2를 지급받으며 자산조사 후 기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부부급여 전액을 급부받게 된다. 연금급여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기타 급여혜택의 수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산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빈도조사에 따른 사회부조로는 거주수당과 장애수당 및 특별빈민수당 등이 있다.

(2) 장애연금

연금급여수준이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다(시각장애자는 제외).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은 완전장애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로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장애연금의 수급연령은 16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1995년 현재 최대 급부수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독신자는 주당 168.14뉴질랜드달러 이하(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10.19뉴질랜드달러)
- ② 기혼부부는 주당 280.58뉴질랜드달러 이하
- ③ 18세미만 수급자는 주당 136.23뉴질랜드달러 이하

시각장애자 외의 독신장애자의 경우 연간 2,6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급부가 감액된다. 단,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한액이 3,120뉴질랜드달러로 증가하며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추가급여가 급부된다. 이외에도 기타 빈도조사에 따른 주거수당, 집수리비용의 가불, 직업트레이닝 관련 성과수당, 취업수당, 장애수당 및 특별빈민수당 등이 마련되어 있다.

(3) 유족연금

연금수급대상에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고아가 포함되며 최근 3~5년 이상 국내거주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순지불액이 140.29뉴질랜드달러까지로 연간소득이 2,6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급부가 감액된다. 단,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한액이 3,120뉴질랜드달러이다(자산조사가 적용됨). 18세 미만으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full orphan)일 경우는 소득조사가 해당되지 않으며 주당 84.17뉴질랜드달러까지 지불된다.

사망한 노령연금수령자와 장애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4주 동안의 수당을 일괄지불한다. 소득조사에 의한 장례비용은 1천 뉴질랜드달러까지 일괄지불한다. 또한 기타 빈도조사에 따른 공적부

조가 제공되고 있다.

2) 관련세계

기본적으로 소득세로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금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1964년 사회보장법하에서는 뉴질랜드 퇴직연금과 자산조사 대상금부(income-tested benefits)를 제외한 연금급여 소득은 세액공제된다.

공제되지 않는 자산조사대상금부는 개인금부, 소년소녀가장수당(independent youth benefit), 구직수당, 질병수당, 직업훈련수당, 실업수당, 미망인연금과 긴급수당을 말한다. 자산조사와 무관한 보조금으로는 장례와 관련하여 사망후 일괄지불금(lump sum payment of death), 숙박보조금, 임차보호수당과 장해수당 등이 포함되며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7년 12월 17일 이전 과세제도하에서 승인된 연금제도의 각출금은 제한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기금소득(fund earnings)은 비과세, 금부되는 연금급여는 소득으로 과세된다. 승인된 일괄지불제도는 면세로 일괄지불되며 이와 같이 승인된 일괄지불제도의 금부액(benefit)의 25%는 전액불입한다. 일괄지불제도하의 고용주 각출금이 연금제도보다 더 제약적이기는 하나 각출금 및 기금소득과 퇴직금부는 세제상 공제가 허용된다. 1980년초 개정으로 일괄지불제도하에서는 기업과 개인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되었다. 1983년 4월부터 고용주보조금(employer subsidised)과 개인일괄지불제도의 순기금소득(net fund earnings)이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생명보험과 퇴직연금의 각출금에 대한 개인공제는 고용주보조금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비보조 개인연금은 1,000달러에서 1,400달러로 각각 인상되었다.

<표 III-20> 연금제도별 과세제도

		각출금(contribution)	투자소득	급부(benefit)
연 금	고용주보조금	급여의 10%까지 공제	비과세 (taxed exempt)	· 연금은 소득세 · 면세일괄지불의 25%
		1,200달러까지 공제		
	개인	14,000달러까지 공제	비과세	· 연금은 소득세 · 면세일괄지불의 25%
일 괄 지 급	고용주보조금A	한도범위 내에 공제	비과세	· 연세(tax free)
		근로자 1,200달러까지		
	고용주보조금B	한도범위 내에 공제	과세	· 면세
		근로자 1,200달러까지		
개인 · 비보조	A	한도범위 내에 공제	비과세	· 면세
	B	비공제	과세	· 면세

자료 : OECD, *Private Pension in OECD Countries : New Zealand*, 1993.

나. 사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1) 연금제도

사적연금은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부의 지급 형태에 따르면 연금형과 일시불형이 있다. 1984년에 시작된 재정부분의 조세변화와 규제완화에 따라 제시된 근로자연금의 개별화는 연금지급기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1987년 3월말 기준으로 기업연금 가입자의 수가 개인연금에 비해 80% 이상 더 많고 자산 규모도 8배 이상이었다. 당시의 뉴질랜드 전체로 보면 전체 근로자 중 기업연금 가입자가 26%, 개인연금 가입자가 14%이었다. 1989년에는 기업연금 회원 수의 4분의 1 이상과 개인연금 회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일시불균형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사적연금에는 중앙공무원들이 가입하는 정부연금기금(GSF :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과 지방공무원들이 가입하는 국가저축기금(NPF : National Provident Fund)이 포함된다. 국가저축기금에는 개인,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 사적연금 중 기업연금은 생명보험사, 기금 자치단체, 국가저축기금, 기타 금융기관, 정부연금기금에서 운영되고, 개인연금은 정부연금기금을 제외한 각 기관에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장기근무자는 NPF나 GSF에서 관할하고 대기업근로자는 유동적이기는 하나 상당액의 퇴직급부를 받게 된다. 민간기업제도는 더 나은 조기퇴직, 산재수당을 지불하지만 GSF처럼 물가상승에 관한 전적인 보장을 못할 때가 많다.

정부당국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해 고용주가 연금형에 각출하는 경우 세제상 더 우대해 주었으나 1980년대 초반에 기업연금 일시불형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축소와 개인연금 일시불형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폐지 등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었고 1987년 연금과세제도의 개편으로 연금저축이 크게 축소되었다.

각 제도별 1인당 평균 각출금과 자산은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제도별 평균각출금 및 자산규모

		연평균각출금 (회원수 당 뉴질랜드달러)	평균자산 (회원수 당 뉴질랜드달러)	총자산 (백 뉴질랜드달러)
기업	연금	3,123	38,731	6,933
	일괄지급	1,888	15,724	1,541
개인	연금	837	2,224	238
	일괄지급	1,133	7,325	879
등록제도		1,710	12,742	395
평균		1,930	18,985	

자료 : OECD, *Private Pension in OECD Countries : New Zealand*, 1993.

뉴질랜드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개인보다는 고용주가 직업연금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몇 대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1989년 35만명의 근로자(노동인구의 22%)에게 3,500개의 기업연금제도(occupational schemes)를 제공했다.

60세 이하 납세자의 저축에 대한 과세혜택규정은 개인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일반저축으로부터 세제혜택상 차별화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개인퇴직연금제도는 각출금의 일정수준 또는 불규칙적인 간격을 두고(irregular intervals) 일괄지불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1989년 연평균 각출금은 매년 1인당 약 1천 달러 정도이며 회원의 대다수(55%)가 연금보다는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2> 연금과 일괄지불 제도 및 회원 규모

	제 도		회 원	
	회원 수	%	회원 수	%
연 금	100	13	98,000	45
일괄지불	644	87	120,000	55
합 계	744	100	218,000	100

자료 : OECD, *Private Pension in OECD Countries : New Zealand*, 1993.

1985년까지는 17세와 25세사이의 모든 공무원에게 GSF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반연금제도의 회원자격요건에 대한 폐지는 회원이 108,000명에서 89,000명으로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군대, 경찰, 교도소직원,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일반연금제도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연금수급권에 대한 최소자격요건의 제한은 없다.

급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① 퇴직급부는 일괄지불과 일괄지불로 대체 가능한 연금의 25%까지 연금형태로 제공된다.
- ② 1989년에 기업연금(occupational schemes)의 55%만이 연금제도였다. 연금제도가 많은 조합과 총회원의 73%에 해당하는 GSF 회원을 포함하여 제공되기 때문이다. 1982년전까지는 일괄지불의 제도의 비율이 더 높았다.
- ③ 일괄지불과 연금제도 사이의 구분은 연금의 100%가 일괄지불로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더 불명확하다.
- ④ 1990년 3월 Government Actuary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퇴직연금제도의 약 87%가 확정각출금제도(defined-contribution schemes)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출금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계약이며 이에 대해 1987년까지는 일정 최대한도까지 공제되었다. 1987년까지 고용주 각출금은 회원급여의 10%까지 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7년까지는 각출률은 거의 안정적이었으나 1987년 이후 몇 고용주는 고용주각출금에 대해 원천세를 적용하여 각출률을 조정하였다. 근로자 각출금의 각출률은 제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각출률은 5%이다. 회원들은 각출하기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표 III-23> 제도형태에 의한 근로자와 고용주의 각출률

(단위 : %)

각출률	제도의 각 범위			
	확정각출제도		확정금부제도	
	1987	1990	1987	1990
근로자				
0 ~ 4.0	17	28	7	15
4.1 ~ 5.0	46	56	47	55
5.1 ~ 6.0	5	8	21	23
6.1 ~ 7.0	0	8	7	7
7.0 이상	0	0	1	0
비정	2	0	17	0
고용자				
Nil	7	19	8	37
0.1 ~ 5.0	63	38	11	6
5.1 ~ 7.5	12	12	7	2
7.6 ~ 10.0	8	23	41	24
10.1 ~ 15.0	0	4	24	26
15.0 이상	3	4	10	5
비정	7	0	0	0

자료 : 뉴질랜드의 퇴직연금기금연합회, 1990.

<표 III-24> GSF에서의 근로자 각출률

(단위 : %)

	기본급여
General Scheme	6.5
경찰	7.5
군대	7.6
교도소직원	8.5
판사	8.0
국회의원	11.0

자료 : 정부퇴직기금.

확정각출제도하에서 고용주의 각출금은 근로자와 각출률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보다 덜 각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확정급부제도하에서 고용주의 각출률은 근로자의 각출률과 무관하다. 고용주의 각출률은 기금방법, 투자상황률 그리고 연금의 만기 등에 의해 결정된다. 확정각출제도와는 달리 확정급부제도의 각출률은 각출면제기간(contribution holidays)이 있는 까닭에 해마다 달라진다.

2) 관련세제

1987년 세제개편 이전까지는 각출금은 소득공제하고 기금운영수익에 대해 비과세, 급부에 대해 과세(EET)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 후 1987년 사적연금에 대한 근로자 각출금의 소득공제가 폐지되었고 1989년에는 고용주 각출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금지되었으며 1990년에는 기금운영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1990년 4월 이후부터는 각출금과 기금운영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급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GSF를 포함한 기금의 운영수익에 대한 과세방식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분류 1(연금과 A기금)에 해당되거나 1987년 12월 17일 이전 가입자는 투자소득에 25%로 과세된다. 분류 2에 해당하는 것은 33%로 과세된다. 분류 3은 1989년 4월 1일부터 33%로 과세되고 1990년 4월 1일부터 company 또는 trust로 간주된다.

6. 주요국의 연금과세제도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국의 공적연금 과세제도

주요국의 공적연금 관련 과세제도는 나라마다 제도와 경제특성상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고용주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을 통해 전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많은 경우 각출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급부시에 과세하는 방안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25>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제도하에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이 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각출금은 각출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급부시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경우도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며, 근로자의 각출분은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미국의 공적연금의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각출시 과세, 급부시 비과세로 되어 있으나, 1983년의 연금개혁에 의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계층별로 차등과세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징수되는 조세수입은 사회보장기금으로 전액 적립된다. 미국의 연금과세는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는 잠정소득의 50% 또는 기준금액 초과분의 50% 중 낮은 금액을 과세범위에 포함시키며, 높은 소득계층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의 최고 85%까지 포함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용주가 납입한 공적연금에 대한 각출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며 근로자 부담의 각출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영국도 1965년 이전에는 근로자의 각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각출시와 급부시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기초소득연금인 노령보장연금과 소득보장보족연금은 무각출제도로써 이에 대한 재원은 일반조세를 통해 마련되므로 각출시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세제혜택 또는 과세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연금소득은 소득보장보족연금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비례연금인 캐나다/퀘벡

연금제도의 경우는 근로자의 각출분과 고용주의 납부금 모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연금의 재원이 일반재정에서 조달되므로 각출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 또는 과세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 연금급부시 소득과세가 적용되며 적용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표 III-25> 공적연금의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제 도	각출시	급부시
한 국	국민연금	고용주 :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 : 소득과세 (소득공제 혜택없음)	비과세
미 국	노령·장애·유족연금 (OASDI)	고용주 :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 : 사회보장세로 과세 (소득공제 혜택없음)	낮은 잠정소득계층과 높은 잠정소득계층에 따라 과세 범위를 차등적용
영 국	국민연금	고용주 :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 : 소득과세 (소득공제 혜택없음)	전액과세
캐 나 다	노령보장제도	비과세	과세소득에 산입
	캐나다/퀘벡 연금제도	고용주 :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 : 전액 소득공제	
호 주	노령연금 배우자연금	비과세	연금급부금에 대한 세액환불이 기혼자와 독신자에게 차등으로 지급(초과소득 한도액에 1.25센트/1달러)
뉴질랜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비과세	소득세(연간 소득한도 초과시는 초과분에 대해 25% 추가로 과세)

자료 : 한도숙외,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5. 12.

한도숙, 「주요국의 공적연금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1997. 11.

나. 주요국의 기업 및 개인연금 과세제도

주요국의 기업연금은 제도 면에서 공적연금의 경우보다 국가간의 차이가 현저하며 적용방식도 다양하다.

미국의 기업연금에 대한 과세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각출금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반면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크게 확정금부형, 확정각출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른 과세규정상에도 차이가 있다(<표 III-3> 참조). 확정금부형의 경우는 종업원 1인당 일정 연금부액 또는 각 가입자의 과거 최고 3년간 평균급여에 대한 연간금부액에 상당하는 각출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확정각출형의 경우는 전종업원에 대한 지급급여 총액의 15%까지 손금산입된다. 미국의 기업연금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업원 본인이 부담한 각출금을 초과하는 사업주부담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소득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종업원이 부담한 각출금은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 연간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금급여의 경우 초과액의 15%가 특별세로 과세된다.

미국의 개인연금은 Keogh Plan과 개인퇴직계정인 IRA가 대표적이다. Keogh Plan의 경우 확정각출형은 연간소득의 25%까지 확정금부형은 연간 일정금액 또는 급여최고시기 연간 3년간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각출금액 중 낮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소득공제된다. Keogh Plan에 의한 연금급여는 수취연도에 통상소득으로 전액 과세된다. IRA 납부금은 일반요건 충족시 납세자 소득과 2천 달러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최저소득공제액은 200달러이다. 또한 1998년부터 새로 도입된 Roth IRA는 일정소득층의 가입망이 허용되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급부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가 면제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개시연령 이전의 조

기수급시는 10%의 추정세가 부과된다.

영국의 기업연금인 직역연금은 급부기준제도가 대부분이고 부급기준제도의 비중은 미미하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출금은 일반적으로 전액 손금산입되나 연간수입이 87,600파운드를 초과하는 종업원을 위한 사업주의 각출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각출금은 현재 87,6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의 15%까지 각출이 가능하며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퇴직시 지급 받는 연금급여는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전액 과세되는 반면 퇴직시 일시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영국의 개인연금의 경우 일정의 계약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5세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87,600파운드 한도 내에서 17.5%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증가한다(<표 III-9> 참조). 개인연금 급부액에 대해서는 통상소득으로 간주해 전액 과세되며 비과세일시금의 경우는 적립금의 25% 또는 15만 파운드를 한도로 비과세 된다. 캐나다의 기업연금제도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며 고용주 각출분의 경우 종업원 1인당 3,500캐나다달러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종업원 각출분에 대해서도 연간 3,5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수급시 종업원 각출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비과세 된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연금 납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기업연금 비가입자의 경우 연간소득의 18%까지 소득공제하며, 기업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업연금의 공제한도인 3,500캐나다달러를 비가입자의 소득공제 한도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액수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개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17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연금소득의 17%까지 세액공제한다.

호주의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각출금은 공제한도액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표 III-15> 참조). 단, 부가급여과세(fringe

benefit tax)의 대상이 되는 각출금의 경우는 공제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자영자의 각출금의 경우는 연간 공제액과 초과금액의 75%를 합한 금액 또는 연령에 따른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고용주 각출금은 종업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종업원에게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세액환급대상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해 15% 세율로 과세하며 연금기금 배당시 기금이 기납부한 법인세 33%를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해 공제한다. 연금금부에 대해서는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과세퇴직연금기금으로부터 지불되는 세금환불 가능퇴직연금과 일괄지불연금은 일괄적으로 15%의 세금을 환급해준다. 일괄지불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식은 1983년 7월 이전에는 각출금과 이익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고 금부시 한계세율로 과세하는 EET방식을 유지하다 1988년 6월 이후에는 각출과 금부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TTT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호주 정부는 세후연금급여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에 대한 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급여의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형과 일시불형이 있다. 1987년 세제개편 이전까지 각출금은 소득공제하고 기금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부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EET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7년에 사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 각출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1989년에는 고용주 각출금에 대한 손금산입 혜택 또한 폐지되었으며 1990년에는 기금운영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 4월 이후는 각출금과 기금운영수익에는 과세하고 금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TTE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뉴질랜드는 기금의 운영수익에 대한 과세가 25% 또는 33%로 분류에 따라 차등과세 된다.

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보다 노령화를 먼저 경험한 주요 6개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의 경우 6개국 모두 공적연금 급부시 연금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각출시와 급부시 모두 과세가 적용된다(TET). 미국은 각출시와 과세 급부시에 비과세인 TEE 방식에서 종업원 각출분에 대해 각출시와 급부시 모두 과세하는 TET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이로부터의 조세수입은 사회보장기금으로 적립된다. 반면 영국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각출시 소득공제-급부시 과세(EET)에서 각출과 급부시 과세하는 TET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기초부문인 사회보장급여가 일반재정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됨에 따라 각출단계에서의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고용주의 손금산입과는 무관하게 급여 급부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또는 연금재정의 어려움으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의 폭을 축소해가고 연금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해 과세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연금지급이 본격화되어 선진국에서와 같은 공적연금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향후 공적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수입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다.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이 의무화된 경우는 세제혜택이 적은 반면 대부분의 개인연금과 같이 연금가입이 자발적인 경우는 소득공제의 형태로 세제혜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부단계에서는 통상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같은 일시불 형태의 사적연금의 경우는 이를 연금화하는 형식으로 재가입시에는 일시불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경우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노후보장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의 연금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퇴직금에 부여되는 과도한 세제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퇴직금과 유사한 일시불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통상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의 차원에서 도입시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급부시 비과세인 EEE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세제혜택의 폭을 축소·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의 경우도 개인연금 납부시와 급부시 모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제도가입의 의무화의 정도에 반비례하는 세제혜택의 폭과 향후 도래할 공적연금재정의 어려움을 대비한 보다 효율적인 연금과세제도의 도입이다. 또한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도 연금과세의 도입과 함께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노후보장제도의 3단계의 구축과 더불어 이에 따른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금과세제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본다.

IV.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³⁶⁾

제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금과세체계개편,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감면,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의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연금과세체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과세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에는 연금과세체계개편에 의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세대간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분석에는 공적연금, 퇴직금 및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효과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여타 저축수단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다시 말하면 비과세·세제우대저축과 관련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는 지불형태가 일시금에서 연금형태로 전환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지불보장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업연금제도하에서 연금기금의 사회적립을 통하여 지불보장이 된 상태로 전환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한 모형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금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대별·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과 비과세·세제우대저축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조세관련자료, 각종 공적연

36) 본장에서 행한 개인연금의 저축증대효과와 일반균형을 이용한 분석은 『계량경제학보』에 게재된 전영준(2000)과 *Kore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될 예정인 Chun(2000)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전영준(2000)과 Chun(2000)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결과를 우선적으로 해당 학술지에 게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금 및 사적연금자료, 비과세·세제우대저축 관련자료 등의 통합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급여 형태가 일시금에서 연금형태로 전환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호(time preference)와 이자율과의 관계에 따른 개인의 행태 변화가 명시적으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안정한 자본시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성 제약에 제한 받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감안하는 등 매우 정치적인 모형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치적인 모형의 설정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현 상황에서는 수집 가능한 자료와 설정 가능한 모형의 설정을 통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하에서 본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장에서의 분석은 크게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그리고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분석의 두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개인연금의 저축증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비과세·세제우대저축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비교적 활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개인연금의 저축증대효과 분석을 행하고 이를 여타의 세제지원저축과의 관련하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외국의 유사한 연구를 살펴본다. 두 번째 분석 방법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개인연금 도입,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연금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이 장기저축이고 연금과세체계개편의 효과가 장구한 시일에 걸쳐 나타나므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1. 개인연금의 저축증대 효과분석

가. 머리말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주요 외국에서 국민저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서 제91조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저축지원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들 저축지원제도는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혹은 세제우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저축지원제도의 목적은 크게 노후소득보장, 재산형성(혹은 장기저축유도) 그리고 근로자, 농어민 혹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세제지원저축의 자산규모가 1998년 8월 현재 총금융자산의 약 2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이러한 세제지원저축의 실효성 분석은 이 분야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각계에서 제기된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여러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비과세·감면저축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세수감소를 초래한다는 점 이외에 저축지원의 당초 취지인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책 강구의 목적에 부합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기보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지원수단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과연 저축지원수단이 순수하게 국민저축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저축지원수단의 도입은 일차적으로 정부저축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정부저축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저축이 증가한다면 저축지원의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할

37) 이철인·전영준·김정훈(1999) 참조.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만일 저축지원책으로 인하여 기존의 금융자산이 비과세·감면수단으로 대체되고 순저축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비과세·세제우대저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 감소만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저축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저축수단과 비과세·세제우대저축간의 대체 탄력성(substitution elasticity)을 추정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의 설정과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data set)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패널자료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개인의 금융자산 구성의 변화와 개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가구원 수, 소득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가 인별 정리되고 이에 종합소득세자료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 등이 통합되어야 하며 만일 가능하다면 비금융자산의 소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저축지원책의 전면적인 실효성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의 인식하에서 여타 세제지원저축과 관련되는 개인연금의 효과분석을 일단 유보하고 현상황에서 어느 정도 접근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연금의 저축증대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연금은 1994년 저축증대와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책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인연금이 도입된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1995년 자료에서 대우패널은 자산 종류별 금융저축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명시적인 질문에 포함되어 있어 개인연금과 여타 금융자산간의 대체탄력성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저축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생효용(lifetime utility)극대화에 입각한 명시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 및 여타 저축 수준에 대한 결정산식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정산식과 대우패널 3년차(1995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연금불입과

여타 저축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책들 즉, 개인연금보험료 불입료³⁸⁾의 40%에 대하여 소득공제허용(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개인연금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명시적으로 감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정된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간의 대체탄력성과 아래에서 상정한 간단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연금제도도입의 저축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994년 개인연금저축의 도입은 민간저축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민간저축의 증가는 개인연금이라는 새로운 저축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개인연금에 부여된 각종 조세지원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개인연금에 부여된 조세 지원은 민간의 순저축을 증대시켰다기보다 자산간 대체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본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나항에서는 외국의 세제지원저축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를 개인연금의 저축증대에 대한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다항에서는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의 구성 및 수준에 대한 결정산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축수단간의 대체탄력성 추정 방정식을 도출한다. 라항에서는 대체탄력성 추정에 이용될 대우패널 3차년도 자료와 추정에 이용될 변수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마항에서 대체탄력성 추정결과와 개인연금의 저축증대효과에 대한 모의실험결과에 대하여 언급한 후, 마지막으로 바항에서 본절의 분석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38)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은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나. 세제지원저축에 대한 기존연구

주요국의 저축지원책은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축지원수단은 노후소득보장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개인연금의 모델이 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401(k) Plan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장기저축에 대한 저축지원책을 중심으로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금감면특별저축(TESSA's)과 개인장기주식투자(PEP's)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5년 동안 일정한도의 금액을 불입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장기주식투자의 경우는 이를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자본이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독일과 프랑스의 저축지원책은 미국과 영국에 비하여 상이한 점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저축지원수단이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책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자산 형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대부조합에 대한 지원제도(독일, 프랑스)와 주식투자장기저축(프랑스)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갖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는 노인 등의 저축비과세제도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³⁹⁾.

저축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각국의 분석 중 가장 활발한 논의를 거친 것이 노후소득보장책에 대한 저축지원의 실효성 분석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미국의 IRA나 캐나다의 RRSP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

39) 미국의 401(k) plan과 유사한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책으로서 캐나다의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가 있다. 또한 주택보유를 위한 재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RHOSP(Registered Home Ownership Savings Plan)가 있다.

나 아직 이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분석방법 혹은 분석자료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인연금에 대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Engen, Gale and Sholz(1996), Hubbard and Skinner(1996) 그리고 Feldstein(1995) 등이 있다. Engen, Gale and Sholz(1996)의 경우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 분석을 통한 IRA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의 단기적 효과분석을 행하였으며 장기적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IRA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야기하였을 뿐 저축의 순 증가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Hubbard and Skinner(1996)와 Feldstein(1995)은 IRA의 저축 증대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Feldstein(1995)은 IRA가 민간저축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저축의 증대로 인한 자본축적이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이는 법인세수의 증대를 통해 정부저축을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IRA 혹은 401(k) plan과 유사한 제도인 캐나다의 RRSP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Carroll and Summers(1987)와 Venti and Wise(1994)는 RRSP가 캐나다의 저축 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경제환경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미국에 비하여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미국의 IRA나 401(k) plan보다도 폭넓게 RRSP 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명제하에서 시계열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반면, Sabelhaus(1997)는 미국과 캐나다간의 저축률의 차이는 RRSP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공적연금과 조세정책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공적연금과 조세정책을 감안하였을 때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은퇴 후의 소비를 위한 재원을 미국에 비하여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고소득층의 경우

미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소비재원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고소득층은 RRSP에 대한 불입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순효과가 캐나다의 높은 저축률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개인연금저축 이외의 세제지원저축에 대한 분석 예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한 예로 Engelhardt(1996)는 주택보유를 통한 재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캐나다의 RHOSP의 경우 불입액 1달러당 20~57센트의 국민저축이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Robson(1995)은 OECD 각국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수단의 실효성분석을 종합정리하고 있다. 그는 OECD 각국의 분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다. 저축에 대한 지원책이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저축지원책이 포트폴리오와 저축시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조세지원책은 특정자산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구성을 바꾸는 것보다 일정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이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데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저축지원책에 대한 실효성분석을 종합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모형

본 연구에서 행한 통계적 분석의 목적은 각 경제주체의 자산구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개인연금에 부여된 조세지원책에 의한 개인연금불입과 여타저축간의 대체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분석자료의 형태가 횡단면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저축수단간 대체탄력성의 추정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모형

은 Venti and Wise(1990)의 모형을 변형한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 모형과 Venti and Wise(1990)의 모형간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개인 연금형태의 저축, 즉 미국의 IRA에 허용된 조세지원이 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가 유일한 것으로 상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에 허용된 3가지 조세지원책을 즉, 개인연금보험료 불입료의 40%에 대하여 소득공제허용(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개인연금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명시적으로 감안하였다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Venti and Wise(1990)에 비하여 평생기대효용의 극대화의 취지에 더욱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행할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간의 대체탄력성 추정을 위한 기본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모형이 상정한 경제에 존재하는 각 개인은 21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한다. 본 모형에서는 20세 이하 연령층의 경제활동을 감안하지 않은 관계로 각 개인이 21세에 태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나이를 1세로 환산하기로 한다. 이 개인은 기본적으로 생애동안의 후생을 극대화(lifetime utility maximization)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 경제에서는 사망위험(mortality risk)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경제주체는 80세까지 생존한다. 각 연도마다 각 경제주체는 한 단위의 시간을 부여받는데 이는 1단위의 노동투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이 한 단위의 시간 전부가 노동공급으로 전환되며 노동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는 임금형태(W_{it})(t기에 연령이 i인 사람에 대하여)로 주어진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평생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축수준과 다음 두 종류 저축의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40) 본 모형에서는 개인연금의 조기해약시 가입자에 가해지는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기존연구에는 Gale and Sholz(1994) 등이 있다.

내린다. ①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 ② 여타저축액.

각 경제주체의 선호는 시간분리적이고, 두 번 미분가능하며, 강오목한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소비액과 인생의 각 단계에서의 개인연금불입액과 여타자산의 구성으로 결정된다. t연도에 태어난 경제주체의 평생효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um_t \beta^t u(c_{t+i-1}, a_{t+i-1}, i).$$

여기서 β 는 할인율을, C_{t+i-1} 과 a_{t+i-1} 는 t기에 태어난 사람이 연령 i에 도달한 시기의 소비와 총저축액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각 개인의 기간내 선호는 식 (1)의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U(c, a_i, i) = \frac{1}{1-1/\gamma} (C_i^{1-\gamma} A_i^\gamma)^{1-1/\gamma} \quad (1)$$

$$A_i = (a_{0i}^{1-\sigma} a_i^\sigma + (1-a_{0i})^{1-\sigma} (1-a_i)^\sigma)^{\frac{1}{\sigma}} \quad (1-1)$$

식 (1-1)에 의하면, 만일 개인연금과 여타저축으로부터의 수익률이 동일하면 이 개인은 연령 i세에 총저축액 중 개인연금 불입액의 비중을 a_{0i} 로 유지하는데 만일 조세지원수단 등의 존재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상이할 경우 그 비중은 이 값과 상이하게 된다. 세후수익률의 대체탄력성 $\left(\frac{1}{\sigma-1}\right)$ 에 의해 결정된다⁴¹⁾.

41) Venti and Wise(1990)와 본 모형의 특징은 개인의 효용함수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유동성과 시장위험 등 개별 자산의 특성을 모형에 명시하지 않고 대체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모형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호를 효용함수에 반영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가능하다면 향후 개별자산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모

여기에 태어난 개인의 생애 예산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um_{i=1}^T \left[\prod_{s=1}^i \left(\frac{1}{1+r_{t+s-1}(1-\tau_{yt+s-1})} \right) \right] (W_{it+i-1}(1-\tau_{yt+i-1}) + M_{it+i-1}(1-\tau_{pbt+i-1}) - SB_{it+i-1}(1-d \cdot \tau_{yt+i-1}) - C_{it+i-1}) \geq 0$$

(2)

if $i > R$, $SB_{it+i-1} = 0$

$$M_{it+i-1} = \begin{cases} 0 & \text{if } i \leq R \\ M_t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2-1)$$

여기서 W_{it+i-1} , M_{it+i-1} , SB_{it+i-1} , C_{it+i-1} 은 각각 t연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연령 i가 되는 시기의 노동소득, 개인연금급여액,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 그리고 소비지출액을 의미한다. 또한, r_{t+i-1} , τ_{yt+i-1} , 그리고 $\tau_{pbt+i-1}$ 는 각각 이자율, 소득세율, 개인연금급여에 대한 세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d(=40\%)$ 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개인연금불입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식 (2-1)은 일정수준($R=55$) 이하의 연령에서는 개인연금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이상의 나이에서는 개인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⁴²⁾.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과 개인연금급여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 식 (3)과 같이 확정각출형(Defined-Contribution) 개인연금보험제도를 상정하였다.

형에 입각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2) 현행제도하에서는 연령 $R(=55)$ 이전에 개인연금을 해약하는 경우 개인연금가입동안의 불입액에 대하여 부여된 조세지원 상당액을 추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은 개인연금의 조기해약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조기해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sum_{i=1}^{R-1} SB_{it+i-1} \left[\prod_{s=i+1}^R (1+r_{t+s-1}) \right] = \sum_{j=R}^I M_{jt+j-1} \left[\prod_{s=R}^j \frac{1+r_{t+R-1}}{1+r_{t+s-1}} \right] \quad (3)$$

개인연금급여수준은 각 개인이 가입기간동안 불입한 개인연금보험료와 개인연금에 부여된 조세지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연금과 일반저축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만일 각 개인이 평생동안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상황을 상정할 경우, 이 개인이 연령 R세부터 사망시까지 지급 받을 (세후) 개인연금급여의 현재가치(WM_t)는 다음 식 (4)로 표현할 수 있다.

$$WM_t = M_t \sum_{j=R}^I \left(\prod_{s=2}^j \frac{1}{1+r_{t+s-1}(1-\tau_{yt+s-1})} \right) (1-\tau_{pbt+j-1}) \quad (4)$$

식 (3)과 식 (4)를 이용하여 연령 i에 불입한 개인연금보험료의 (연령 i세에서 평가한) 총수익률⁴³⁾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 \frac{dWM_t}{dSB_{it+i-1}} \prod_{s=2}^i (1+r_{t+s-1}(1-\tau_{yt+s-1})) \\ &= \frac{dWM_t}{dM_t} \cdot \frac{dM_t}{dSB_{it+i-1}} \prod_{s=2}^i (1+r_{t+s-1}(1-\tau_{yt+s-1})) \\ &= \left[\sum_{j=R}^I \left(\prod_{s=i+1}^j \frac{1}{1+r_{t+s-1}(1-\tau_{yt+s-1})} \right) (1-\tau_{pbt+j-1}) \right] \cdot \\ & \quad \frac{\prod_{s=i+1}^R (1+r_{t+s-1})}{\sum_{j=R}^I \left[\prod_{s=R}^j \frac{1+r_{t+R-1}}{1+r_{t+s-1}} \right]} \end{aligned} \quad (5)$$

또한 여기에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일부(d)에 대한 소득공제규

43) 개인연금보험료 불입 1단위 증가에 따른 평생자산(lifetime wealth)의 현재가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을 감안하면, 일반저축의 수익률과 비교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총수익률 수준 $\left(\frac{1}{rp_{it+i-1}}\right)$ 은 식 (6)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령 i 에 일반저축대신 개인연금불입액 한 단위를 증가시키는 기회비용(rp_{it+i-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⁴⁴⁾.

$$\begin{aligned} \frac{1}{rp_{it+i-1}} &= \frac{dVM_t}{dSB_{it+i-1}} \prod_{s=2}^i (1+r_{t+s-1}(1-\tau_{yt+s-1})) \frac{1}{1-d \cdot \tau_{yt+i-1}} \\ &= \left[\sum_{j=R}^I \left(\prod_{s=i+1}^j \frac{1}{1+r_{t+s-1}(1-\tau_{yt+s-1})} \right) (1-\tau_{yt+j-1}) \right] \\ &\quad \cdot \frac{\prod_{s=i+1}^R (1+r_{t+s-1})}{\sum_{j=R}^I \left[\prod_{s=R}^j \frac{1+r_{t+R-1}}{1+r_{t+s-1}} \right]} \cdot \frac{1}{1-d \cdot \tau_{yt+i-1}} \end{aligned} \quad (6)$$

식 (6)은 다음과 같이 개인연금에 부여된 조세지원책을 나타내고 있다. ① 개인연금급여에 대한 한계세율이 낮다 ② 개인연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③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의 일부에 대하여 소득공제⁴⁵⁾가 허용된다.

각 개인의 효용함수(식 (1), (1-1) 참조)에서 도출된 개인연금과 여타저축에 대한 한계대체율 $\left(\frac{\alpha_{it+i-1}}{1-\alpha_{it+i-1}}\right)^{\sigma-1} \left(\frac{\alpha_{0i}}{1-\alpha_{0i}}\right)^{1-\sigma}$ 을 도

44) 식 (6)에 의하면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기회비용은 각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세 한계세율과 연령에 의해 결정이 된다. 미시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각 개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또한 연령도 상이하므로 미시자료를 이용한 개인연금과 여타저축간의 대체탄력성 추정시 인식의 문제(identification problem)이 발생하지 않는다.

45) 소득공제허용한도를 초과하여 개인연금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비용이 $1-\tau_y$ 가 아닌 1이 된다. 이 경우, 개인연금불입의 기회비용은 식 (5)의 우변에 해당되게 된다.

출하고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기회비용과의 소비자 균형조건하에서 식 (7)이 도출된다⁴⁶⁾.

$$\alpha_{it+i-1} = \frac{\left(\frac{\alpha_{0i}}{1-\alpha_{0i}}\right) r p_{it+i-1}^{\frac{1}{\sigma-1}}}{1 + \left(\frac{\alpha_{0i}}{1-\alpha_{0i}}\right) r p_{it+i-1}^{\frac{1}{\sigma-1}}} \quad (7)$$

α_0 와 σ 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가정하였다.

$$\alpha_k = \frac{\frac{\alpha_{0k}}{1-\alpha_{0k}} \cdot r p_k^{\frac{1}{\sigma-1}}}{1 + \frac{\alpha_{0k}}{1-\alpha_{0k}} \cdot r p_k^{\frac{1}{\sigma-1}}} + \varepsilon_k = f(\alpha_{0k}, \sigma; X_k, r p_k) + \varepsilon_k,$$

$$\varepsilon_k \sim N(0, \sigma_\varepsilon) \quad (8)$$

(k 는 미시자료에서의 개인 k 를 나타낸다.)

추정방정식에서의 독립변수에는 α_{0k} 와 $r p_k$ 가 있는데 전자는 개인연금과 여타저축의 수익률의 차이와 관계없이 개인연금의 고유의 특성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며 후자는 개인연금과 여타저축의 수익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변수이다. 여기서 전자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소득, 보유자산, 성별 등) X_i 와 선형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alpha_{0k} = g(b; X_k) = X_k b \quad (9)$$

46) 개인연금불입액과 여타 저축과의 비율은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모수 η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귀식 식 (8)의 종속변수는 0, 혹은 0과 1사이의 값, 혹은 1의 값을 가지므로 회귀식 (9)는 3단계 Tobit방정식이 되고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의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 = \prod_{\alpha_k=0} \left[1 - \Phi \left(\frac{f(\alpha_{0k}, \sigma; X_k, r p_k)}{\sigma_\epsilon} \right) \right] \prod_{0 < \alpha_k < 1} \phi \left[\alpha_k - \frac{f(\alpha_{0k}, \sigma; X_k, r p_k)}{\sigma_\epsilon} \right] \prod_{\alpha_k=1} \left[1 - \Phi \left(\frac{1 - f(\alpha_{0k}, \sigma; X_k, r p_k)}{\sigma_\epsilon} \right) \right] \quad (10)$$

여기서 Φ 와 ϕ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와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의미한다.

라.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대우패널 3년차(1995년) 자료이다. 개인연금이 도입된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1995년 자료에서 대우패널은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저축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명시적인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⁴⁷⁾.

대우패널 3년차 자료에는 3,045가구의 7,493명의 개인이 포함되어

47) 분석자료로서 대우패널 3년차(1995년) 자료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연금이 도입된 이듬해인 1995년에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인해 개인연금저축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시기이고 이후에는 가입자가 중도탈퇴 등으로 저축패턴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개인연금 단일 항목에 대한 설문은 1995년 자료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자료에는 연금보험(개인연금 포함) 혹은 생명 + 연금 등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어 개인연금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자료가 없다. 따라서, 1995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결과의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이들 중 20세와 55세 사이의 가구주와 그 배우자인 개인만을 포함하였다⁴⁸⁾. 또한, 소득이 없거나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를 줄이기 위하여 저축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개인과 저축액이 불확실하다고 대답한 개인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개인연금불입을 비정기적으로 한다고 대답한 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표본의 재구성 결과, 1,029명의 개인이 표본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중 272명의 개인이 개인연금을 불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개인연금 불입한도인 월 100만 원을 불입한 개인은 이 표본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연금 불입한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모형 설명시 언급하였듯이,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① X_k : α_{0k} 를 설명하는 변수 ② rp_k : 여타저축대신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을 늘임에 따른 기회비용. X_k 에 포함된 변수로는 가처분소득, 연령, 연령 제곱, 가구원수, 대졸자에 대한 더미변수, 고졸자에 대한 더미변수, 주택소유자에 대한 더미변수, 전세자에 대한 더미변수, 결혼 및 성(sex)에 대한 더미변수가 포함되었다. 해당 개인의 교육수준에 대한 더미변수를 포함시킨 이유는 교육수준은 생애 자산의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의 축적상태를 나타내는 측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주택의 형태에 대한 더미를 포함한 이유는 비인적자본의 축적상태를 나타내는 좋은 측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의 소유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이 높았던 관계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48) 55세 이상의 개인을 제외한 이유는 개인연금급여를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고, 고연령층의 저축행위가 저연령층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산 축적의 주요수단이 되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변수를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켰다. 연령과 연령 제곱을 포함시킨 이유는 연령에 따른 개인연금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Engen · Sholz(1993)에 의하면 저축에 대한 동기를 크게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savings motive)와 라이프 싸이클에 대응한 저축(life cycle motive)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선호는 이러한 두 가지 저축에 대한 동기의 연령별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IRA) (순)불입액의 절대액이 늘어나는 반면, 전체 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대한 선호는 연령수준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수, 결혼여부 및 성(sex)도 역시 저축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하였다. 세전소득에는 우리나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금융소득과 비정규직 소득이 포함된다. 납부세액은 설문에 대답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규정⁴⁹⁾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특별공제 등의 규정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에 세율구조와 세액공제 규정을 감안하여 결정세액을 구하였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특별공제를 산출하기 위하여 가구원 수, 부양자녀 수, 부양노인 수, 성(sex), 교육비 지출, 자동차보험 지출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현행의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세액공제 규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⁵⁰⁾만 감안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였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또 다른 역할

49)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재정경제원(1995) 참조.

50) 1995년 당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20%이며 공제액 한도는 50만 원이었다.

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과 근로소득 과세대상자간의 한계세율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천이며 또한 그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들이 직면하는 최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표 IV-1> 참조). 이러한 한계세율의 차이는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시의 소득공제를 통하여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기회비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타 저축수단 대신 개인연금보험료를 불입하는 기회비용 mp_k 를 산출하기 위하여 미래의 이자율과 한계세율에 대한 명시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근시안적인 기대(myopic expectation)를 가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미래에 직면하는 한계세율이 현재의 한계세율과 동일하며 이자율 수준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⁵¹⁾하에 각 개인이 최적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 수준은 기본 가정하에서는 7%로 가정하였는데⁵²⁾, 이는 1994부터 1995년 사이의 기간동안 실질이자율이 7~8%를 유지한 데서 착안하였다⁵³⁾. 이러한 가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자율이 10%인 경우와 5%인 경우를 가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행하였다.

마. 분석결과

51) 이러한 가정에 입각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기회비용산출은 측정오차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측정오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σ 에 대한 추정치가 과소추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 IV-3>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측정오차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모수의 과소추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2) 이 과정에서 취해진 암묵적인 가정은 모든 금융자산의 세전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53) 한국은행(1999) 참조.

위에서 설명한 회귀방정식과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표 IV-3>에 정리되어 있다. α_{0k} 를 설명하는 독립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변수는 가처분소득, 연령, 연령 제곱, 결혼여부 그리고 성별 등의 변수들이다. 높은 소득계층에 속하는 개인은 유동성 제약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개인연금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낮은 소득계층에 속하는 개인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들이 개인연금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였다가 유동성 문제로 인해 개인연금을 해약할 경우 조기 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의 상승에 따른 개인연금에 대한 선호의 변화는 연령과 연령 제곱변수의 계수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인연금이 총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세와 37세 사이에서 최고에 달하며 그보다 높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IV-3>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개인연금불입액의 절대수준은 40세 때 최고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비적 동기, 라이프 사이클 동기의 두 가지 종류의 저축에 대한 동기로 설명될 수 있다. 낮은 연령기(20대와 30대)에는 미래의 소득이나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고연령기로 갈수록 이러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연령기로 갈수록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보다는 라이프 사이클 동기에 의한 저축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7세 이후 평균적으로 개인연금을 덜 선호하는 경향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1988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자들에게 매우 높은 내부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에 의하면 1988년 당시 40세에서 45세였던 가입자들의 경우 연금급여의 현재가치가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현재가치보다 2배에 달하며 그보다 다소간의 낮은 연령층에 대해서도 내부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국민연금급여수준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유용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동기에 의한 저축의 필요성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⁵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유산 상속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까지 관찰된 바에 의하면 특히 고소득층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상속동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속의 형태가 주로 부동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령이 상승할수록 이러한 상속을 위한 동기가 강해져서 개인연금저축과 다른 형태의 저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에 대한 더미 변수의 설명력이 높은 이유는 표본에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만 포함되어 있고 세대주의 대다수가 남성인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혼자의 경우가 미혼자의 경우보다 개인연금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전자의 경우 소득과 소비의 흐름의 괴리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유동성이 보다 높은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개인연금의 선호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즉, 고졸이상 학력에 대한 더미에 대한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진 반면 대졸이상 학력에 대한 더미에 대한 계수는 음의 값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대졸학력이 개인연금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급여가 2008년경에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분석에 사용된 표본추출자료가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타저축간의 대체탄력성($\frac{1}{1-\sigma}$)을 추정한 결과는 이자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통된 현상은 대체탄력성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기본가정($r=7\%$)하에서 추정된 대체탄력성은 1.30($\sigma=0.2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도 대체탄력성이 1($\sigma=0$)에서 1.67($\sigma=0.4$)사이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특히 미국의 IRA에 대한 연구)에서 추정한 대체탄력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연금에 부여된 조세지원으로 인해 여타저축의 일부가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되고 다소간의 순저축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별연구에 따라 순저축 증가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높은 대체탄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하여 저축증대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인연금의 도입과 개인연금에게 부여된 조세지원의 저축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단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설정하였다. 식 (7)을 이용하여 아래 식 (11)을 도출할 수 있다.

$$S_{1k}^* = \alpha_{1k} \eta_k Y_{Tk} \quad S_{2k}^* = \alpha_{2k} \eta_k Y_{Tk} \quad (11)$$

여기서 Y_{Tk} 는 가처분소득을, η_k 는 각 개인의 평균금융저축성향을⁵⁵⁾, 그리고 α_{1k} 와 α_{2k} 는 각각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과 여타 금융저축액이 전체 금융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55) η_k 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아래 식 (14)과 여금융저축수준 및 가처분소득의 관찰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식 (1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식 (11)은 개인연금불입액이 0과 불입액한도(L) 사이일 경우, 개인 연금저축액과 여타저축액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을 전혀 하지 않거나($S_1=0$),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이 불입액 한도에 도달할 경우($S_1=L$), 여타 저축수준(S_2)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식 (11)을 적절히 변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래 식 (12)에서 명시하였듯이 $S_1=0$ 혹은 L 일 경우 여타저축수준 $S_2(m)$ ($m=0$ 혹은 L)을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S_1 \begin{cases} = 0 \\ = S_1^* \\ = L \end{cases} \quad S_2 \begin{cases} = S_2(0) \\ = S_2^* \\ = S_2(L) \end{cases} \quad (12)$$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식 (11)을 이용하여 $S_1=0$ 혹은 L 을 이 유발되는 가치분소득 Y_{Tk}^* 을 구한 다음(식 (13) 참조), 이 가치분 소득 주위에서 $S(m)$ 의 근사치를 식 (14)를 이용하여 구하였다([그림 IV-1] 참조).

$$m = \alpha_{1k} \eta_k Y_{Tk}^* \quad (m=0 \text{ 혹은 } L) \quad (13)$$

$$\begin{aligned} S_{2k} &= \alpha_{2k} \eta_k Y_{Tk}^* + \frac{\alpha_{2k} \eta_k}{1 - \alpha_{1k} \eta_k} (Y_{Tk} - Y_{Tk}^*) \\ &= \alpha_{2k} \frac{m}{\alpha_{1k}} + \frac{\alpha_{2k} \eta_k}{1 - \alpha_{1k} \eta_k} Y_{Tk} - \frac{\alpha_{2k} \eta_k}{1 - \alpha_{1k} \eta_k} \cdot \frac{m}{\alpha_{1k} \eta_k} \\ &= \frac{\alpha_{2k} \eta_k}{1 - \alpha_{1k} \eta_k} (Y_{Tk} - m) \end{aligned} \quad (14)$$

식 (11)~(14)과 (3년차)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IV-4>에 나타나 있다. 먼저, 개인연금이 존재하지 않은 경제

에 비하여 개인연금이 도입된 경제에서의 저축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저축의 증가는 개인연금저축에 부여된 세제지원에 기인하기보다는 새로운 저축수단의 등장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개인연금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모의실험을 한 결과 순저축 수준에는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연금에 부여된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대시켰다기보다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유발한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저축수단의 등장이 저축증대를 유발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효용함수의 특수한 형태를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만일 $\sigma = 0$ 의 경우를 상정할 경우 식 (1)로 표현된 효용함수는 $C^{1-\eta}(S_1^{\alpha_1}S_2^{\alpha_2})^\eta$ 로 변화하게 된다. 개인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alpha_1 = 0$ 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의 저축성향은 개인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여 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연금이라는 새로운 저축수단의 등장은 개인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소비되었을 자원의 일부가 저축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⁵⁶⁾.

조세지원제도 축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와 연금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율과세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조세지원의 효과가 미미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는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이 개인

56)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효용함수의 특별한 형태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정한 효용함수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연금과 여타저축이 완전대체제가 아니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의 평생자산(lifetime wealth)을 증가시켜 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수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는 또다시 저축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⁵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인연금에 부여된 세제지원이 민간저축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바. 요약

본 논문은 개인연금제도 도입이 민간저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생효용(lifetime utility) 극대화에 입각한 명시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연금보험료 불입금 및 여타 저축 수준에 대한 결정산식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정산식을 바탕으로 개인연금불입과 여타 저축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연금제도 도입의 저축증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1994년 개인연금저축의 도입은 민간저축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러한 민간저축의 증가는 개인연금이라는 새로운 저축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개인연금에 부여된 각종 조세지원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저축지원수단의 실효성 평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여타 저축지원수단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서는 금융소득자료, 종합소득세 자료 및 근로소득

57) 이러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2절의 분석에 의하면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은 장기적으로 저축수준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자료를 통합한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타 저축지원 수단의 실효성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체탄력성의 추정치를 여타 저축지원수단의 경우에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체탄력성 추정시 개인연금의 고유 성질에 의한 부분(α_{0k})과 수익률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자산간 대체관계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후자의 효과를 여타 저축지원수단의 경우에 유추하여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타 저축지원수단이 전체 민간저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고 자산간 대체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저축수단에 대한 세제지원 전반의 효과분석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셋이 구축되고 이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결과해석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연금제도에 국한되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개인연금에 부여되는 조세지원의 순저축증가효과는 매우 미미하므로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의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지원의 적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연금과 여타저축의 개별 성격, 특히 조세지원 부여시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이러한 목표별 적정 조세지원수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의 역할 중의 하나가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적절한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기업연금(혹은 퇴직금)·개인연금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표 IV-1> 한계세율구조(1995)

(단위 : 만원, %)

과 세 표 준	종합소득세 납세자	근로소득세 납세자
0 ~ 400	5	4
400 ~ 800	9	7.2
800 ~ 1,600	18	14.4
1,600 ~ 1,877	27	21.6
1,877 ~ 3,200	27	27
3,200 ~ 6,400	36	36
6,400 ~	45	45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1995.

<표 IV-2> 주요 통계

		개인연금가입자	비가입자	전 체
소 득 (1,000원)		16,307	13,899	14,536
연 령		38.13	39.89	39.43
기혼자 비율(%)		96	95	95
학 령 (%)	대출 이상	24	20	21
	고 졸	52	49	50
	고졸 미만	24	31	29
자 산 (%)	자 가	59	59	59
	전 세	33	31	32
	월 세	8	10	9
가구원 수		4.08	4.08	4.08
총 저 축 (1,000원)		696	540	581
성별(남성, %)		76	68	70
한계세율 (%)		18	15	16
N		272	757	1,029

<표 IV-3> 추정결과

		r = 7%	r = 10%	r = 5%
α_{β}	Constant	-2.0561215 (0.4888101)*	-2.1298117 (0.4968055)	-1.9897679 (0.4793341)
	소득	7.6514316 (1.3715194)	7.6934416 (1.4031508)	7.6162838 (1.3429442)
	연령	0.0976913 (0.0244257)	0.1017711 (0.0249434)	0.0939584 (0.0239235)
	연령 제곱	-0.0013991 (0.0003107)	-0.0014686 (0.0003185)	-0.0013351 (0.0003032)
	Fnum ¹⁾	-0.0052710 (0.0145898)	-0.0044196 (0.0150542)	-0.0060598 (0.0141671)
	Dcal ²⁾	-0.0028785 (0.0281610)	-0.0049441 (0.0289763)	-0.0009270 (0.0273710)
	Dhigh ³⁾	0.0141848 (0.0343930)	0.0157423 (0.0358115)	0.0130634 (0.0329907)
	dja ⁴⁾	0.0022871 (0.0535661)	0.0061007 (0.0545126)	-0.0009995 (0.0527667)
	djun ⁵⁾	-0.0148334 (0.0553484)	-0.0096112 (0.0560952)	-0.0196857 (0.0547358)
	dmar ⁶⁾	-0.1242598 (0.0723951)	-0.1164052 (0.0740756)	-0.1317355 (0.0708608)
	sex ⁷⁾	0.2105131 (0.0375568)	0.2115866 (0.0382663)	0.2096657 (0.0368713)
	σ	0.2339182 (0.0791957)	0.0045509 (0.1032436)	0.4008237 (0.0616607)
	σ_{ε}	0.9481766 (0.1015570)	0.9443901 (0.1010844)	0.9519701 (0.1020022)
N	1,029	1,029	1,029	
Log likelihood	-722.92530	-721.58687	-724.16915	

주 : 1) 가구원 수
 2) 대학교육에 대한 더미
 3)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더미
 4) 자가소유자에 대한 더미
 5) 전세자에 대한 더미
 6) 기혼자에 대한 더미
 7) 성에 대한 더미
 * 괄호속의 수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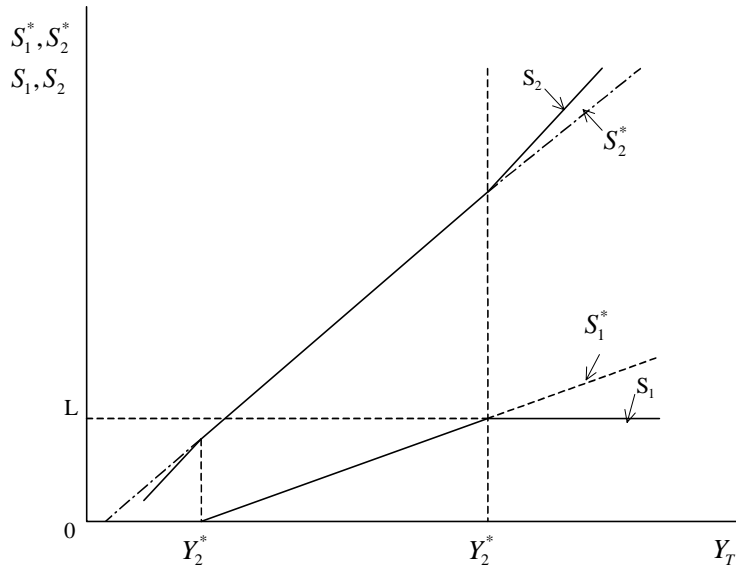
<표 IV-4> 시뮬레이션결과

(단위 : 천원)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	여타 저축액	총저축액
개인연금부재	0 (0)	485,907 (1.181) ²⁾	485,907 (0.948)
현행제도	101,164	411,285	512,449
소득공제 폐지 ¹⁾	62,369 (0.616)	449,607 (1.093)	511,976 (0.999)
개인연금급여과세 ¹⁾	59,411 (0.587)	453,037 (1.101)	512,448 (1.000)

주 : 1)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한계세율은 각 개인이 직면한 최고 한계세율임.
 2) 괄호 속의 비율은 현행 제도하에서의 금액대비 비율을 의미함.

[그림 IV-1] 개인연금 및 일반저축 수준



2. 일반균형모형분석

가. 머리말

본절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연금관련 조세정책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연금관련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연금과세체계개편, 개인연금 도입 그리고 퇴직금의 기업연금전환의 경제적 효과이다. 본절에서의 분석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들이며 이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모형을 분석의 취지에 맞게 확장·발전시킨 모형이다. 특히, 이 모형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저축(voluntary savings)의 구성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Venti and Wise(1990)에서와 같이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수단간의 대체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데서 방법론적인 발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⁸⁾.

본 연구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책으로 인하여 민간저축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조세지원책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자산간의 대체, 즉 일반저축수단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더욱 짙기 때문이다. 또한, 대폭적인 조세지원이 허용되는 개인연금으로 저축수단이 대체됨에 따라 세율이 감소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58) 본절에서 설정한 모형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자본시장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퇴직금을 연금제도로 전환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불형태의 변화, 즉 일시금에서 연금형태로 변환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명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성 제약을 명시적으로 감안한 모형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향후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한계세율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사실이 민간저축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대체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연금제도 하에서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금기금을 축적함으로써 경제 전반적으로 민간저축률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3) 또한,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허용과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그 내용으로 하는 연금과세의 실시는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과세가 조세부담을 청년기로부터 노년기로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연금과세는 조세부담이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부과되지 않고 은퇴후 노년기의 소비시점에서 부과됨으로써, 연금과세가 비교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의 왜곡효과가 적은 소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후생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부담이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노년층에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세부담이 경감되어 민간저축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이유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나항과 다항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모형과 이 모형의 캘리브레이션에 관하여 설명하며, 라항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한 다음 마지막으로 마항에서는 본절의 분석을 요약하고자 한다.

나.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은 Auerbach & Kotlikoff(1987)의 모형을 확장·발전시킨 것으로서 *I*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중복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이다. 이 모형이 가지는 Auerbach & Kotlikoff(1987)의 모형과의 차별성은 자발적 저축의 구성에 대한 경

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일반저축과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으로 구성된 민간의 자발적 저축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Auerbach and Kotlikoff(1987)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경제성장과 사망위험(mortality risk)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측면을 모형에 포함시킨 이유는 경제성장을 통한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가 공적연금급여의 절대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⁵⁹⁾ 사망위험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이다.

본 모형에서의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3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완전시장이라는 조건하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가계의 각 구성원은 최대한 I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i 세와 $i+1$ 세 사이에 생존할 확률은 S_i 로 나타내기로 한다. 유아기때(첫 번째 I_0 기간 동안) 이 개인은 소비자 혹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성년(연령이 I_0+1 에 도달한 시기)이 되면 이들은 시간배분(노동공급)과 저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개인이 내리는 저축에 대한 결정은 저축의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저축의 구성 즉, 총저축액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과 여타 일반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결정도 포함된다. 가계의 각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세후) 노동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각종 연금(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금(혹은 기업연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소비, 투자 및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기업은 규모불변의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을 소비재 혹은 생산재로 변환시킨다. 노동과 자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완전경쟁 요소시장 균형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기업은 임금과 퇴직금(혹은 확정각출형 기

59)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의 식 (부-4) 참조.

업연금)의 형태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정부는 정부지출(공공재 공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며 국민연금재정을 책임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는 일반재정과 국민연금재정을 포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가계

가) 선호체계와 예산제약

각 개인의 선호는 시간분리적이고 두 번 미분가능하며, 강오목한 (time separable,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strictly concave) 여가, 소비, 그리고 총저축액에서 차지하는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 비중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t 연도에 태어난 각 개인의 평생동안의 기대 효용은 $E_t \sum_i \beta^i S^i U(C_{it+i-1}, l_{it+i-1}, \alpha_{it+i-1}, i)$ 로 나타낸다.

이때 β 는 할인율을, C_{it+i-1}, l_{it+i-1} 와 α_{it+i-1} 는 t 기에 태어난 자의 연령이 i 세가가 되는 시기의 소비, 여가 및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의 비중을 나타내며, $S^i (= \prod_{j=1}^i S_j)$ 는 i살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효용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U(C, l, \alpha_i, i) = \frac{1}{1-1/\gamma} (\bar{X}_i^{1-\eta} A_i^\eta)^{1-1/\gamma} \quad (15)$$

$$\bar{X}_i = (C^{1-1/\rho} + \theta_i l^{1-1/\rho})^{\frac{1}{1-1/\rho}} \quad (15-1)$$

$$A_i = (\alpha_{0i}^{1-\sigma} \alpha_i^\sigma + (1-\alpha_{0i})^{1-\sigma} (1-\alpha_i)^\sigma)^{\frac{1}{\sigma}} \quad (15-2)$$

효용함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식 (15-1))은 통상적인 소비와 여가의 CES 함수이며 두 번째 부분(식 (15-2))은 자산구성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 만일 i 세에 불입한 개인연금보험료의 내부수익률이 일반저축의 수익률과 동일할 경우 개인연금불입액이 전체 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α_{0i} 인 반면, 만일 개인연금의 내부수익률과 일반저축의 수익률이 상이할 경우 개인연금보험료의 비중은 α_{0i} 과 상이한 값을 지니게 된다. 수익률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산간의 대체정도는 자산간 대체탄력성($\frac{1}{1-\sigma}$)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t 연도에 태어난 자가 연령 i 에 도달하였을 때 직면하는 예산제약조건은 식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 (1 + \tau_{ct+i-1})C_{it+i-1} + i_{it+i-1} + SB_{it+i-1}(1 - d \cdot \tau_{yt+i-1}) = \\
& a_{it+i-1}r_{t+i-1}(1 - \tau_{kt+i-1} - \tau_{yt+i-1}) + \\
& (1 - l_{it+i-1})e_{it+i-1}w_{t+i-1}(1 - \tau_{lt+i-1} - \tau_{yt+i-1} - 0.5SST_{t+i-1}) \\
& + pb_{it+i-1}(1 - \tau_{pbt+i-1}) + M_{it+i-1}(1 - \tau_{pmt+i-1}) + \\
& Sev_{it+i-1}(1 - \tau_{svt+i-1}) + Cop_{it+i-1}(1 - \tau_{cpt+i-1})
\end{aligned} \tag{16}$$

여기서 i_{it+i-1} , SB_{it+i-1} , a_{it+i-1} , C_{it+i-1} , l_{it+i-1} , pb_{it+i-1} , M_{it+i-1} , Sev_{it+i-1} , Cop_{it+i-1} 그리고 e_{it+i-1} 은 t 기에 태어난 자가 연령이 i 에 도달할 경우의 투자,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 개인연금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의 규모, 소비, 여가, 국민연금급여액, 개인연금급여액, 퇴직금, 기업연금급여액,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 또한 τ_{ct+i-1} , τ_{lt+i-1} , τ_{yt+i-1} , τ_{kt+i-1} , $\tau_{pbt+i-1}$, $\tau_{pmt+i-1}$, $\tau_{svt+i-1}$, $\tau_{cpt+i-1}$, 그리고 SST_{t+i-1} 는 소비세율, 노동소득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공적연금급여에 대한 세율, 개인연금급여에

대한 세율, 퇴직소득세율, 기업연금급여에 대한 세율 그리고 연금보험료율을 나타낸다⁶⁰⁾. 그리고, w_{t+i-1} 과 r_{t+i-1} 은 임금률과 이자율을 나타낸다.

식 (1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개인은 (세후) 노동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각종 연금 및 퇴직금 등의 재원으로 소비, 투자 및 개인연금 보험료 불입에 충당한다⁶¹⁾. 특기할만한 사항은 식 (16)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동일하게 부담하고(식 (36)도 아울러 참조), 개인연금보험료의 일부(d)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명시적으로 감안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경제에는 사망자 재산분할시장(annuity market)이 존재하며, 이 시장에서 사람들은 동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된다. 만일 한 세대 내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들이 사망한 자의 재산 또는 부채를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여기서 정의되는 재산 혹은 부채는 일반저축의 형태로 축적된 자산(a_{i+i-1})뿐만 아니라 기업연금의 형태로 축적된 자산($wcop_{i+i-1}$), 개인연금자산(wpp_{i+i-1})의 형태로 축적된 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⁶²⁾. 여기서 정의된 사망자 재산분할시장의 역할은 각 개인

60) 소득세와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를 동시에 고려한 이유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귀속의 정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 혹은 노동에 대한 귀속의 정도가 불확실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득세로 정의하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시에 과세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조세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III절 4항 정부부문에 대한 설명 참조).

61) 국민연금, 기업연금, 퇴직금 그리고 기업연금의 급여수준, 급여개시 연령 그리고 보험료 불입에 대한 규정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62) 기업연금자산은 고용주가 은퇴후 일정수준의 기업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는 기여금에서 지급된 기업연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의 원리금을 의미하며, 개인연금자산은 각 경제주체 자신이 적립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에서 지급된 개인연금

의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상속(accidental bequest)을 방지하는 것이다.

$$wcp_{it+i-1} = \sum_{s=I_0+1}^{i-1} \{ tcor_{st+s-1} w_{t+s-1} e_{st+s-1} (1-l_{st+i-1}) - Cop_{st+s-1} \} \times \left[\prod_{k=s+1}^i (1+r_{t+k-1}) \right] \quad (17)$$

$$wpp_{it+i-1} = \sum_{s=I_0+1}^{i-1} \{ SB_{st+s-1} - M_{st+s-1} \} \left[\prod_{k=s+1}^i (1+r_{t+k-1}) \right] \quad (18)$$

$$i_{it+i-1} = S_i a_{i+1t+i} - (1-\delta) a_{it+i-1} \quad (\delta: \text{감가상각률}) \quad (19)$$

$$a_{I_0+1t+I_0} = 0 \quad (20)$$

$$a_{I+1t+I} = 0 \quad (21)$$

여기서, $tcor_{it+i-1}$ 는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하에서 t 연도에 태어난 근로자에게 기업이 일정연령(R)이후 일정수준의 기업연금급여(Cop_{it+i-1})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적립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수준을 근로자 임금수준의 비율로 표현한 것이며(식 (22) 참조), SB_{it+i-1} 는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sum_{i=I_0+1}^{R-1} tcor_{it+i-1} w_{t+i-1} e_{it+i-1} (1-l_{it+i-1}) \left[\prod_{s=t+1}^R (1+r_{t+s-1}) \right] \\ = \sum_{i=R}^I Cop_{it+i-1} \left[\prod_{s=R}^i \frac{1+r_{t+R-1}}{1+r_{t+s-1}} \right] \end{aligned} \quad (22)$$

식 (19)는 사망자 재산분할시장(Annuity Market)의 존재가 사람들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원리금에 해당된다(식 (17), (18) 참조).

로 하여금 일정량의 자본(a_{i+1t+i})을 다음 기에 소유하기 위해, 만일 사망자 재산분할시장이 없을 때 보다 적은 양의 투자(i_{it+i-1})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식 (20)은 각 개인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함을 의미하며 식 (21)은 사망시에 부채를 남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가계 구성원의 선호와 예산제약을 바탕으로 이들의 소비와 여가의 연령별 추이를 도출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식은 식 (23)~(26)로 요약될 수 있다.

$$(1 + \tau_{ct+i-1}) C_{it+i-1} = [(1 + r_{t+i-1}(1 - \tau_{kt+i-1} - \tau_{yt+i-1}))\beta]^\gamma [v_{it+i-1}/v_{i-1t+i-2}] (23)$$

$$(1 + \tau_{ct+i-2}) C_{i-1t+i-2}$$

$$l_{it+i-1} = [(1 + r_{t+i-1}(1 - \tau_{kt+i-1} - \tau_{yt+i-1}))\beta]^\gamma [v_{it+i-1}/v_{i-1t+i-2}]^{-\rho} \times (w_{it+i-1}^*/w_{i-1t+i-2}^*)^{-\rho} l_{i-1t+i-2} (24)$$

$$v_{it+i-1} = [1 + \theta_i^\rho (w_{it+i-1}^*/\tau_{ct+i-1})^{(1-\rho)}]^{(\rho-\gamma)(1-\rho)} (25)$$

$$w_{it+i-1}^* = w_{it+i-1} e_{it+i-1} (1 - \tau_{yt+i-1} - \tau_{lt+i-1} - 0.5 SST_{t+i-1}) + \lambda_{it+i-1} (26)$$

나) 개인연금불입액에 대한 의사결정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개인연금은 확정각출형(defined-contribution) 연금제도로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과 연금급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각 개인은 55세 이전까지 개인연금보험료를 불

입하며 이 연령으로부터 개인연금급여를 지급받는다(R=55)⁶³⁾.

$$\begin{aligned} & \sum_{i=t_0+1}^{R-1} SB_{it+i-1} \left[\prod_{s=i+1}^R (1+r_{t+s-1}) \right] \\ &= \sum_{j=R}^I M_{jt+j-1} \left[\prod_{s=R}^j \frac{1+r_{t+R-1}}{1+r_{t+s-1}} \right] \end{aligned} \quad (27)$$

개인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수준은 이 가입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 수준과 개인연금에 허용되는 조세지원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연금가입자의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급 개시연령(R)부터 사망시까지 동일한 수준의 개인연금급여를 수급한다는 추가적인 가정($M_{it+i-1} = M_j$)을 한다면, t 연도에 태어난 가입자가 평생동안 지급 받을 개인연금급여의 현재가치(WM_t)는 식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율로 일반저축의 세후수익률이 이용되었는데, 이는 그 할인율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연금의 내부수익률을 일반저축의 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WM_t = M_t \sum_{j=R}^I \left(\prod_{s=2}^j \frac{1}{1+r_{t+s-1}(1-\tau_{kt+s-1}-\tau_{yt+s-1})} \right) (28)$$

$$(1-\tau_{pt+j-1})$$

식 (27)과 (28)를 이용하여 연령 i 에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 늘렸을 때 (보험료 불입시 평가한) 개인연금급여의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식 (2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3) 현행 제도하에서는 55세가 되기 이전에 개인연금을 해약할 경우 불입기간동안 누려온 세제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각 개인은 54세까지 개인연금보험료를 불입하고 55세부터 개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begin{aligned}
 & \frac{dWM_t}{dSB_{it+i-1}} \prod_{s=2}^i (1+r_{t+s-1}(1-\tau_{kt+s-1}-\tau_{yt+s-1})) \\
 &= \frac{dWM_t}{dM_t} \cdot \frac{dM_t}{dSB_{it+i-1}} \prod_{s=2}^i (1+r_{t+s-1}(1-\tau_{kt+s-1}-\tau_{yt+s-1})) \\
 &= \left[\sum_{j=R}^i \left(\prod_{s=j+1}^i \frac{1}{1+r_{t+s-1}(1-\tau_{kt+s-1}-\tau_{yt+s-1})} \right) (1-\tau_{pt+j-1}) \right] \\
 & \quad \cdot \frac{\prod_{s=j+1}^R (1+r_{t+s-1})}{\sum_{j=R}^i \left[\prod_{s=R}^j \frac{1+r_{t+R-1}}{1+r_{t+s-1}} \right]}
 \end{aligned} \tag{29}$$

또한 여기에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일부(d)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감안하면, 일반저축의 수익률과 비교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총수익률 수준($\frac{1}{rp_{it+i-1}}$)은 식 (30)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령 i 에 일반저축대신 개인연금불입액 한 단위를 증가시키는 기회비용(rp_{it+i-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frac{1}{rp_{it+i-1}} &= \frac{dWM_t}{dSB_{it+i-1}} \prod_{s=2}^i (1+r_{t+s-1}(1-\tau_{kt+s-1}-\tau_{yt+s-1})) \frac{1}{1-d \cdot \tau_{yt+i-1}} \\
 &= \left[\sum_{j=R}^i \left(\prod_{s=j+1}^i \frac{1}{1+r_{t+s-1}(1-\tau_{kt+s-1}-\tau_{yt+s-1})} \right) (1-\tau_{pt+j-1}) \right] \\
 & \quad \cdot \frac{\prod_{s=j+1}^R (1+r_{t+s-1})}{\sum_{j=R}^i \left[\prod_{s=R}^j \frac{1+r_{t+R-1}}{1+r_{t+s-1}} \right]} \cdot \frac{1}{1-d \cdot \tau_{yt+i-1}}
 \end{aligned} \tag{30}$$

식 (30)은 개인연금에 허용된 세 가지 조세지원책을 나타내고 있다. ① 개인연금급여에 대한 세율이 일반저축의 이자에 대한 세율보다 낮다. ② 개인연금기금 운용수익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③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의 일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식 (15-2)에서 규정한 자산구성에 대한 선호하에서는 개인연금불입과 일반저축간의 한계대체율은 $\left(\frac{\alpha_{it+i-1}}{1-\alpha_{it+i-1}}\right)^{\sigma-1} \left(\frac{\alpha_{0i}}{1-\alpha_{0i}}\right)^{1-\sigma}$ 로 표현되며 따라서, 총저축액에서 차지하는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의 비중은 식 (31)과 같이 결정된다.

$$\alpha_{it+i-1} = \frac{\left(\frac{\alpha_{0i}}{1-\alpha_{0i}}\right) r p_{it+i-1}^{\frac{1}{\sigma-1}}}{1 + \left(\frac{\alpha_{0i}}{1-\alpha_{0i}}\right) r p_{it+i-1}^{\frac{1}{\sigma-1}}} \quad (31)$$

다) 퇴직금 및 기업연금에 대한 규정

퇴직금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은 고용주로서 근로자의 퇴직시 근속년수 1년당 최소한 1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⁶⁴⁾.

$$Sev_{Rt+R-1} = (1 - l_{Rt+R-1}) e_{Rt+R-1} w_{t+R-1} \times R/12 \quad (32)$$

현재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기업연금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가 퇴직금제도를(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로 대체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므로, 분석의 편

64)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5세에 정년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이 55세에 정년 퇴직하여 퇴직금 혹은 기업연금급여를 지급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55세 이후의 각 개인의 노동공급에 대해서는 정년 퇴직 후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의를 위하여 평생동안 지급 받을 기업연금급여의 현재가치가 퇴직금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상황을 상정하여 분석을 행하였다. 따라서, 기업연금급여 수준은 식 (33)과 같이 규정된다.

$$\begin{aligned}
 Sev_{Rt+R-1} &= \sum_{i=R}^I Cop_{it+i-1} \left[\prod_{s=R}^i \frac{1+r_{t+R-1}}{1+r_{t+s-1}} \right] \\
 &= Cop_t \sum_{i=R}^I \left[\prod_{s=R}^i \frac{1+r_{t+R-1}}{1+r_{t+s-1}} \right] \\
 & \quad (Cop_{it+i-1} = Cop_t \quad \forall i \geq R)
 \end{aligned}
 \tag{33}$$

2) 기업

경제에 존재하는 기업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 표현되는 규모불변의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노동(N_t)과 자본($K_t \equiv \sum_i (a_{it} + wcop_{it} + wpp_{it}) \mu_{it}$)을 소비재와 생산재로 변환한다. 경제성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인 노동첨가형(labor-augmenting) 생산성 증가를 상정하였다. 퇴직금과 기업연금급여의 재원은 이러한 기업들에 의해 조달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균형조건에 의하여 아래 식 (34)와 같이, 고용주가 퇴직금과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여금을 제외한 순 임금의 감소를 통하여 퇴직금과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금의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시장조건과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각각 임금, 국민연금기여금, 기업연금기여금 및 퇴직금 지급비용을 포함한 노동고용의 한계비용과 이자율과 일치시킨다.

$$F_{L_t}(L_t, K_t, t) = w_t(1 + SSTi_t + tcori_t + tsevi_t) \tag{34}$$

$$F_{kt}(L_t, K_t, t) = r_t \quad (35)$$

$$SSTi_t = \frac{\sum_{i=\bar{I}_0+1}^{\bar{I}} 0.5 SST_t \mu_{it} w_t e_{it} (1 - l_{it})}{\sum_{i=\bar{I}_0+1}^{\bar{I}} \mu_{it} w_t e_{it} (1 - l_{it})} \quad (36)$$

$$tcori_t = \frac{\sum_{i=\bar{I}_0+1}^R tcor_{it} \mu_{it} w_t e_{it} (1 - l_{it})}{\sum_{i=\bar{I}_0+1}^{\bar{I}} \mu_{it} w_t e_{it} (1 - l_{it})} \quad (37)$$

$$tsevi_t = \frac{Sev_{Rt}}{\sum_{i=\bar{I}_0+1}^{\bar{I}} \mu_{it} w_t e_{it} (1 - l_{it})} \quad (38)$$

여기서 μ_{it} 는 t 기에 연령이 i 인 사람의 수를 지칭하며 \bar{I} 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최고 연령을 지칭한다.

식 (34)의 우변은 순임금, 퇴직금 그리고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분을 포함한 노동고용의 한계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SSTi_t$, $tcori_t$, 그리고 $tsevi_t$ 는 각 연도의 총임금 대비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과 퇴직금지급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3) 정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이라는 노후소득보장책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공공재 공급수준은 소비자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대신 정부지출은 위에서 가정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조세의 종류에는 소비세(consumption tax), 자본소득세(capital income tax), 노동소득세(labor income tax) 및 소득세(income tax)로 구성된다.

공적연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모형에 통합되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정 연령(\bar{I}) 이하의 연금가입자의 노동소득에 대하여 일정률(SST_{t+i-1})의 연금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며, 연금수급개시연령(\bar{I})부터 국민연금급여가 지급된다⁶⁵⁾. 본 연구에서 고려된 연금급여의 종류는 완전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재직자 노령연금이다⁶⁶⁾.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1999년 4월)에는 적용대상이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로 까지 확대되어, 이 제도가 전국민을 포괄하게 되었다.

정부는 일반재정과 연금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가정한다. 즉, 일반재정과 연금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⁶⁷⁾적자 발생시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 정부채권을 발급하여 적자분을 충당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5) 현행제도하에서는 59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불입하고 60세부터 연금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66) 완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불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연금수급연령 60세에 도달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때 지급되는 연금급여이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일종의 소득추계제도로서,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이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시 그 유족에게 연금지급액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국민연금급여산식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67) 본 연구에서 정의한 통합재정은 통상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통합재정에는 각종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만 포함된다. 그러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중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통합재정의 범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일반적인 통합재정과 달리 정부의 일반재정의 범위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D_{t+1} = D_t(1+r_t) + PB_t - PC_t + G_t - T_t \quad (39)$$

이때 D_t , PC_t , T_t , G_t 그리고 PB_t 는 t 기의 정부부채, 연금보험료 수입총액, 조세수입, 정부지출 그리고 연금급여지급 총액을 의미한다.

$$PC_t = \sum_{i=T_0+1}^{\bar{T}} SST_t w_t e_{it} (1 - l_{it}) \quad (40)$$

$$T_t = (\tau_{ht} + \tau_{yt}) r_k K_t + (\tau_{lt} + \tau_{yt}) w_t N_t + \tau_{ct} C_t \quad (41)$$

$$(K_t = \sum_i \mu_{it} a_{it}, \quad N_t = \sum_i \mu_{it} e_{it} (1 - l_{it}), \quad C_t = \sum_i \mu_{it} C_{it})$$

다. 모형 캘리브레이션

1) 인구 파라미터와 세대별 노동생산성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경제에 존재하는 각 개인은 최대한 80세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각 세대는 1년 단위로 나뉘어진다. 또한 모형에서 각 개인이 21세가 되기까지는 소비자 혹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함에 따라, 해당 세대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될 인구의 연령별·연도별 변화에 대한 예측은 통계청(1991, 1993, 1994a, 1994b, 1996)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물레이션을 시작하는 시점을 1985년으로 잡고 신생아 수의 경우는 통계청이 행한 신생아에 대한 2030년까지의 추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간한 생명표(1985~2030)를 바탕으로 사망률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령별·연도별 인구수를 계산하였다. 2030년 이후의 경우는 2030년 수준의 신생아 출산 수가 그대로 유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

각 연령별 노동생산성은 노동부가 발행한 “1991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Welch(1979)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치는 $\ln(e_i) = 8.532 + 0.0222(i-20) - 0.00031(i-20)^2$ 이다.

2) 생산함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생산기술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 표현되며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계정에 나타난 노동분배율이 최근 GNP의 약 60%임을 감안하고 또한 고정자본 소모분이 약 GNP의 10%임을 고려하여 NNP의 약 33%로 가정하였다⁶⁸⁾. 중요소생산성 향상률은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는 조한상(1991), Pilat(1995), Young(1995), 박승영(1997) 그리고 윤창호·이종화(1998) 등이 있다. 이들의 중요소생산성 향상률에 대한 추정치는 대부분 2~4%의 범위에 속한다.

3) 선호 파라미터

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반영하는 β 는 Hurd(1989)에서 따와서 1.011로 가정하였다. 이 경제에는 죽음에 직면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 개인이 느끼는 실제적인 할인율은 i 번째 세대일 경우 β^i 이다. 따라서 이 경우 청년기에는 이 할인율이 매우 낮고 (경우에 따라 β^i 1보다 큰 경우도 있음) 노년기에는 매우 높은 경향이 있으며,

68) 한국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신뢰도 높은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을 NNP를 기준으로 상정하였다. 각종 정책의 GNP에 대한 효과분석은 국민계정에 나타나 있는 고정자본소모분의 규모와 GNP간의 비율을 참조하여 행하였다.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위험회피계수의 역수(γ)와 기간내 소비와 여가간 대체탄력성(ρ)의 값은 Auerbach & Kotlikoff (1987)를 따라 각각 0.25와 0.83을 선택하였다. 기본가정하에서 소비에 대한 여가의 강도를 나타내는 θ_i 의 값은 연령이 21세인 경우 1.75를 선택하였으며 기타 연령에 대해서는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와 일관성있게 값을 조정하였다.

이 값들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의 경제에서 나타난 자본과 국내총생산의 비율이 약 4.89, 이용 가능한 시간에서 노동공급에 투입한 시간의 비율이 약 34.8%, 그리고 민간저축률은 약 35.8%로 나타났다.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과 일반저축간의 대체탄력성($\frac{1}{1-\sigma}$)은 1절에서 얻은 대체탄력성에 대한 추정결과에 따라 1.30으로 가정하였다. α_{0i} 는 모든 연령에 걸쳐 0.03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1절에서 사용한 3년차 대우패널자료의 해당연도인 1995년에 총금융저축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라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 값과 1절의 모형을 이용하여 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개인연금에 조세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금융저축 중에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구성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나타내는 모수(η)는 0에 가까운 임의의 수로 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모수의 값은 자산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모수를 매우 작은 값으로 가정할 경우 후생수준의 평가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4) 재정정책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부는 일반재정과 연금재정을 포함한 통합

재정의 운영을 담당한다. 정부는 일반재정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일반재정의 지출수준(G_t)은 조세수입과 일치하게 된다. 국민조세부담률은 1985년 17.1%에서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1996년에는 21%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률이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5%에 이르고 그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조세는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① 세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조세 ② 세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조세 ① 부류에 속하는 유일한 예는 퇴직소득세인데 그 세율은 2%로 가정하였다⁶⁹⁾.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조세징수의 세원별 배분은 1996년 국세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세, 소비세,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수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정하였다⁷⁰⁾. 소득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소득세에는 상속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구한 각 세목이 전체 세수(-퇴직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세가 53.2%, 소득세가 43.1%, 자본소득세가 3.7%이다. 이렇게 주어진 각 세목별 비중을 가지고 매기마다 필요정부수입에 따라 각 세목별 세율을 정부가 매기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⁷¹⁾.

69) 퇴직소득에 대한 유효세율(2%)에 대한 가정은 1995년과 1996년 기간동안의 평균유효세율에 근거하였다. 유효세율을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므로 퇴직급여에 대한 유효세율의 내생적 결정은 분석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70) 조세의 각 세원별 비중의 기준을 최근 연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 1996년도 국세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은 1997년말 이후 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세법개정과 1999년 들어 급격한 경기회복으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세수입의 세원별 비중이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정상적인 상태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199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1) 각 세목에 대한 세율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정부는 각 세목별 세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세목에 할당된 필요조세수입(required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999년 4월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 이전의 국민연금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가 채택되었다. 개정 이전과 이후, 즉 1999년 이전과 이후 각각의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급여는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개정 이전과 이후 가입기간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정의하였다⁷²⁾. 연금보험료는 개정법 이전과 이후의 제도에 따라 1993년까지 노동소득의 3%, 1994년부터 1997년까지 6%, 1997년부터 2009년까지 9%,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20%,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3.40%,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5.60% 그리고 2025년부터 17.80%로 가정하였다⁷³⁾. 연금급여수급개시연령은 2012년까지 60세로 하고 그 이후는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에 이르러 65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5) 시뮬레이션 계획

본 연구에서는 연금과세와 관련된 네 종류의 경제를 상정하였다. 먼저,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을 포함한 민간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경제를 상정하였다. 이 경제에서는 일반저축이 유일한 민간저축수단이며, 근로자는 퇴직시 고용주로부터 일정액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개인연금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본다. 개인연금은

tax revenue)을 징수하기 위한 각 세목별 세율을 결정한다. 이때 물론 정부의 이러한 세율에 대한 결정이 초래하는 일반균형효과도 아울러 감안하여 정부가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한다고 가정한다.

72) 개정 이전의 국민연금급여산식은 $0.2 \times (A + 0.75 \times B) \times 0.05 \times n$ 이며, 개정 국민연금법상의 산식은 $0.3 \times (A + B) \times n / 40$ 이다. (A : 수급자의 퇴직당시의 전가입자 평균소득, B : 수급자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n : 수급자의 가입기간)

73) 이 연구에서 가정한 2010년 이후의 연금보험료율은 국민연금제정안 정화를 위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보험료율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계치에 근거하였다.

1994년에 도입되고 이에는 식 (30)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연금에 대하여 3가지 조세지원이 이루어진다. 현행의 조세특례규제법에 따라, 개인연금보험료 불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개인연금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개인연금기금의 증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세 번째 경제에서는 퇴직금제도의 폐지와 이를 대신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본다.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시기는 2000년도로 가정하였다. 기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업연금이 도입된 200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기업연금이 퇴직자에게 지급된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책에 대한 소득세제 개편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기업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유효세율은 여타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6) 균형계산과정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경제의 균형에서 자원배분 도출을 위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각종 변수의 초기치 선정 : 거시경제변수 (K, N), 각종 연금 및 퇴직금의 수준 결정(pb, cop, sev), 기업의 각종연금 및 퇴직금 기여 부담률($ssti, tsevi, tcori$), 각종 세율($\tau_l, \tau_k, \tau_c, \tau_y, \tau_{pb}, \tau_{cop}, \tau_{pb}$)

※ 국민연금보험료율, 인구분포, 퇴직급여에 대한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외생적으로 결정됨(SST, μ, τ_{sev}).

- (2) 생산함수와 기업의 최적화 행위, 정부재정지출계획에 입각하여

- 임금률, 이자율, 그리고 재정지출수준을 결정함(w, r, G). (식 (34)~(40), III절 4항 재정정책 참조)
- (3) 가계의 생애주기적 최적화 행위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소비, 여가, 그리고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을 결정함(c, l, SB). (식 (16), (23)~(31) 참조)
- (4) 국민연금, 기업연금, 퇴직금 급여산식과 재원조달 방식을 바탕으로 각종 연금급여수준 및 퇴직금급여수준과 기업연금의 고용주 기여율을 결정함($pb, cop, sev, tcor, tcori, ssti, tsevi$). (식 (22), (32), (33), (36)~(28), <부록 1> 참조)
- (5) 통합재정 운영방식에 입각하여 각종 세율 결정 (식 (39) ~ (41), 다절 (4)항 재정정책 참조)
- (6) 각종 자산분포와 총량변수 계산($wpp, wcop, K, N$) (식 (39), (40), (41))
- (7) 초기치와의 비교 : 식 (16)~(20) 과정을 거치면서 산출된 거시경제변수 (K, N), 각종 연금 및 퇴직금의 수준 결정(pb, cop, sev), 기업의 각종연금 및 퇴직금 기여 부담률($sssti, tsevi, tcori$), 각종 세율 ($\tau_l, \tau_k, \tau_c, \tau_y, \tau_{pb}, \tau_{cop}, \tau_{pb}$)을 초기치와 비교함. 만일 초기치에 충분히 근접하지 않으면 새로이 산출된 변수값을 초기치로 규정하고 식 (16) 단계로 돌아가 계산을 반복함.

라.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산은 Auerbach & Kotlikoff(1987)에서 사용한 방법인 Gauss-Seidel방법을 사용하였다⁷⁴. 각 연도에 태어난 세대들의 후생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

7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 참조.

어졌다. 각 세대의 후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초기 정상상태에서 평생을 산 세대가 평생동안 누린 복리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5년의 상태를 초기의 정상상태로 정의하고 이 연도에 태어난 세대를 세대 1로 정의한다⁷⁵⁾. 다음으로, 이 초기의 정상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세대 -59) 그들의 생애를 통해 누려온 복리수준을 부(wealth equivalent)로 환산하고⁷⁶⁾, 각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이 평생 동안 누려온 복리수준 또한 부로 평가한 다음, 이를 전자와 비교하였다. 이 절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 결과의 해석시 유의할 점은, 아래 그림들에 나타나 있는 자본축적량, GNP 수준, 그리고 후생수준들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연 3%)에 의한 각 경제지표들의 규모변화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축적량 등의 규모는 경제성장에 의한 증가치를 차감하여 나타나 있어 실제 연도별 경제규모와 세대별 후생수준의 해석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첫 번째 경제(개인연금부재, 기업연금부재, 연금소득과세 미실시)에서는 생산요소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동⁷⁷⁾과 조세부담률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구구조변동의 효과를 분석한 Chun(1997)에서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저축률이 하락하여 2040년에 최저수준에 도달하고, 자본수준과 노동공급은 각각 2030년과 2020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Chun(1997)에서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순수 민간경제를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

75)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1965년에 태어나 1985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세대를 말한다.

76) 초기 정상상태에서 평생을 산 세대는 위에서 정의한 세대의 개념에 의하면 세대 -59이다.

77) 인구구조의 변동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의 베이비붐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에 출산가능연령에 도달한 여성 1인당 4.5명의 자녀를 출산한 반면 1990년대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여성이 1.6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형적인 라이프 사이클 모형하에서 순수 민간경제를 상징할 경우 저축률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노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청년층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행한 장래인구구조에 대한 추계에 따르면 2040년경에 인구부양비(노년층인구/청년층인구)가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상징할 경우 저축률이 2040년경에 최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저축률의 변동과 인구구조 및 총인구수의 변화로 인하여 총자본스톡량과 총노동공급은 각각 2030년과 2020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상징한 첫 번째 경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Chun(1997)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수준과 요소공급량이 대체적으로 낮으며 자본공급량과 노동공급량의 최고점 도달시점이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률의 상승 추세를 명시적으로 감안하였으며,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개정에 따른 요소공급량의 감소와 후생수준의 하락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세율이 상승하게 되어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국민연금제도라는 노후소득보장책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의 라이프 사이클 동기에 의한 자발적인 저축이 줄어들고 또한 노동소득세적인 성격이 강한 연금보험료의 부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세부담률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또한 연금보험료율도 향후 증가할 전망이므로 자본축적량과 노동공급량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국민연금도입에 따른 세대간 자원재분배로 인해 세대별 후생수준의 변화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세대 -15(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된 첫 번째 세대)의 후생수준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연금에 가입한 세대들의 경우

연금보험료에 비하여 연금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 수준과 연금급여 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금재정의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V-2] 참조).

개인연금의 도입에 따른 요소공급과 후생수준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개인연금의 도입에 따라 미래의 자본공급량이 개인연금이 없는 상황(첫 번째 경제)과 비교하여 다소 낮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연금의 도입에 따라 국민저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에 따른 자산간의 대체, 부의 효과(wealth effect) 그리고 한계세율의 인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과 일반저축의 대체탄력성을 1절의 분석에 근거하여 다소 높은 수치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부여된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일반저축에서 개인연금으로의 저축수단 대체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에 의해 경제주체의 평생자산(lifetime wealth)이 증가하여 이들의 저축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식 (27)~(30)로 설명될 수 있다. 여타 자산의 수익률이 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차감한 이자율인 반면 개인연금자산은 세전이자율이고 또한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되므로, 저축을 위하여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개인연금형태로 저축하는 경우가 일반저축에 비하여 수익률이 높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연금이라는 저축수단이 존재하여 일정금액을 개인연금형태로 저축할 경우 개인연금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평생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로로 발생한 부의 증대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개인연금자산의 증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여야 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재정정책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일반재정의 지

출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일반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재정지출에 상응하는 조세수입을 확보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조세지원(비과세) 대상 자산인 개인연금자산의 증가에 따른 과세표준의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허용, 개인연금급여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소득세 및 자본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인상이 자본공급량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효용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⁸⁾. [그림 4-13]과 [그림 4-14]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연금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유효한계세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연금의 도입은 자본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제도하에서는 기업이 퇴직급여 총당금을 독립된 금융기관에 적립하지 않고 운전자금으로 전용하거나, 만일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은 반면, 기업연금제도하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된다면 독립된 금융기관에 기업연금기금이 적립됨에 따라 국민저축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V-8]과 [그림 IV-1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연금에 대한 퇴직금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두 번째 경제와 비교하여) 자본스톡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78) 개인연금보험료 불입액과 일반저축간의 대체탄력성(σ)과 개인연금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나타내는 계수(ai_0)의 값을 변화시키더라도 정부의 재정운용방식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개인연금도입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한다는 분석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운용방식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상정하지 않고 세율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조세수입을 모든 납세자에게 나누어주는 상황을 상정할 경우 σ 와 ai_0 의 값에 따라 개인연금의 도입이 저축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민감도 분석의 결과는 요청시 제공할 수 있음).

다. 그러나 세대간 후생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세대의 후생은 상승하고 있는(0.2~0.4%) 반면,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몇몇 세대의 후생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후생의 변화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고용자 기여분과 퇴직금조달비용을 제외한) 순임금률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IV-6]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연금 도입의 첫 해인 2000년에 순임금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그림 IV-11]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주는 기업연금도입 첫 해인 2000년부터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업연금급여를 위한 자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존의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고용의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기업주는 순임금률을 하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기업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에서보다 순임금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 도입 이후 낮은 순임금률이 지속되는 과도기에 노동시장에 존재할 세대들의 후생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후생 감소의 또 다른 이유로 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상승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연금기금의 증식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감소될 조세수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라 일부세대를 제외하고는 후생의 증가가 예측된다⁷⁹⁾.

79)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대체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자본축적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급형태가 일시금에서 연금형태로 변경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지급형태가 일시금에서 연금형태로 변경될 경우 개인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와 이자율의 관계에 따라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으로 완전한(perfect) 자본시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시간선호와 이자율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후생수준의 변화는 감안할 수 없었다. 만일 자본시장이 완전하지 못하여 유동성제약에 걸릴 가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과세의 실시는 조세부담의 이연효과(tax deferral effect)를 가져온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허용과 각종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는 조세부담생애의 초기단계(청년기)로부터 후기단계(노년기)로 이연시킨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변화는 세원을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재분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세 세원의 규모가 청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비세의 경우는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가 소득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과세수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금과세의 실시에 따라 후생의 향상이 예측된다. 그러나 [그림 IV-3]과 [그림 IV-4]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과세의 실시에 따라 미래세대의 후생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일부세대의 후생은 감소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경우는 소비세적인 성격을 띤 연금과세의 실시에 따라 자본축적량과 노동공급량이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이들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일부 세대의 후생의 감소는 소비세율과 소득세율의 상승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금과세 도입 직후 나타나는 현상은 소득세율의 감소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보험료와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연금급여수준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에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되지만 그 규모가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액 수준에 필적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연금제도도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여 기업연금급여가 일정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에서의 세원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림 IV-12]과 [그림 IV-13]

성이 있다면 본 연구에서 행한 분석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과세실시 이후 일정기간동안 소비세와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연금과세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제(세 번째 경제)와 비교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금급여의 수준이 상승하여 소득세율이 증가하고 한계세율이 하락함을 볼 수 있다.

마.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업연금, 퇴직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책들에 대한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인연금의 도입은 민간저축의 감소와 세율의 인상을 초래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다소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연금의 도입은 이 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의 과도기에 생존하는 일부 세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들의 후생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금과세의 실시는 조세이연 효과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규모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급여의 규모를 상회하여 각종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과세실시 초기단계의 일정기간동안 일부 세대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개인연금과 일반저축간의 대체탄력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절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대체탄력성 추정치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엄밀한 대체탄력성의 추정을 통하여 1절의 분석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⁸⁰⁾.

80) 현재로서는 보다 엄밀한 추정을 위한 통계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므로 새로운 추정치에 의한 시뮬레이션보다는 민감도 분석에 의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 대신 특정연도에 정부에 의한 퇴직금이 기업연금에 의해 대체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분석을 행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상황은 정부에 의해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유인책이 제시되고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퇴직자들에 대하여 퇴직금과 기업연금 중 어느 노후소득보장책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의 기업연금과세도입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모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절에서 설정한 모형에서는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본 연구에서 완전경쟁 노동시장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식 (34)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기업연금보험료 불입부담의 증가는 노동자가 실제 지급받는 순임금률의 변화로 그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입장에서는 노동고용의 한계비용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업연금보험료 불입을 전적으로 기업에 의존한 경우 기업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더라도 기업의 노동고용의 한계비용이 변화하지 않아 기업입장에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순임금의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어 후생의 감소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순임금률의 감소폭이 줄어들더라도 기업연금 도입 초기에는 퇴직금지급과 동시에 기업에 의한 준비금 축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순임금의 감소폭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기업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손금산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결과의 신뢰성 검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간 대체탄력성치를 다른 값(0.5과 1사이 값)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시도한 결과의 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민감도 분석의 결과는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

기업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근로자가 불입하는 제도하에서 기업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기업연금급여에 대해 과세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이연을 통한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으나, 연금형태의 노후소득보장 수단과 현행의 퇴직금제도와 같은 일시금 형태간의 선택을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에 대한 시장위험(market risks)을 명시적으로 감안한 모형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도입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들간의 교섭과정(bargaining process)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본장에서 행한 연금관련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연금과세체계와 관련하여 제II장에서 언급한 현행의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불인정 - 연금급여에 대한 비과세(TEE)와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허용 -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EET)라는 두 가지 연금과세형태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EET형태의 과세체계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EET체계가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부과되지 않고 은퇴 후 노년기의 소비시점에서 부과됨으로써, 연금과세가 비교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의 왜곡효과가 적은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반적인 후생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조세부담이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노년층에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세부담이 경감되어 민간저축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한 효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공평성과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라고 사료된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관련 정부예산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적정하게 정부재정을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정을 통하여 청년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향후 이들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재정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장의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정책적 시사점은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일정수준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통한 분석에서 모두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저축의 순증가보다는 자산간 대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균형분석의 경우 장기적으로 오히려 총저축이 줄어들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장에서 사용한 모형이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완전한(perfect) 자본시장의 가정에 기초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불완전한 자본시장과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상정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모형의 개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하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개인연금을 비롯한 세제지원저축을 노후소득보장수단, 재산형성, 취약계층지원 등 목적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조세지원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세제지원저축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각 목적별로 실효성이 있는 제한된 수의 저축수단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연금에 대한 적정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연금제도의 향후 역할 분담에 대한 신중한 가치판단이 필요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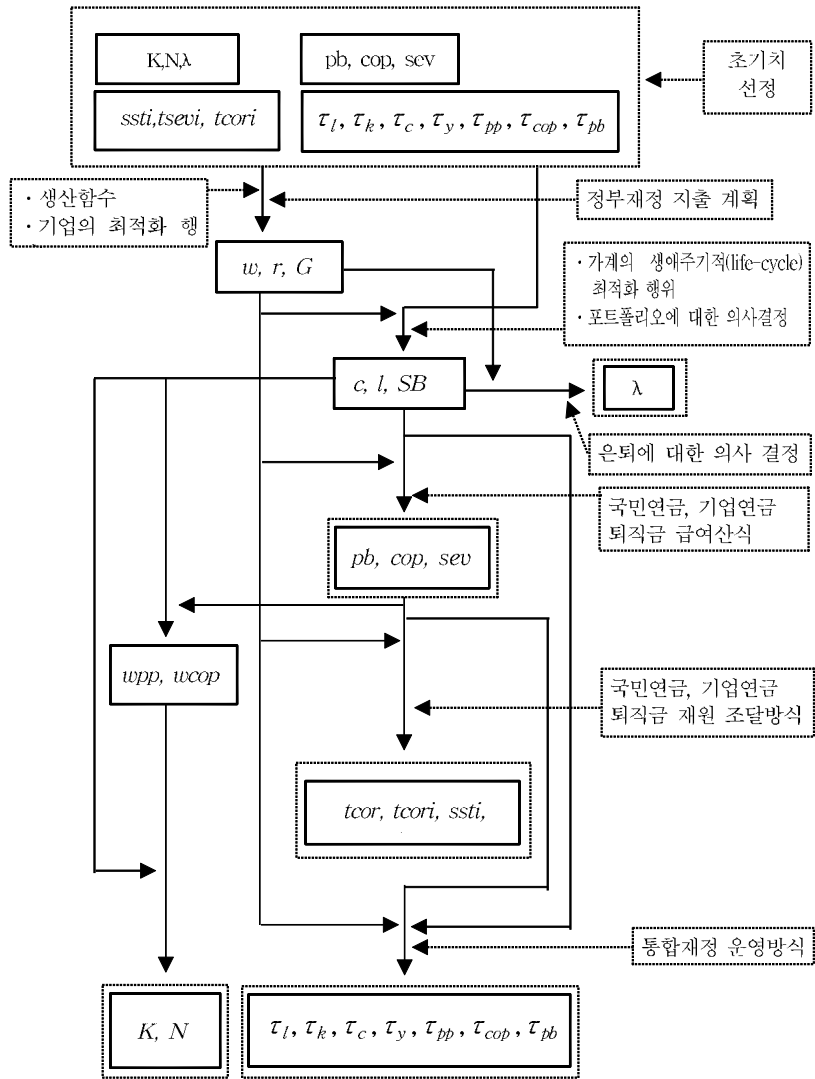
다. 즉,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 적정한 역할분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 지원수준과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후생의 증진은 연금지급의 보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산축적의 증대를 통하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연금지급의 보장성 증진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제고가 예상되는 이러한 제도전환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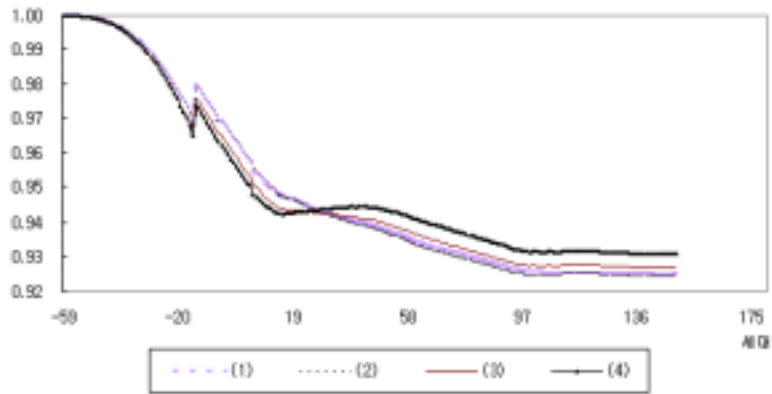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를 유발하는 연금과세체계 개편과 기업연금의 도입은 과도기적으로는 세수의 감소와 고용비용의 증가를 통하여 이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고용비용 상승은 고용량의 감소 혹은 임금률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므로 근로자측과 기업측 모두 기업연금의 도입에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정치적 결정을 행사하는 것도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세대들의 후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책과 여타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제도의 도입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세체계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세수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 및 금융기관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이 중 상당부분이 순재정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므로 상당기간동안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대체세원의 발굴 등을 통하여 과도기동안의 세수감소를 보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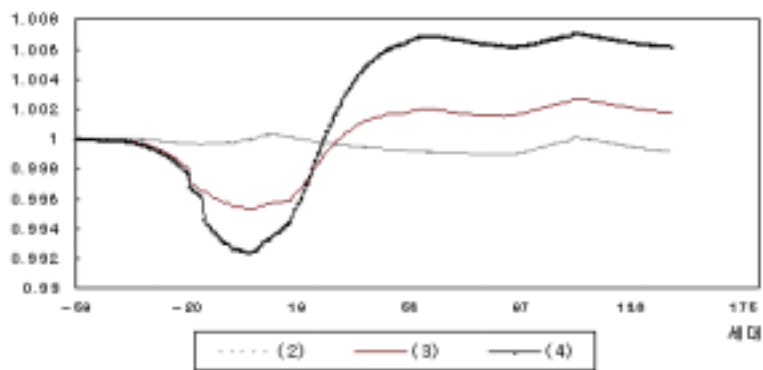
이다.



[그림 IV-3] 세대별 후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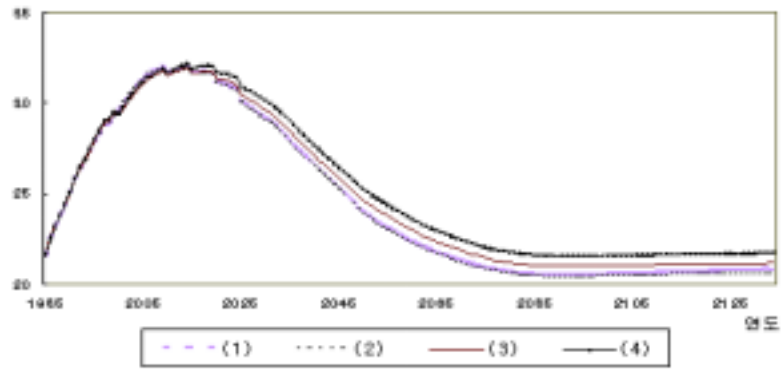


[그림 IV-4] (1)에 대비한 후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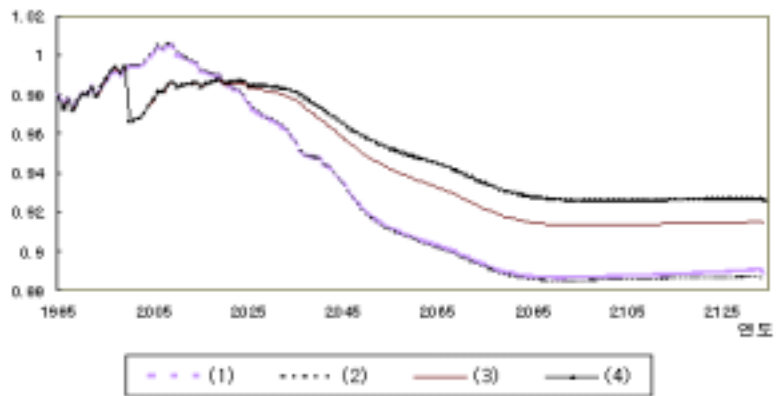


주 : (1) 개인연금부채, 기업연금부채, 연금과세미 실시
 (2) 개인연금도입
 (3) (2) + 기업연금도입
 (4) (3) + 연금과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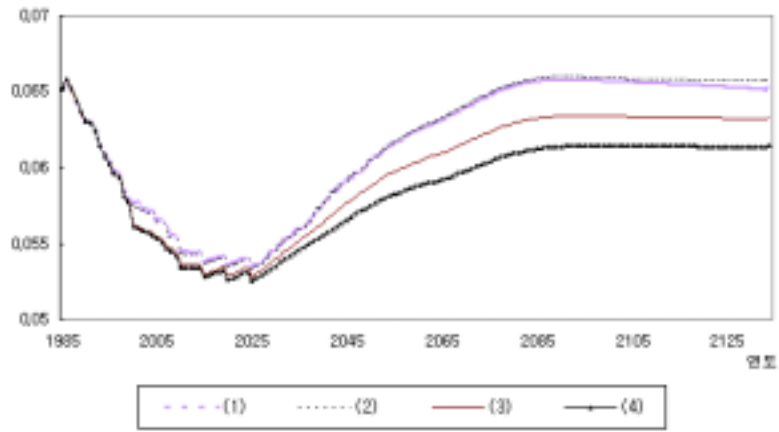
[그림 IV-5]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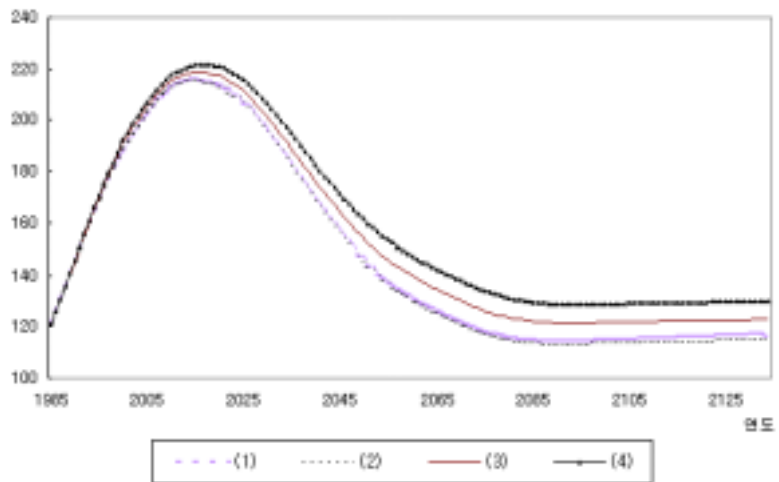
[그림 IV-6] 임금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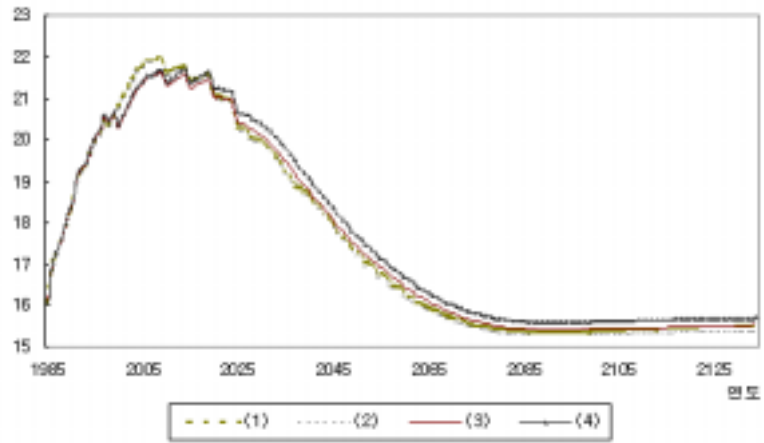
[그림 IV-7] 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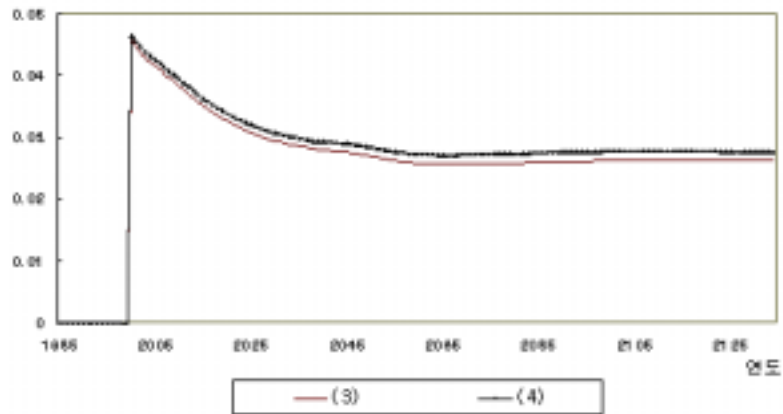
[그림 IV-8] 자본축적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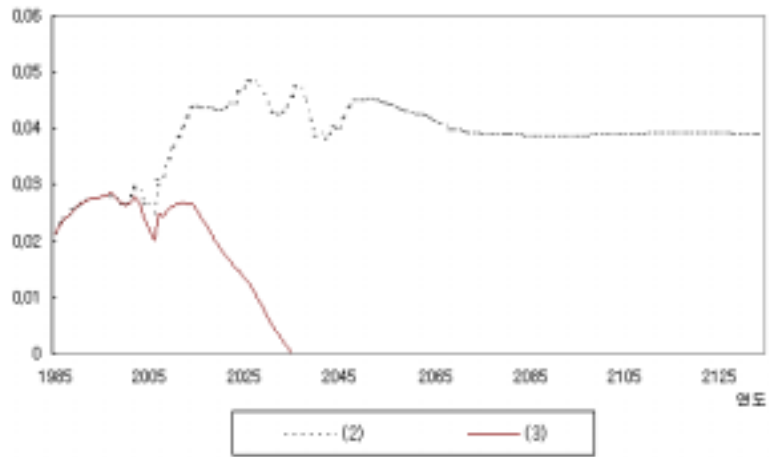
[그림 IV-9] 노동공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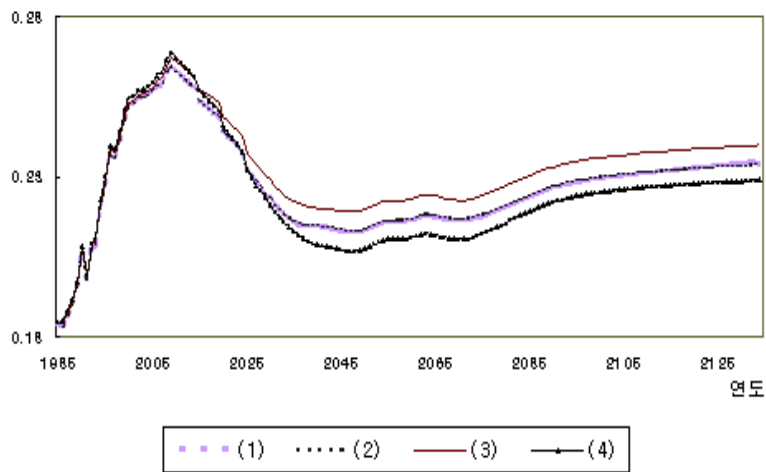
[그림 IV-10] tc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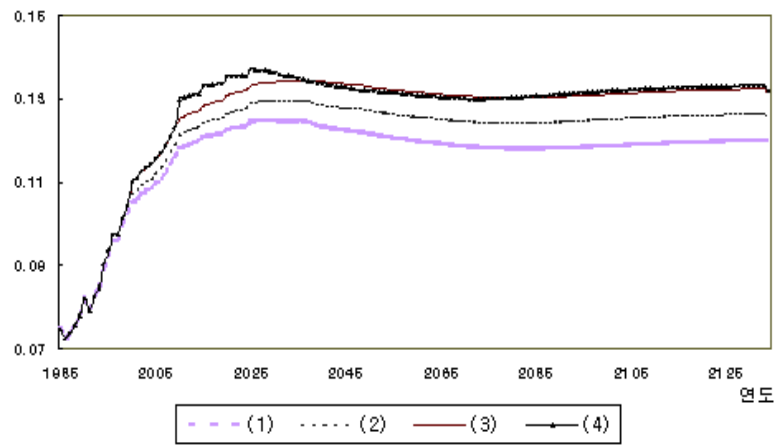
[그림 IV-11] tse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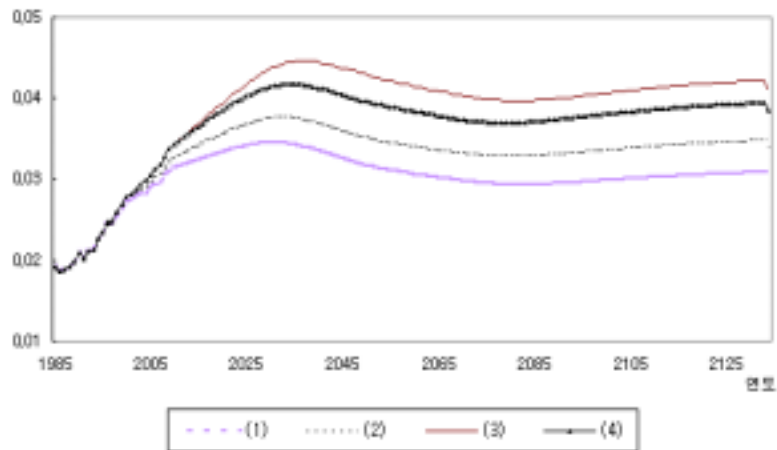
[그림 IV-12] 소비세율



[그림 IV-13] 소득세율



[그림 IV-14] 자본소득세율



V. 2000년 연금과세개편안의 내용과 평가

제Ⅲ장의 외국제도에 대한 조사와 제Ⅳ장에서 행한 분석을 통하여 각종 연금제도 혹은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체계와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비록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적 분석의 결과에 입각하지는 않았지만 각계에서 막연하나마 연금과세 개편의 필요성이 공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 대폭적인 연금과세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연금과세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과세체계를 현행의 연금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연금급여 수급시 과세하지 않는 체계(TEE)에서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급여시 과세하는 체계(EET)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공적연금 기여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고, 개인연금기여금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되게 되었다. 다만,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2001년에는 불입금의 50%만 공제하고 2002년부터 전액 공제하게 하였다(<표 V-1> 참조).

공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안으로 과세대상의 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며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표 V-1〉 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

	현 행	개 정
○ 국민연금 - 직장가입자 (월급여액의 4.5%) - 지역가입자 (월소득의 4%→9%) -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공제 불인정	전액공제 전액공제 전액공제
○ 특수지역연금 ¹⁾ (월급여액의 7.5%)	공제 불인정	전액공제
○ 개인연금 ²⁾	연간 저축액의 40%공제 (연 72만 원 한도)	100%공제 (연 240만 원 한도)

주 : 1)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2) 연금저축불입은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까지 허용

〈표 V-2〉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과 세	비 과 세
국민연금 ¹⁾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특수지역연금 ¹⁾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²⁾ , 개인연금	
기타		산재급여, 실업급여

주 : 1)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2) 퇴직연금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새 제도하에서의 개인연금 과세방안은 개인연금 수령액 중 기초소득 공제 받은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다시 말하면, 현행 개인연금 저축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현행과 같이 연간 불입액의 40%(72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비과세하기로 되어 있어,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신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별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신설 개인연금가입자가 중도해지 함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20%세율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한 경우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이 형태의 소득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써 중요성이 있음을 감안하고, 아울러 해당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⁸¹⁾.

- 250만 원 이하 : 전액 ◡
- 250~ 500만 원: 40%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500~ 900만 원: 20% (최대 공제액은 600만 원)
- 900~2,600만 원: 10%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연간 연금 총수령액(개인연금포함)에서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타연금소득이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하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된다. 퇴직연금·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10%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을 허용하게 한다.

81)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수령인구, 연금소득수준, 생계비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적의 조정하기로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중요한 조세체계의 변화 중의 하나는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75%까지 허용되고 있는 퇴직소득공제를 50%로 단일화하고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05년 1월 1일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연금과세체계 개편안은 최근 수년간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한 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과세체계를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급여에 대한 소득세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소득비중의 상승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청년층 인구의 연금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이들의 저축과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향후 공적연금 각출료 인상시 각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각출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표 V-3> 참조). 또한,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소득구간별 소득공제를 차등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재정부 세제실의 추계에 의하면 향후 5년내 퇴직자는 대부분 과세 미달되고 10년내 퇴직자의 경우 약 15~20%가 과세될 것이며 또한 20~30년 후 정상과세시에도 연금수령자의 약 40~50%만 과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축소(퇴직소득공제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금과세체계개편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분야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Ⅱ장 3절에서 연금과세 체계상의 문제로 각종 사회보장체계의 상호연계성 강화 측면에서의 조세지원 및 연금과세체계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연금과세체계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세수감소 보전의 필요성, 기업연금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개인연금 중도해지에 따른 처벌규정 및 퇴직금 운용과 관련된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의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제VI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표 V-3> 연금기여금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효과¹⁾

(단위 : 만원, %)

연간급여	현행 결정세액	개정안			
		결정세액	증감액	증감률	실효세율
1,200	0.0	0.0	0.0	0.0	0.0
1,500	7.7	4.0	-3.7	-48.2	0.3
1,800	22.6	18.1	-4.5	-19.8	1.0
2,000	33.8	27.5	-6.3	-18.6	1.4
2,500	68.1	57.4	-10.7	-15.7	2.3
3,000	138.0	112.2	-25.8	-18.7	3.7
4,000	318.0	282.0	-36.0	-11.3	7.1
5,000	508.0	464.1	-43.9	-8.6	9.3
6,000	742.0	661.2	-80.8	-10.9	11.0
8,000	1,342.0	1,231.2	-110.8	-8.3	15.4
10,000	1,976.0	1,801.2	-174.8	-8.8	18.0

주 : 1) 국민연금불입액 100%공제+근로소득 5%공제 (2002.1.1.이후)
 자료 : 재정경제부 세제실

VI. 향후 정책과제

제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 세계개편안에 포함된 연금과세체계 개편내용에는 제II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제III장의 주요국의 과세제도와 제IV장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토대로 평가하건대 장기적인 연금과세체계를 재정립하였다는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연금과세체계를 TEE체계에서 EET체계로 전환하였으며,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등 장기적인 세제발전방향과 부합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연금과세체계 개편내용에 대한 보완사항과 향후 요청되는 추가적인 정책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2000년 세계개편에 대한 보완사항

연금과세관련 보완사항으로 먼저, 연금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세수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으로 인해 과도기적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소득공제 허용폭의 기간별 조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및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순재정부담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불투명한 경제여건은 향후 수년간 세수여건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세수감소분의 보전과 세수증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0년 세계개편안에 포함된 에너지세제 개편 등의 조치와 별도의 조치, 예를 들어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과세기반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소득공제와 관련된 보완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세제개편에서는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이 형태의 소득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아울러 해당 납세자의 납세능력을 감안하여 연금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연금소득 규모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세부담 형평성 측면이나, 노후소득보장책에 대한 세제지원 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사료된다. 이에 더하여 연령별 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연령이 상승할수록 보유자산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노년기의 소비를 위한 재원으로서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간 수급개시연령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연령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의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에는 수급개시연령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1996년 신규임용자 이외의 가입자의 수급개시연령이 퇴직 직후인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수급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제도하에서의 연금급여 수준이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높은 경향이 있으며, 비교적 저연령층에서 수급이 개시되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의 흐름을 보장받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상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건대 현재 추진중인 연금소득 규모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과 더불어 연령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V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인연금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별로 세법이 차등적용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의 대안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2001년 1월 1일 연금보험료 불입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의 제도하에서 5년 내에 중도해지시 감면 받은 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하게 되어있고,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5년내 중도해지시 5%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되어 있어 개인연금가입자들이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많은 제약이 있다. 더욱이 5년 이상 불입자가 중도해약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액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절한 투자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연금불입 금융기관을 개인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중도해지한 개인이 일정기간내 다른 금융기관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중도해지금을 예치할 경우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연금가입자의 권익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퇴직금을 연금신탁에 적립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면제하여 퇴직금의 안정적 운용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세제개편

2000년 세계개편안에는 기업연금과 관련된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기업연금제도가 사실상 도입되지 않아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현행의 퇴직금은 그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연금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 환경조성에 있어서 세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에 있어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누면 퇴직적립금의 퇴직시점까지의 보전성(preservation) 문제(기금적립)와 퇴직금적립금의 퇴직 이후의 지급방법의 문제(연금화)가 있을 수 있다⁸²⁾. 이 두 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기금적립의 문제일 것이다. 기금적립을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기업의 노동고용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 IV장에서도 논의된 바에 의하면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저축률을 증가시키고 또한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과도기적으로는 고용비용의 증가를 통하여 이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고용비용의 상승은 고용량의 감소 혹은 임금률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므로 근로자측 그리고 기업측 모두 기업연금의 도입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현행의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 총당금을 사외적립을 하지 않고 사내에 적립하는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반면, 기업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이전부터 사외에 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추가적인 노동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도기동안 과거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이 있는 근로자

82) 방하남(2000) 참조.

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시금을 기업이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새로이 도입된 기업연금지급에 대비한 기금적립을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동안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을 기업연금수급권으로 전환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기업연금지급을 위한 기금적립을 점진적으로 하는 한편 이러한 적립에 대해서는 100% 비용처리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의 연금화와 관련해서는 2000년 세계개편에서도 반영되었듯이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납세자가 연금형태의 급여 선택시가 일시금 선택시보다 높은 수준의 세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3. 여타 사회보장제도 관련세제와의 조화

연금과세의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각종 사회보장 체계의 상호연계성 차원에서의 조세지원이나 연금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체계를 상호연계하여 조세지원의 규모가 결정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소득보장수단과 실업보험,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을 그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지원은 향후의 연금과세체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가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연금체계 내에서도 각종 연금제도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세지원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에 허용되는 각출금 소득공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를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포괄적인 적격사적연금제도에 대해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포함한 적격사적연금에 대한 납입한도액을 설정해 각출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장기저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각종 사적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용상대가 안정적이고 유동성제약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아 보험료 각출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이 조치에 대한 혜택이 이들 계층,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격연금제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 연금제도가입시 허용되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으로써 이들 계층에 과도하게 세제지원의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연금과세개편을 평가한 다음 향후 보완조치와 추가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함에 있어 세제자체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적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수단체의 문제점과의 연계하에서 세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금과세체계 전환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방법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아울러 사용함으로써 연금관련 조세제도의 변화에 따른 과거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거시경제변수와 세대간 후생수준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아울러 시도하였다.

이러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의 인식과 경제적 효과분석을 토대로 2000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를 한 결과 이번 개편안은 장기세제발전방향에 대체적으로 부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연금과세체계를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허용과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과세체계로 전환한 것은 중대한 변화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각종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과세체계 전환 직후 수년간의 조세수입 감소분 보전대책,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정수준 모색, 연금소득공제의 개선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연금과세와 관련된 정책과제 중 공·사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위한 세제측면에서의 환경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에 대한 보장체제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행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건대 순조로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의 연금관련세제개편은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1998.
- 곽승영, 『한국 제조업 부문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및 결정요인분석』, 산업연구원, 1997.
- 김용하, 「공적연금채무와 재정건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15권 제2호, 1999.
- 김현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도현황』,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내부자료, 1999.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91.
-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경제패널조사』, 1993~1998.
- 문형표, 「2000년대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년도 제1차 발표논문, 2000.
- 문형표·김용하·유경준·배준호,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 민재성·박재용,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84-02, 한국개발연구원, 1984.
- 박영범,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2.
- 방하남,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정책대안」,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년도 제1차 발표논문, 2000.
- _____,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 보건복지부, 『200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1999.
- 오근식·이용하,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 자료, 1999.

- 윤창호·이종화,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와 그 요인의 분석』, 산업연구원, 1998.
- 이근창, 『한국 퇴직금제도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6.
- 이철인·진영준·김정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1995.
- 진영준,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1999년 7월호, 1999, pp.42~52.
- _____, 「노후소득보장책에 대한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계량경제학보』, 제11권 제3호, 한국계량경제학회, 2000, pp.1~34.
- 정경배 외, 『법정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89-2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조한상, 「최근 생산성 추이와 변동요인」, 『조세통계월보』, 한국은행, 1991.
- 통계청, 『1960~2000 시도별 추계인구』, 1994a.
- _____, 『1960~2000 시도별 추계인구』, 1994a.
- _____, 『생명표』, 각 연도.
-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 1994b.
- _____, 『장래인구추계(1990~2021)』, 1991.
- _____, 『장래인구추계(1990~2030)』, 1996.
- _____,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1993.
- 한국노동연구원, 『실질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조사』, 1998.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4』, 한국은행 조사 제2부, 1994.
- _____, 『조사통계월보』, 1999. 5.

- Auerbach, Alan and Laurence Kotlikoff, *Dynamic Fiscal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The 1993 Annual Report*, 1993.
- Carroll, Chris and Lawrence H. Summers, "Why Have Private Saving R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iverged?,"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 1987, pp. 249~279.
-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1999.
- _____, *British Master Tax Guide*, 1998.
- Chun, Young Jun, "Did the Personal Pension Increase savings in Korea?," *Kore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2000.
- _____, *Demographic Transition and Social Security : The Case of Korea*, KIPF Working Paper 97-05,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997.
- Engelhardt, Gary V., "Tax Subsidies and Household Saving : Evidence From Canad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No. 4, 1996, pp. 1127~1168.
- Engen, E. and W. Gale, IRAs and Savings in a Stochastic Life-Cycle Model, mimeo, 1993.
- Engen, Eric, Gale, William and John Sholz, "The Illusory Effects of Savings Incentives on Sav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on Savings*, Vol. 10, No. 4, 1996, pp. 113~138.
- Feldstein, Martin, "The Effects of Tax-Based Saving Incentives on Government Revenue and National Saving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1995, pp. 475~494.

- Gale, William G. and John Karl Scholz, "IRAs and Household Sa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84(5), December 1994, pp. 1233~1260.
- Hubbard, R. Glennh and Jonathan S. Skinne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Saving Incentives*,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996.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Overview: Income Security Programs*, 1994.
- Hurd, M., "Mortality Risk and Bequests," *Econometrica*, vol. 57, no. 4, pp. 779~813.
- OECD, *Private pension in OECD Countries: New Zealand*, 1993.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ld Age Security Program Annual Report, Canada*, 1994.
- Pilat, D, "Comparativ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1967~1987",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46, no.1, 1995, pp. 123~144.
- Robson, Mark K., "Taxation and Household Saving : Reflections on the OECD Report," *Fiscal Studies*, Vol. 16, No. 1, 1995, pp. 38~57.
- Sabelhaus, John, "Public Policy and Sa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30, No. 2, 1997, pp. 253~275.
- The Treasury Dept. of Finance Australia, *Security in Retirement: Planning for Tomorrow Today*, 1992.
- The Treasury Dept. of Finance Australia, *Overview of the Taxation of Superannuation in Australia*, 1995.
-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orean Taxation*, 1996.

- Young, A.,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3), 1994, pp. 641~680.
- Welch, F., "Effect of Cohort Size on Earnings: The Baby Boom Babies Financial Bu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5, 1979, pp. S65~S97.
- Venti, Steven and David Wise, "Have IRAs increased U. S. Savings?: Evidence from Consumer Expenditure Survey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5, No.3, 1990, pp. 661~698.
- Venti, Steven and David Wise, *RRSPs and Saving in Canada*,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Public Policies That Affect Saving, OECD : NBER, 1994.
- World Bank,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the Crossroads*, draft report, October 1999.

(관련 웹사이트)

http://www.npc.or.kr/data/e_dd_02.html.

http://www.hrdc-drhc.gc.ca/isp/oas/rates_1e.shtml.

http://www.hrdc-drhc.gc.ca/isp/cpp/rates_e.shtml.

<부록 1> 국민연금급여산식

아래 식 (부-1)은 t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연령이 i 에 도달하였을 때의 연금수급액을 나타내고 있다. 각 개인은 연금수급연령(\tilde{Y}) 이전에는 유족연금(SM_{it+i-1})만 지급 받으며 연금수급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유족연금과 함께 아래에서 규정된 완전노령연금 혹은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pb_{it+i-1} \begin{cases} = SM_{it+i-1} & \text{if } i < \tilde{Y} \\ = \overline{OP}_{it+i-1} + SM_{it+i-1} & \text{if } i \geq \tilde{Y} \end{cases} \quad (\text{부-1})$$

$$\overline{OP}_{it+i-1} = \begin{cases} OP_{it+i-1} & \text{if } l_{it+i-1} = 1 \\ OP_{it+i-1}(0.5 + 0.1(\tilde{Y} - 60) + 0.1(i - \tilde{Y})) & \text{if } l_{it+i-1} < 1 \text{ and } 60 \leq i < 65 \end{cases} \quad (\text{부-2})$$

식 (부-2)는 완전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러 정기적인 노동소득이 없을 시 완전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나 정기적인 노동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만을 수령할 수 있다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제도하에서의 기본연금

은 식 (부-3)에 의해 정해진다.

$$OP_{it+i-1} = \left(\frac{\sum_{i=I_0+1}^{\bar{I}} \mu_{it+I-1} w_{it+I-1} e_{it+I-1} (1-l_{it+I-1})}{\sum_{i=I_0+1}^{\bar{I}} \mu_{it+I-1}} + \frac{\sum_{i=I_0+1}^{\bar{I}} (1-l_{it+i-1}) w_{it+i-1} ra_{it+i-1} e_{it+i-1}}{\bar{I}-I_0} \right) \times 0.3 \times \frac{\bar{I}-I_0}{40} \quad (\text{부-3})$$

기본연금액은 크게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식 (부-3)의 첫 번째 부분은 기초연금을 나타내며 두 번째 부분은 소득비례연금을 나타낸다⁸³⁾. ra_{it+i-1} 는 국민연금 전가입자의 노동소득 증가분이 소득비례연금에 반영되는 부분이며 이는 특정 가입자의 은퇴시, 국민연금 전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이 가입자의 연령이 i 인 연도의 국민연금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의 비율로 정의된다.

$$ra_{it+i-1} = \left[\frac{\sum_{k=I_0+1}^{\bar{I}} \mu_{kt+I-1} w_{kt+I-1} e_{kt+I-1} (1-l_{kt+I-1})}{\sum_{k=I_0+1}^{\bar{I}} \mu_{kt+I-1}} \right] \div \left[\frac{\sum_{k=I_0+1}^{\bar{I}} \mu_{kt+i-1} w_{kt+i-1} e_{kt+i-1} (1-l_{kt+i-1})}{\sum_{k=I_0+1}^{\bar{I}} \mu_{kt+i-1}} \right] \quad (\text{부-4})$$

83) 식 (부1-3)의 연금급여산식은 1999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정 국민연금법하에서의 연금산식이다. 이 산식하에서는 평균소득자에 대하여 임금대체율이 40년 가입시 60%이고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비율이 1:1인 반면, 법개정 이전의 제도하의 임금대체율은 40년 가입시 70%이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비율은 4:3이다.

$$SM_{it+i-1} = rsm_{it+i-1} \sum_{i=t_0+1}^I 0.6\mu_{it+i-1}(1-S^i) \overline{OP}_{it+i-1} \quad (\text{부-5})$$

이때 rsm_{it+i-1} 는 유족연금 총액 중 t 연도에 연령이 i 인 사람들에게 귀속될 비율을 의미한다.

식 (부-5)는 유족연금에 대한 규정을 수식화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상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될 연금액의 일정부분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모형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모든 세대들이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가정하였기 때문에 연금액의 60%가 유족들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였다⁸⁴⁾.

84) 유족연금의 수준은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사망한 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는 연금액의 40%, 15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50% 그리고 20년 이상일 경우 60%로 규정되어 있다(1995년 개정).

<국문요약>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영준 · 한도숙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연금과세의 기본구조 개편, 기업연금도입,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분석에 있다. 이를 위하여 미시자료와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간의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이들 두 자산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Auerbach and Kotlikoff(1987) 모형을 기본으로 Venti and Wise(1990)와 유사한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택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은 저축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축수단의 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은 저축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들 조세지원이 저축형태를 여타 저축에서 개인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세원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인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저축률의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연금의 도입은 이 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의 과도기에 생존하는 일부 세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들의 후생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퇴직금제도하에서와는 달리 미래의 기업연금급여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민간저축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과세체계를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체계(EET)로 전환할 경우, 조세이연 효과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이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허용과 각종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는 조세부담을 생애의 초기단계(청년기)로부터 후기단계(노년기)로 이연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변화는 세원을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재분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세 세원의 규모가 청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비세의 경우는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가 소득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과세수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금과세의 실시에 따라 후생의 향상이 예측된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규모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급여의 규모를 상회하여 각종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과세실시 초기단계 일정기간동안의 과도기에 생존하는 일부 세대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주요국의 제도를 감안하건데, 연금과세체계를 EET체계로 전환하고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조정한 2000년도 연금과세개편안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사료된다.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보다도 기업연금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정비와 관련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과세체계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세수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을 여타 저축수단에 대한 조세지원과 향후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ision in Pension Income Taxation

Chun, Young-Jun and Do-Suk H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form in pension income taxation, including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ension income taxation,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Pension, and substitution of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for the Corporate Pension System. In order to do that, the substitution elasticity between the Personal Pension and other means of savings is estimated by using micro-data and a formal model in which agents make decision-making on portfolio between the two means of savings. In addition, a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is also constructed. The model employed is an extension of Auerbach and Kotlikoff(1987) in which decision making on portfolio choice (between the Personal Pension and other forms of savings) similar to that considered in Venti and Wise(1990) is explicitly considered.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Pension in 1994 raised the savings rate. However, this increase in the savings rate came from the provision of a new financial asset rather than from tax incentives. In the long run, the tax incentives allowed for the Personal Pension is likely to

decrease savings because the tax incentives induce too much substitution from the usual forms of savings to Personal Pension contributions and reduce the income tax base, which in turn increases the marginal income tax rate. It was also found that the substitution of the Corporate Pension for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will improv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because the maintenance of the reserve for Corporate Pension benefits will raise the private savings rate. Finally, the deductions for contributions and the imposition of tax on pension benefits (the EET system) will cause a deferral of the tax burden from the earlier stage of one's life to the later stages. This form of resource redistribution raises the private savings rate because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s lower at younger ages than it is at older ages. In addition, this arrangement of taxation on pension income contains a consumption tax aspect, because tax is not imposed until the time of retirement and is imposed on the source of consumption of the retirees. Thus, a substantial welfare gain from taxation on pensions is expected. However, in some period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ax structure on pension income, the tax revenue will decrease. This is because in the transition period, the magnitude of increase in tax base in the form of pension benefits will be smaller than that of decrease in tax base in the form of pension contribution deduction.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reduction of tax revenue, the government will have to raise tax rates for the period. Therefore, some generations who will live in that period will have some welfare cost of the tax

reform.

Considering these results and the tax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2000 tax revision plans which will transform the structure of taxation on pension income from the TEE system to the EET system and reduce the tax incentives for Retirement allowances i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change in the income tax system in Korea. In addition to the revision, the following reform plans have to be prepared in the future. First of all, tax reform plan to promote the substitution of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to the Corporate Pension System. Also, complementary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reduction of tax revenue in the transition period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ax structure from the TEE system to the EET system, have to be prepared. Finally, tax incentives for the Personal Pension has to be restructure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ax incentives for other means of savings and division of the role between public pensions and private pensions.

<著者略歷>

전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Pennsylvania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도숙

미국 Emory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Pennsylvania대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0-04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0年 12月 28日 印刷

2000年 12月 30日 發行

著者 전영준·한도숙

發行人 柳一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2186-2114(代), 팩시밀리：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2000

ISBN 89-8191-177-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 원